

제391회국회
(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조세소위원회)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1년11월15일(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262)
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465)
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116)
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90)
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797)
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850)
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401)
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04)
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60)
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661)
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549)
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559)
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300)
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074)
1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259)
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720)
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910)
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851)
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264)
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361)
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077)
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127)
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503)
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370)
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818)
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862)
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900)
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407)
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529)
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701)
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32)
3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248)
3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926)

3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402)
3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038)
3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362)
3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402)
3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536)
3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677)
4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945)
4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807)
4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153)
4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519)
4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471)
4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588)
4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175)
4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390)
4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468)
4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748)
5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811)
5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893)
5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314)
5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393)
5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431)
5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62)
5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531)
57.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61)
58.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929)
5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287)
6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490)
6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396)
6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589)
6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163)
6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583)
6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369)
6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808)
6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826)
6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230)
6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396)
7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06)
7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072)
72.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617)
73.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339)
74.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542)
75.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178)
7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74)
7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019)

78.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785)
79.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408)
80.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294)
81.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470)
82.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410)
83.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662)
84.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405)
85.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536)
86.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386)
87.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395)
88.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074)
89.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404)
9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571)
9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398)
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073)
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091)
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197)
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460)
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385)
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480)
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011)
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025)
1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669)
1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869)
1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457)
1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537)
1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877)
1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927)
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726)
1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325)
1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452)
1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631)
1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900)
1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752)
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900)
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837)
1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911)
1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028)
1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148)
1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150)
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193)
1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243)
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427)
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537)

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544)
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552)
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594)
1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599)
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653)
1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881)
1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992)
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023)
1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071)
1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167)
1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245)
1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301)
1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362)
1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405)
1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449)
1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468)
1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503)
1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505)
1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509)
1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584)
1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637)
1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652)
1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675)
1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725)
1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794)
1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941)
1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960)
1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036)
1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084)
1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111)
1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133)
1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141)
1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174)
1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178)
1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219)
1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393)
1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409)
1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435)
1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487)
1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683)
1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750)
1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797)
1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910)
1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973)

1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077)
1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139)
1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376)
1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378)
1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546)
1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565)
1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700)
1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729)
1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772)
1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825)
1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827)
1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829)
1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882)
1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901)
1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905)
1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030)
1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031)
1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101)
1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124)
1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145)
1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281)
1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339)
1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385)
1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406)
1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517)
1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532)
1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538)
1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561)
1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598)
1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599)
1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605)
1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636)
1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648)
1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694)
2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715)
2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729)
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755)
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759)
2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766)
2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773)
2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776)
2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09)
2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21)
2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47)

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50)
2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55)
2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64)
2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79)
2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87)
2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95)
2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932)
2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944)
2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946)
2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965)
2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060)
22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449)
22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124)
22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344)
22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177)
22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352)
22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535)
22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056)
22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409)
22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66)
230.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371)
23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399)
232.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852)
233.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943)
234.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394)
235.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83)
236.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24)
237. 청년세법안(의안번호 2108287)
238. 탄소세법안(의안번호 2108732)
239.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411)

상정된 안건

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62) 12
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65) 12
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16) 12
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90) 12
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97) 12
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50) 12
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01) 13
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04) 13
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60) 13
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61) 13
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549) 13
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59) 13

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00)	13
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74)	13
1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59)	13
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20)	13
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10)	13
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51)	13
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64)	13
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61)	13
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77)	13
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27)	13
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03)	13
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70)	13
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18)	13
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62)	13
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00)	13
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07)	13
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29)	13
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01)	13
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32)	13
3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248)	13
3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26)	13
3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02)	13
3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38)	13
3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362)	13
3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02)	13
3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36)	13
3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677)	13
4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45)	13
4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07)	13
4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53)	13
4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19)	13
4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71)	13
4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88)	13
4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75)	13
4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90)	13
4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68)	13
4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48)	13
5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11)	13
5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93)	13
5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14)	14
5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393)	14
5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31)	14
5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62)	14
5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31)	14

57.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61)	14
58.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29)	14
5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287)	14
6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490)	14
6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96)	14
6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89)	14
6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63)	14
6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83)	14
6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69)	14
6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08)	14
6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26)	14
6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30)	14
6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396)	14
7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06)	14
7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072)	14
72.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17)	14
73.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39)	14
74.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42)	14
75.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78)	14
7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74)	14
7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19)	14
78.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85)	14
79.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08)	14
80.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294)	14
81.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전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70)	14
82.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10)	14
83.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62)	14
84.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05)	14
85.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36)	14
86.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86)	14
87.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395)	14
88.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74)	14
89.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04)	14
9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71)	14
9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398)	14
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073)	14
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091)	14
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197)	14
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60)	14
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85)	14
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480)	15
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11)	15
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25)	15
1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669)	15

1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869)	15
1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57)	15
1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537)	15
1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77)	15
1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27)	15
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26)	15
1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25)	15
1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52)	15
1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31)	15
1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00)	15
1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52)	15
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00)	15
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37)	15
1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11)	15
1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28)	15
1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48)	15
1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50)	15
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93)	15
1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43)	15
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27)	15
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37)	15
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44)	15
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52)	15
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94)	15
1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99)	15
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53)	15
1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81)	15
1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92)	15
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23)	15
1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71)	15
1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67)	15
1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45)	15
1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01)	15
1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62)	15
1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05)	15
1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49)	15
1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68)	15
1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03)	15
1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05)	15
1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09)	15
1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84)	15
1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37)	16
1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52)	16
1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75)	16

1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25)	16
1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94)	16
1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41)	16
1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60)	16
1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36)	16
1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84)	16
1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11)	16
1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33)	16
1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41)	16
1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74)	16
1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78)	16
1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19)	16
1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93)	16
1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09)	16
1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35)	16
1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87)	16
1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83)	16
1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50)	16
1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97)	16
1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10)	16
1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73)	16
1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77)	16
1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39)	16
1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76)	16
1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78)	16
1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46)	16
1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65)	16
1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00)	16
1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29)	16
1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72)	16
1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25)	16
1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27)	16
1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29)	16
1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82)	16
1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01)	16
1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05)	16
1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30)	16
1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31)	16
1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01)	16
1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24)	16
1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45)	16
1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81)	16
1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39)	17
1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85)	17

1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06)	17
1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17)	17
1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32)	17
1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38)	17
1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61)	17
1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98)	17
1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99)	17
1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05)	17
1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36)	17
1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48)	17
1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94)	17
2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15)	17
2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29)	17
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55)	17
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59)	17
2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66)	17
2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73)	17
2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76)	17
2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09)	17
2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21)	17
2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47)	17
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50)	17
2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55)	17
2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64)	17
2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79)	17
2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87)	17
2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95)	17
2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32)	17
2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44)	17
2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46)	17
2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65)	17
2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60)	17
22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49)	17
22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24)	17
22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44)	17
22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77)	17
22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52)	17
22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35)	17
22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56)	17
22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09)	17
22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66)	17
230.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71)	17
23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399) ...	17

232.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52)	18
233.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43)	18
234.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394)	18
235.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83)	18
236.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24)	18
237. 청년세법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87)	18
238. 탄소세법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32)	18
239.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11)	18

(10시39분 개의)

○소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조세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앞으로 약 2주에 걸쳐 조세 분야 법률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오늘 상정되는 법률안은 239건이고 앞으로 일곱 차례 소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1월 말로 예정되어 있는 전체회의에 심사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 간의 상호 이해와 협력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추가적으로 소위가 필요한 경우 같이 협의하여 회의 일정을 별도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에서도 효율적으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적시에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 번째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및 이와 병합심사가 필요한 법안 그리고 간사 간 합의 법안을 우선적으로 심사하고, 둘째 다음으로 일몰 연장 등과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을 심사한 후, 셋째 그 외 법안은 국세기본법상 건제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안은 여야 간사 간의 협의를 통하여 추가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일반적인 절차대로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소위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듣고 나서 위원님들께서 토론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 중에 합의된 사안은 잠정 의결을 하고 쟁점이 있거나 정리가 필요한 안건은 뒤로 미루어서 추가 논의한 다음에 종합적으로 정리되는 안건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작성을 위해서 배석자가 발언하실 때에는 직위와 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소위원회에 배준영 위원님께서 이번에 새로 보임되었습니다. 간단히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배준영 위원 이번에 새로 보임된 배준영 위원입니다.

성실하게 잘 임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감사합니다.

배준영 위원님, 소위에서 열띤 의정활동으로 신속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배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그리고 언론 촬영 및 취재에 관해서는 코로나 방역지침 관계로 본의사일정에 들어갈 때까지만 스케치를 하고, 같이 전체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의사일정 법안 상정까지만 취재를 하시고 이후에는 퇴장하셔서 전체 논의 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방역지침상 그렇게 진행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62)
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65)
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16)
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90)
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97)
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50)

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01)
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04)
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60)
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61)
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549)
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59)
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00)
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74)
1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59)
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20)
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10)
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51)
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64)
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61)
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77)
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27)
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03)
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70)
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18)
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62)
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00)
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07)
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29)
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01)
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32)
3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248)
3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26)
3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02)
3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38)
3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362)
3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02)
3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36)
3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677)
4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45)
4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07)
4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53)
4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19)
4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71)
4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88)
4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75)
4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90)
4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68)
4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48)
5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11)
5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93)

5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14)
5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393)
5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31)
5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62)
5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31)
57.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61)
58.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29)
5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287)
6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490)
6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96)
6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89)
6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63)
6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83)
6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69)
6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08)
6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26)
6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30)
6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396)
7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06)
7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072)
72.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17)
73.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39)
74.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42)
75.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78)
7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74)
7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19)
78.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85)
79.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08)
80.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294)
81.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전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70)
82.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10)
83.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62)
84.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05)
85.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36)
86.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86)
87.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395)
88.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74)
89.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04)
9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71)
9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398)
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073)
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091)
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197)
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60)
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85)

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480)
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11)
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25)
1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669)
1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869)
1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57)
1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537)
1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77)
1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27)
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26)
1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25)
1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52)
1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31)
1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00)
1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52)
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00)
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37)
1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11)
1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28)
1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48)
1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50)
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93)
1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43)
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27)
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37)
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44)
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52)
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94)
1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99)
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53)
1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81)
1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92)
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23)
1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71)
1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67)
1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45)
1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01)
1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62)
1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05)
1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49)
1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68)
1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03)
1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05)
1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09)
1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84)

1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37)
1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52)
1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75)
1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25)
1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94)
1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41)
1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60)
1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36)
1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84)
1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11)
1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33)
1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41)
1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74)
1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78)
1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19)
1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93)
1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09)
1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35)
1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87)
1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83)
1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50)
1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97)
1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10)
1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73)
1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77)
1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39)
1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76)
1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78)
1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46)
1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65)
1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00)
1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29)
1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72)
1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25)
1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27)
1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29)
1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82)
1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01)
1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05)
1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30)
1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31)
1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01)
1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24)
1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45)
1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81)

1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39)
1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85)
1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06)
1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17)
1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32)
1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38)
1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61)
1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98)
1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99)
1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05)
1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36)
1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48)
1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94)
2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15)
2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29)
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55)
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59)
2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66)
2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73)
2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76)
2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09)
2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21)
2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47)
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50)
2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55)
2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64)
2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79)
2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87)
2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95)
2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32)
2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44)
2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46)
2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65)
2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60)
22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49)
22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24)
22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44)
22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77)
22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52)
22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35)
22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56)
22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09)
22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66)
230.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71)
23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399)

232.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52)

233.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43)

234.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394)

235.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83)

236.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24)

237. 청년세법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87)

238. 탄소세법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32)

239.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11)

(10시42분)

○소위원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1항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39항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239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잠시 한 1분 정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정돈되는 대로 1분 정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행정실에서는 장내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논의가 12월 2일 예산안 의결까지 같이 부수된 법안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압축적으로 논의를 진행을 하고 의결되면 의결되는 대로, 의결이 안 되면 소소위로 넘겨서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또 더 논의가 필요한 사안은 계류해서 추후에 계속해서 법안소위를 개최해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발언 시간을, 제가 보기에 많은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정해서 하지는 않지만 아무리 길어도 대략 3분 이내로 시간을 좀 맞춰 주셔서 발언해 주시면 많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가지고 밀도 있게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명호 전문위원께서 소위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호 소위자료 1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세기본법입니다.

유류분을 청구한 공동상속자의 납세의무 범위 조정과 관련 정부안입니다.

현행 24조에는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경우와 예외적인 경우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 개별상속인이 승계하는 피상속인의 납세의무 범위와 관련하여 유류분을 청구한 자가 상속인 중에 포함될 경우에 예외 적용대상에 추가하자는 것입니다.

3페이지 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공동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경우와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요. 현재 유류분 같은 게 일반적인 경우에 포함돼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민법에 의한 상속분의 비율만큼 납세의무를 승계하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서 실제 상속받은 재산 비율만큼 승계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개정안의 경우에는 유류분을 예외적인 경우에 포함하자는 내용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현행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당사자 중 일부가 유류분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 유류분을 청구하지 않은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비율만큼 납세의무가 승계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합니다.

표를 보시고 간단히 설명드리면 피상속인 갑이 사망 3개월 전에 을에게 전 재산 300을 증여하고, 갑이 미납한 양도소득세가 있는 경우에 그리고 상속인은 자녀 3명인데, 3명 중 2명은 유류분을 청구하고 1명은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 표 우측 하단을 보시면 현행처럼 하면 법정상속 비율만큼 납세의무가 있기 때문에 10 부분만큼 누락이 생기는 거고요. 개정안대로 하면 실제 상속받은 재산의 비율만큼 납세의무가 되기 때문에, 부담하기 때문에 누락 부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은 타당한 입법이라고 보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전문위원께서 정부 개정안 취지를 잘 말씀해 주셨고요. 이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고 세수손실 방지 차원에서 필요한 입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걸 위원** 차관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꼭 남의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나 하면 이런 형태의 사례 예를 4쪽에 들었듯이 이런 게 그전에도 계속 있었을 것 아니에요? 왜 지금 이제서야 이 법 개정안을 발의를 하시나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익원** 이게 실제로 소송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제기되면서 국세청에서 그런 케이스들을 보고 이렇게 되면 세수손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민법에 따른 상속비율에 따라 대부분 승계가 되는데 그게 가끔은 유류분으로 신청을 하는 경우도 생기고 상속 포기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그런 케이스들이 예외적인 경우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세청에서 이것은 일괄적으로 입법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건의가 와서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류성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연히 세 부적인 사항의 케이스가 있으니까 그렇게 됐는데 예외적으로 우리 민법에 의한 상속분 이렇게 되는 경우하고 유류분을 청구하고, 안 하고에 관련해서 미리 이런 것을 예견을 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차원의 질문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된다면 법이 완전히 누더기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이걸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법 만들 때에, 법이라는 게 여러 가지 사항들이 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전부 다 그런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생각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다른 세법 다른 세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추가적으로 발언하실 위원님들 없으시면 이 안에 대해서는 잠정 합의한 것으로……

그러면 김수홍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홍 위원** 저도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류성걸 위원 지적이 저도 합리적인데 국세청에서는 납세금액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서 개정할 필요성을 제기했다면 법률 체계상으로 볼 때 이렇게 규정하는 게 타당하니까? 상속은 민법상 규정해야 될 사항인데 예외적으로 규정해서 유류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규정하는 게 법률 체계상 문제는 없어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위원님 말씀하시

는 게 이게 상속세인데 왜 국세기본법에 규정을 하느냐 그 말씀이지요?

○**김수홍 위원** 예.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그러니까 상속세에 관련되는 것은 상속세법에 규정하는 게 당연한데요. 이것은 상속세가 아니고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다른 납세의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세목, 그것이 상속을 하게 되면 상속인들한테 승계가 되거든요. 그 승계되는 과정에서 입법에 약간 보완이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세법에서 하는 게 맞는데 이걸 상속세가 아니고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다른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납세의무의 승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김수홍 위원**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그렇게 잠정 합의돼서 하는 걸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항 전문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호** 6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세 부과제척기간 조정 관련인데요,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적용범위 조정 관련된 정부안입니다.

현행 제26조의2에서는 국세 부과제척기간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5년이고 판결 등 확정으로 세액 변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할 경우에 현행은……

○**소위원장 김영진** 잠시만요, 기획재정부위원장이 열심히 하라고 격려 방문 오셨는데요.

○**위원장 윤후덕** 수고하세요.

○**소위원장 김영진** 고맙습니다.

전문위원님 계속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명호** 현행법은 판결 등의 확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변경된 경우 그와 밀접하게 연동된 같은 세목의 다른 과세기간에 대해서 적용되지만 개정안은 다른 세목에도 적용하자는 이야기입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대법원 역시 지금 다른 세목에 대해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면서, 예를 들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취소 판결 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해당 금액만큼 소득이 증가하였음에도 소득 증가에 따른 법인세를 과세하지 못한다는 게 현행 내용입니다. 현행 규정을 대법원에서 판결한 것이고요.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판결 등이 확정됨에 따라 연동된 다른 세목의 과세표준에도 적용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개정안처럼 했을 경우에 특

례 적용이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납세자에게 불리한 부분이 일부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현재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기본적으로는 5년인데요, 소송이 들어가면 소송 과정에서 소송이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5년을 도과할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과 관련된 그 부분은 확정되는 날짜가 계속 이어지는데 같은 세목 같은 경우는 연관이 되니까 가능하지만 다른 세목…… 예를 들면 부가세 같은 경우 환급소송을 내서 부가세를 납세자에게서 받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세목인 소득이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 소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또 거기서 경정을 하거나 부과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같은 세목이니까 부가세로 받으셔도 소득세에는 과세를 하지 말라, 납세자에게 불리하다, 그렇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공평과세 측면에서 보면 납세자가 이미 알고 계시는 것이고 이걸 하면 내가 부가세를 받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내 소득세가 올라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는 연관된 다른 세목도 제척기간을 같이 만드는 게 타당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법을 하게 됐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호 위원 정부 측에 하나만 질문할게요.

아까와 비슷한 취지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무슨 사례가 있어서 하게 된 겁니까? 왜 이런 상황이,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는 게 왜 지금 이제서야 포착이 되어서 개정안이 나오게 된 거지요?

○기획재정부제실장 김태주 그렇습니다. 이런 유사한 사례가 소송이 제기되었는데 대법원에서 지금 현재 규정상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조정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인데도 엄격하게 대법원에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세목도 조정을 해야 된다는 취지로 이번에 넣게 된 겁니다.

○추경호 위원 그런 취지 발상은 그동안 과세를 하면서 얼마든지 상정할 수 있었을진대 왜 이번에야 정부안이 나오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부 법안을, 우리도 많은 작업을 해

보지만 ‘왜 이런 게 아직까지 그대로 있었을까’ 우리 스스로도 입법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거든요. 왜 이런 부분이……

○기획재정부제실장 김태주 작년 대법원 판결이 다른 세목은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이런 게 처음 나왔거든요.

○추경호 위원 최초로 판결이 났고 그때야 우리가 깨닫게 된 겁니까?

○기획재정부제실장 김태주 예, 그렇습니다.

○추경호 위원 그전에는 문제의식을 별로 못 가지다가?

○기획재정부제실장 김태주 예.

○김수홍 위원 그전에는 법원에 가서 소송해서 다 해결하고 그랬잖아요.

○기획재정부제실장 김태주 예, 그런데 법원에서 과세기간만 조정을 해 주고 세목은 조정 못한다고 해 버리니까 이제 입법적으로 명확하게 해 주는 겁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류성걸 위원님.

○류성걸 위원 전문위원께 한번 여쭙볼게요.

9쪽 검토의견에 보면 기본적으로 조세평등주의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하면서, ‘다만, 후발적 사유에 의한 부과제척기간의 특례는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침해하므로’ 그다음에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이걸 무슨 뜻으로 이렇게 검토의견을 쓰셨나요?

앞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당연히 존중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판례에 의해서도 또는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도 제척기간이라고 했을 때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 전부 다 적용하는 게 저는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법원이 그렇게 진짜 문리 해석에 의해서, 법규에 아주 충실하기 위해서 그 세목만 해당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법을 개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여기에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게 무슨 뜻으로……

○전문위원 정명호 정정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납세자가 감액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과세 당국에서 증액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를 전체를 할 거냐 아니면 납세자에게 유리한 부분에 대해서 할 거냐 그 범위 부분에 대해서 납세자 기준으로 본다면 감액 부분만 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류성걸 위원 그래요?

그러면 차관님, 조금 전에 전문위원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아주 엄밀하게 보면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납세자가 이미 소송을 제기하실 때는 내가 뭔가를 얻는다, 그렇지만 그 결과물으로써 내가 다른 쪽에는 세금을 더 내야 된다 그걸 인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을 저해한다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 않느냐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류성걸 위원 왜냐하면 이게 확대된다면, 예를 들어 주식투자를 했을 때 당연히 이익을 봤을 때는 세금을 내고 손해를 봤을 때는 손해에 대해서 위험 부담을 안 해 주는 게 지금 현재 세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다만 손실에 대해서 통산으로 한 다든지 이런 경우도 많지만,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그것과 관계없이 여기는 필요최소한이 아니고 손해든지 이익이든지 전부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세제실장님?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얘기는 부과제척기간이라는 게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세청의 기간이거든요. 그게 원칙이 5년인데 자꾸 이렇게 특례를 뒀서 7년으로 하고 또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까지 이렇게 하면 납세자가 불리해지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최소한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저희 판단은 이게 공평과세·실질과세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조치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류성걸 위원 예.

○소위원장 김영진 여러 가지 대법원의 판례, 판단 이런 부분에 따라서 미비된 부분을 보완하는 입법이기 때문에 여야 위원님들 합의로, 잠정 합의한 사안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정명호 10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예,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명호 불법소득에 대한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인데요.

개정안은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대상에 형사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어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3호 또는 제24호의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뇌물·알선수재·배임수재로 인한 불법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렇지만 불법소득의 특성상 소득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불법소득임이 확인되었으나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과세가 불가능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이와 같이 국세 부과제척기간 특례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불법소득은 특성상 음성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소득 발생 여부를 자체를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불법소득이 확인된 그런 사례의 경우에 있어서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경우 과세가 불가능한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렇게 예외를 뒀서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 정도까지는 부과제척기간을 더 늘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호 위원님.

○추경호 위원 시행 시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 시행 시기가 법이 통과가 되고 3개월 또는 6개월 뒤 또는 내년부터 시행할 텐데 경과기간 이런 건 필요 없이……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예, 법 시행일 이후에 확정판결이 나오는 그 건부터……

○추경호 위원 그 건부터?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예.

○추경호 위원 그러니까 그 행위는…… 현재 지금 재판 진행이 되고 있고, 예를 들어 내년 1월 1일부터 법 시행이 되고 내년 7월 1일 날 확정판결이 되면 현재 재판 진행되고 있는 그 대상도 여기에 전부 해당이 된다 그런 겁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말씀해 주세요, 정부 측에서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그러니까 법 시행일 이후에 나온 확정판결과 관련된 그 건에 대해서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고용진 위원님.

○**고용진 위원** 전문위원 지적도 있기는 한데 그러면 확정판결 나고 1년까지만 제척기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예, 맞습니다.

○**고용진 위원** 그러면 행정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그걸 바로바로 부과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이것은 늘리면 늘릴수록 행정부한테 유리하지만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납세자 보호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실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확정판결일로부터 최대 9개월 내지 10개월이면 판결문을 수집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판결문에 범죄 일시, 수뢰 금액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금방 인지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부과만 먼저 해 놓으면 되니까 그런 걸 보면……

○**고용진 위원** 1년 이내에 부과만 하면 되는 거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예.

○**고용진 위원** 9개월 동안은 판결문 수집해서 분석하고 나머지 동안에 부과하고?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예.

○**고용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류성걸 위원** 그것 관련돼서 저도 한 말씀 할게요.

이게 결국은 확정판결이 되고 난 뒤에 도박이라든지 불법 관련된 행위를 한 경우 파악이 된다는 것은 결국은 법원에서, 법원행정처에서 행정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1년이라는 게 긴 것 같지만 실제로 이렇게저렇게 하다 보면 지나가 버릴 수 있으니까 그 관련되는 사항을……

제가 이해하기로는 고용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 게 지금 준비가 되어 있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제실장님.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지금도 1년에 두 차례 검찰청으로부터 국세청이 판결문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류성걸 위원** 1년에 두 번씩 해 가지고 되겠어요? 제 생각은 그런 판결이 있으면 즉시 행정부하고 법원행정처하고 이런 연계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예요. 제가 보니까 전체 세액은, 과세 대상 금액이 고지금액 연도별로 해 봐야…… 물론 금액 자체가 2020년에는 129억 이

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에 대해서 미리 구축해 주십사 하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양향자 위원님 말씀하시고 유경준 위원님, 박형수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까.

○**양향자 위원** 켄을 같이하는 내용인데요. 검토 의견 마지막을 보면 ‘과세권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조세행정이 필연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므로 검찰, 법원행정처 등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 등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모호한 걸 여기다가 적시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위원님들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정부안 시행과 함께 유기적인 협조, 적극적인 조세행정 이런 얘기가 아니라 뭔가 정확하게 기재를 하면서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모호하게 되면 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유경준 위원님.

위원님 말씀하시고 정부 측 답변 같이 하겠습니다.

○**유경준 위원**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불법소득이라는 게 지금 법정 정해져 있는 것에서 주로 뇌물·알선수재·배임수재를 말하는 것 같은데, 법원에서 판단을 한다는 것은 이게 다 몰수되는 것 아니에요? 몰수되는 것 같은데 왜 여기다가 소득세나 기타 세금을 받는다는 의미인지 그 부분이 잘 안 들어와서요. 몰수되는 게 아니라 일부는 자기 소득으로 가져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그러니까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몰수가 되는데 남아 있지 않은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유경준 위원** 미리 써 버린 것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그것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과세권이 있는 거지요.

○**소위원장 김영진** 박형수 위원님.

○**유경준 위원** 잠깐만, 그것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써 버린 부분에 대해서 과세권을 청구한다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그렇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 사람은 납세 의무가 있는데 납세 의무를 이행 안 한 부분이니까 채납을 하더라도 국세청은 과세권을 행사해야 되는 겁니다.

○**유경준 위원** 그리고 여기 21조 제1항의 경우에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 소

득인데 여기서 뭐가 불법이라는 거예요? 이미 받은 건데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경준 위원 10페이지 신설 조항에 제21조 1항, 23조, 24조로 되어 있는데 23조, 24조는 여기 있는 것처럼 뇌물, 알선수재·배임수재인데 21조는 기타소득을 말하는 거여서……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21조(기타소득) 안에 뇌물하고 알선수재·배임수재에 의해서 받는 금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경준 위원 그러면 이것은 받은 거잖아요, 이미? 이미 받아서 세금을 납부한 부분인데 차액을……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아니, 그 얘기는 기타소득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기타소득의 대상이 뇌물, 배임·알선수재로 받는 금품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유경준 위원 아니, 그것은 23조, 24조에 있어요.

○소위원장 김영진 23호, 24호입니다.

○고용진 위원 21조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유경준 위원 21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소위원장 김영진 예, 1호부터 22호는 생략되어 있고.

○유경준 위원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런 걸로 그러면.

○추경호 위원 예리한 질문이었어요.

(웃음소리)

○소위원장 김영진 박형수 위원님 말씀하시고 정부 측에서 답변하시고 정일영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예리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득이 남아 있다고, 안 써서 남아 있어서 과세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안 써서 남아 있는 부분 사실상 별로 없어요. 안 써서 남아 있더라도 남아 있으면 몰수를 하고 써서 없으면 추징을 하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각 법률에 의하면 벌금을 2배, 3배 이상 과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이익으로 보면 그 사람한테 이미 여러 번 박탈하는 겁니다. 그런데 근거가 다르다는 거지요. 이건 과세권에 기한 것이기 때문에 부과를 해야 된다는 측면이지 이익이 남아 있기 때문에 환수하는 방법으로 이걸 하는 건 아닙니

다.

○소위원장 김영진 아주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박형수 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시행 시기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지요? 시행 시기를 확정판결일이……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시행일 이후 처음으로 돌아오는 확정판결부터.

○박형수 위원 시행일 이후 확정판결되는 그 사건부터?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예, 확정판결부터.

○박형수 위원 그러면 판결이 진행되는 중간에 부과체척기간이 지난 사안은 어떻게 하지요? 판결이 진행되는 중간에 이미 부과체척기간이 지나 버렸다, 그게 확정판결은 이 법 시행 이후에 판결이 됐다 그러면 그것은 당연히 제외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시행할 때 생각을……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예,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제외하는 걸로.

○소위원장 김영진 정일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일영 위원 간단하게 이게 26조의2인데 1항부터 5항까지 쪽 있고 2·3·4·5항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자료에 없는 것 같은데 6항을 신설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예.

○정일영 위원 이게 1항에 5년, 7년 이렇게 되어 있고 2·3·4·5항은 몇 년으로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것과 궤를 같이하는데요. 체척기간 이게 시점이 좀 모호한 데다가 판결 확정된 날로부터 굳이 꼭 1년이라고 그걸 정부안에서 주장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2년이라든지 길게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납세자를 보호한다고 그랬나요, 아까? 그런데 이런 경우는 꼭 납세자를 보호할 만한 명분은 약한 것 같은데, 위원님들 질의한 것 생각해도 1년은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데 그 시스템이……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부과체척기간이라는 게 국세청에서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계속 늘리게 되면 납세자한테 불리한 결과가 되는……

○정일영 위원 아니, 계속 늘려 가는 게 아니라 이런 특수한 경우에 신설 특례니까 판결 확정……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그리고 이게 후발적 사유에 의한 건데 형사 판결뿐만 아니고 조세

소송에 의해서 판결 난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판결일로부터 1년으로 되어 있고요. 다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것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들도.

○정일영 위원 다른 타 예가 그래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정일영 위원 2·3·4·5항이 그런 겁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여기 다른 항들이 안 나와 있는데……

○정일영 위원 2·3·4·5항이 그런 조문이에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전 항 국세 부과제척기간 특례 적용범위 조정하는 그 위의 것 있지 않습니까, 2번의 가변 같은 경우에도 판결일로부터 1년으로 되어 있고요.

○정일영 위원 다른 예가 다 1년입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정일영 위원 2·3·4·5항을 보면 좋겠는데 선례가 있다면 따르는 것도 괜찮겠지요.

○소위원장 김영진 전체적으로 이 안에 대해서는 확인됐고요. 개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정 합의한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항 진행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명호 13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대상 금액 증액 관련되는 정부안입니다.

현행 47조의4, 47조의5에 대해서는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관련 규정이 있는데요. 현행은 100만 원 미만인데 개정안은 150만 원 미만으로 상향하자는 의견입니다.

14페이지 보시면 현행 국세기본법에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미납 또는 과소 납부하거나 초과 환급받은 경우—이건 제47조의4입니다—그다음 원천징수 등 의무자가 징수해야 할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한 경우—이건 47조의5입니다—납부지연가산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납부고지서별·세목별 기준을 현행 100만 원 미만에서 150만 원 미만으로 상향하자는 의견입니다.

현행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 100만 원은 2008년도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범위를 확대하여 납세자의 금전적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입법으로 보입니다. 다만 첫째, 면제기준 금액이 소액인 점을 감안할 때 납세자 1명이 체감하는 납부부담 완화의 정도는 크지 않은 반면에 개정안처럼 상향할 경우 5년간 739억 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하고, 면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였거나 미납 세금의 조기 납부를 위해 노력한 납세자와의 과세형평에 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참고로 정부는 개정안과 동일한 취지로 관세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납세의무자가 납부 지연할 때 거기에 가산세를 물리는 부분인데요. 지금도 소액은 한 100만 원 정도까지는 가산세를 안 물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거 2008년에 100만 원으로 인상된 부분인데 13년 동안 동일한 수준이라서 최근 변동 같은 걸 보고 또 과세관청이 가산세를 부과하다 보면 소액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행정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 고액 체납 이런 데 더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의 행정비용 같은 경우도 좀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중소 납세자 이런 분들이고요.

그리고 아예 세금을 안 받겠다는 게 아니라 본세는 당연히 받는데 거기서 납부 지연해서 가산을 하는 그 파트에 대해서만 약간 면제를 해주겠다 이런 거고요. 그 파트 역시 두 개인데요. 보통은 한번 납부기한을 정해 놓고 안 내시면 그때 되면 한 번 더 기회를 주는데 그때 보통 가산세를 물립니다. 그래서 체납 전 가산세 그건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그런데 그걸 도과해서 체납 후에 먼저 일시에 부과되는 게 또 한 번 있습니다. 그러고도 안 되면 또 계속해서 가산세를 물리기 때문에 그 뒷부분 뒷부분 이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 한 50만 원 상향을 해도 여러 가지 취지를 봤을 때 타당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영 위원님, 류성걸 위원님, 김주영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정일영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확인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이게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올린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200만 원도 아니고 130만 원도 아니고 그냥 한번 기준 50만 원 올려서 150만 원으로 한다는 건지 근거가 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차관님 설명하신 그게 고지서가 나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1월 말까지 납부 안 하면 좀 붙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예.

○정일영 위원 그런데 그건 그냥 유지가 된다는 거지요? 그러고 나서 또 재차 고지될 때 그 가산금을 얘기하는 건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예.

○정일영 위원 예를 한번 들어 줘 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부세 같은 경우가 곧 나오지요? 그러면 중부세가 부과되고 1차 그게 얼마예요, 한 달이예요, 중부세 같은 경우?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그건 15일입니다.

○정일영 위원 15일?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예, 그건 다른 세목이랑 약간 달라서 15일.

○정일영 위원 중부세 여기 해당이 돼요, 안 돼요? 되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되지요.

○정일영 위원 되지요, 당연히?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예.

○정일영 위원 그러면 15일 부과, 내지 못하면 몇 % 붙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위원님, 그것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까요?

○정일영 위원 예.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 말까지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5월 말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납부를 안 했을 경우에 국세청에서 기일을 지정합니다. ‘며칠까지 내세요’라고 하는 게 법정납부기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이 고지서상의 ‘언제까지 내십시오’ 할 때 이 기간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는 일할분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납부 고지한 다음에, 예

를 들어서 5월 말 신고했는데 납부를 안 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 7월 1일까지 내라 했는데 그때부터 안 내면 이때 안 냈을 때 3%의 가산세는 또 붙입니다. 그러고 나서 지나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15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이 일할분 가산세를 면제해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정일영 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종합소득세라고 해요. 그걸 5월 말까지 내야 돼, 그런데 안 냈어, 그러면 몇 %가 붙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일할로 0.025%.

○정일영 위원 일할로?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예.

○정일영 위원 매일매일 계산해 가지고?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예, 그렇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것 지난번에 바꾸지 않았나요, 그것 일할이 아니라 월 그걸로 한번 바꾼 것 같은데?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아니요.

○정일영 위원 생각해 보시고요. 바뀌었을 거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월할에서 일할로 바꾼 겁니다.

○정일영 위원 월에서 일할로 바뀌었나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예.

○정일영 위원 그래 가지고 그다음에 2차로 부과되는 게 3%?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국세청이 납부기일을 정해 주거든요. 이게 법정납부기한인데 이때까지 안 내면 3%의 가산세를 내고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계속 또 일할로 0.025%……

○정일영 위원 지금 얘기하는 게 3% 그거예요, 아니면 그 뒤의 일할이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뒤의 일할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일영 위원 뒤의 일할?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예.

○정일영 위원 그런데 뒤의 일할 150만 원은 그 과세액이 150만 원 미만으로 바뀐다 그건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예, 그렇습니다.

○정일영 위원 과세표준이?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그러니까 가산세 대상이……

○정일영 위원 세금이?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아니요, 세금이 아니고 채납, 내지 않은 세금이지요.

○**정일영 위원** 채납 금액이?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채납금액이 100만 원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붙이는데 100만 원 아랫부분은 소액이니까……

○**정일영 위원** 그걸 150만 원으로 올린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그 얘기입니다.

○**정일영 위원** 왜 150만 원이에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결국 아마 10만 원 단위로 끊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국민들이 쉽게 받아들이셔야 되니까.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08년 대비 소비자물가나 국민총소득 증가한 것 보면, 그 퍼센티지로 하면 그 레인지(range)에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정일영 위원** 한 가지만 물을게요.

1년에 해당되는 분이 몇 사람이나 돼요, 국민이?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제가 봤더니 실제로 그 구간, 100만 원 미만 분들이 고지분 중 채납되시는 부분이 136만 건, 이게 비율로 한 46%인데 금액 기준으로는 2.6%, 그런데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이 구간은 24만 4000건, 그게 건수 비중으로는 8.3%, 그런데 금액 기준으로는 한 1.6%. 그러니까 건수는 많은데 금액은 적은 이런 분들……

○**소위원장 김영진** 류성걸 위원님, 김주영 위원님.

○**류성걸 위원** 지금 이 건 한 건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 건이 관련되는 사항이라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할게요.

제가 세법 개정안 관련해서 보면 제가 자주 쓰는 말이 피스밀(piecemeal)로 또는 모자이크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게 완전히 누더기가 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차관께서 소비자물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세법 관련해서 금액에 관련되는 사항을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고칠 것 같으면 전부 다 해야 돼요. 어떤 것은 소비자물가 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어떤 것은 뭐 하고, 여기 나와 있는 정부안에 쓰는 단어들을 보면 소비자물가, 최저임금 인상, 기준중위소득 인상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각 세법의 개별 조항 조항마다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해 났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절대 반대예요. 무엇을 절대 반대하냐 하면 제가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게 전체적으로

로 검토를 안 하고 그 한 건 한 건 관련돼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정합성도 없고 당연히 이렇게 됐을 때 다른 납세자 또는 채납했던 사람들하고의 관계…… 뒤에 물론 거기에 이것도 돼 있네요. 15쪽에 보면 참고로 관세법, 이것 관세법만 개정되는 것뿐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금액 자체를 얼마를 올릴 것인가 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법 전반에 대해서 이것을…… 조금 전에 아까 정일영 위원님 말씀대로 ‘왜 그것 100만 원에서 130만 원이 아니고 또 150만 원이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 검토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소비자물가 관련해서 최저임금 관련해서 아니면 기준중위소득 관련해서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다 해야 되고 이것 한 건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겁니다. 지금 소득세 과표 구간 관련해서 1200만 원, 4600만 원, 8800만 원, 1억 5000, 3억, 5억, 10억 이렇게 쭉 돼서 여덟 구간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만들 때도 제일 처음에 우리 세제 개편하면서, 진짜 세제 개편하면서 1000만 원, 4000만 원, 8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왜 손을 안 대냐 이거지요. 그런 큰 문제는 놔두고 조그마한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한다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해요. 또 EITC도 마찬가지로요. EITC 같은 경우는 왜 3600에서 갑자기 무슨 저것을 해 가지고 200만 원씩 올리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이런 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금액에 관련되는 사항이라면 다 해당이 되는 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 자체로 봐서는 적은 건이지만 세제 전반으로 봐서는 굉장히 큰 단초를, 새로운 검토를 해야 될 단초를 제기하는 사항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이것뿐만 아니라 세법 조항 한 개 한 개가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그런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김주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주영 위원** 저도 존경하는 류성걸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아까 앞의 두 건에서는 세수 손실에 대한 우려를 표시해서 세법을 개정하는데 국세청에서 징수하는 채납액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 아닙니

까? 그런데 오히려 앞부분에서는 세수 감소를 우려해서 새로운 법 개정을 하는데 지금 조항에서는 739억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체납을 줄이기 위해서 좀 더 징벌적 과세가, 가산세가 좀 필요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배준영 위원님.

배준영 위원님 말씀하시고 정부 측 답변해 주세요.

○배준영 위원 저도 류성걸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는 바가 크고요. 이게 세법뿐만 아니라 관세법 개정안도 지금 100만 원에서 이렇게 좀 조정을 하는 것으로 하게 돼 있는데 이런 것을 큰 틀에서 어떤 시기에는 어떻게 올라가야 된다 이런 원칙을 갖고 해야지 이렇게 누더기식으로 이것 하고 저것 하고 하다 보면 글썽요, 체계를 올바르게 했을까 그런 걱정도 좀 됩니다. 그것 포함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지요.

○박형수 위원 저도 한 말씀 하고……

○소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박형수 위원님 말씀하시고 정부 측이 종합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박형수 위원 저도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들하고 생각을 같이합니다. 이게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올리는 것이 조세정의에 부합하느냐 부합하지 않느냐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지 이게 단순히 그냥 물가상승률이 올랐으니까 그전에, 이전 몇 년에 50%, 50만 원 올랐으니까 한 몇 년 지났으니까 다시 또 50만 원 올려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납부를 해태한 사람에 대한 부가적인 제재의 성격인데 이것을 조세정의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고 단순히 아까 물가상승률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방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일하게 이게 가능한 또는 이게 이유가 있으려면 이렇게 하는 것의 행정비용이 실제 받는 액수보다도 더 많이 든다 그러면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돼요. 조세정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비용을 더 낭비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이렇게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이것은 별로 그럴 것 같지가 않아요. 과표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올리더라도 여전히 똑같은 행정비용이 들거든요, 내리든 올리든.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서도 특별히 행정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이런

게 없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익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없는 제도를 새로 신설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세수 결손 방지해야 되고 당연히 체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뭔가 메시지를 줘야 되지만 행정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서 이런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제도의 취지 자체가 있었다는 게 하나고요. 다만 그 부분을 약간 더 상향해서 변화된 여건을 반영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의사결정이 하나 필요한 거지, 없는 제도가 갑자기 신설되는 것은 아닌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 주신 대로 사실은 원칙 없이 가야 되고 그런 것은 다 중요하고 저도 충분히 그 말씀 항상 숙지하고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다른 과세표준을 정하는 것과 이것은, 이런 제도에서 면제를 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는 것은 일대일로 같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과세표준 같은 경우도 덩치가 크고 그래서 전체적인 것이고 이것은 면제를 줄 것을 얼마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어서…… 물론 큰 맥은 같지만 또 세부 사정을 보면 약간 다른 측면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소위원장 김영진 류성걸 위원님 말씀하고 이것은 약간 정리하겠습니다.

○류성걸 위원 그래서 차관님, 우리 위원님들 또 제가 이야기드리는 것은 각 개별적인 어떤 합리성이나 정합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제 전체를 봤을 때의 큰 틀 속에서 보자는 건데, 그 속에서 큰 틀을 이야기하는데 조그마한 것, 이렇게 ‘기존에 없던 것이 새로 생기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논의가 안 되는 거예요.

차관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제 차원에서 또 법률전문가이신 박형수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차원에서 봐야 되고.

이게 지금 세법 개정안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예를 들어서 다른 측면, 다른 분들이 이야기했을 때 해태해서 지연가산세를 매기는 쪽에는 해 주는데 아마 다른 데서 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잘 했는데 이것은 왜 안 해 주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드리는 것은 큰 틀

속에서 보자는 이야기이고, 이 부분은 굉장히 작은 거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작은 거지만 큰 틀을 고쳐야 되는 단초를 제기하는 문제예요.

이상입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그리고 질문 주신 것 중에……

○**소위원장 김영진** 아니요, 김수홍 위원님 얘기하고 종합해서 말씀 주시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수홍 위원** 여러 위원님들 의견 존중하고요. 저는 과세정의도 중요하고 과세형평도 중요한데, 그 형평이 시대적 상황을 반영했을 때 형평인데 한번 위원님들한테 그런 것을 2008년과 비교해서 비율이나 이런 것을 좀 제시해 주고 또 조기 납부자나 성실 납세자들이 이런 부분에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정부가 제시하면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종합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박형수 위원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저도 동일한 생각을 가졌거든요. 이게 진짜 얼마나 행정적으로 힘든 것이고 뭐 그런 거냐, 그런데 아마 실무진들이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기회를 주시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세청에서 그런 부분이 올라온 부분이 있어서요.

○**소위원장 김영진** 배석해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예.

○**소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성함 말씀하시고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발언대로 나가 주세요.

○**국세청징세법무국장 송바우**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송바우입니다.

설명을 드리면 아까 박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행정비용하고 비교하는 측면에서 150만 원이 체납이 되면 연리 3%니까 1만 얼마 정도는 저희가 감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고지서를 보낼 때마다 약 4000원의 등기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는 문자를 보낼 때도 몇백 원가량의 소정의 비용이 들어가서 행정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100만 원 미만, 150만 원 미만 체납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이 부분을 보면 대부분이 영세 자영업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가게 보고 시장에

서 일하고 하다 보면 부가세 같은 경우에 특히 소액 체납이 많아지는데요. 납기일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매번 납기일을 놓치는 분들한테 이분들한테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야 되느냐 하는 그 부분에서 저희가 이 100만 원 미만 납부자연가산세를 폐지하자는 부분이 처음에 도입이 됐었고, 지금 와서 보니까 물가도 상승하고 해서 그게 100만 원 미만 할 때 아까 말씀 들으신 것처럼 136만 명…… 전에는 100만 명 미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점점 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 위로 그 납세자들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십몇만 명에 대해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미만으로, 전에는 100만 원 미만이었었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분들에게 계속해서 정부가 좀 배려를 하고 있다 이런 혜택을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가 자진해서 개정 건의를 했습니다.

○**류성걸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라면 그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지금 행정부에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 보면 아주 큰 틀에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또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하고 세부적으로, 부분적으로 보는 부분하고 완전히 이야기가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취약계층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를 하면 되는 겁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국세청징세법무국장 송바우** 예.

○**류성걸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논의하는 것하고 전혀 엇박자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관님, 이것은 제도에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국세청 실무자가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한다면 취약계층에 대해서 가산세 없애십시오. 그게 맞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논의는 그런 틀이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인 사항하고 전체 틀을 이야기하는 사항을, 지금 서로 핀트가 안 맞다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 없고 또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어서 진짜 자영업자라든지 또는 소상공인 지원

하는 사항에 대해서면 소상공인 관련되는 사람은 가산세 없애버리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틀하고 이 논의하는 것과고는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수 위원 동의하는 의견 추가합니다.

○류성걸 위원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소위원장 김영진 제가 보기에겐 개정안 취지의 실질적인 것 속에서 면제 금액을 올리는 취지를 사실은 사전에 먼저 정확하게 국세청 담당 국장이 얘기를 하고 논의를 진행하면 전체 면제…… 그 해당되는 과세 대상자들의 분포가 사실 그런 경우가 많아서, 놓치는 경우가 많아서 계속 가산, 가산에 또 그에 들어가는 등기 4000원 플러스알파하면 실제로 실효적으로 큰 금액에 대해 유효하지도 않고 행정비용, 두루두루 한 문제를 판단해서 면제 금액을 올리는 것으로 상향을 했는데 또 이런 기준에 대한 말씀들이 있으셨고, 그렇다고 해서 영세 자영업자를 구분해 낼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라는 것도 현재로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 한 번 더 논의를 하시지요. 제가 보기에 조금 숙의를 한 다음에 이것은……

○류성걸 위원 이것은 보류입니다, 보류.

○소위원장 김영진 그래서 한 번 더 이번 회기 내에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번 전문위원 말씀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정명호 16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제69조에 규정된 심판청구서 제출기관을 확대하는 겁니다.

17페이지 보시면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국세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 사후적 구제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 심판청구 절차와 관련해서 자료제출, 그러니까 심판청구서 제출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18페이지 보시면 심판청구 같은 경우에 현재 심판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이나 조세심판원에게 제출해야 함이 원칙이고요, 위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적합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감사원장, 지방자치

단체의 장을 추가하여 조세불복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를 편리하게 하자는 의견입니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해당 기관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정상 청구로 인정한다면 납세자의 권익보호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첫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후적 권리구제 절차와 관련이 없는 기관이고 감사원은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심사청구 처리기관임을 고려할 때 조세심판의 청구서를 해당 기관에 제출하도록 인정해 주는 것은 법률 체계의 정합성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고요.

둘째,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 절차와의 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은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조세불복 절차로서 동일한 효력을 가진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중에서 심판청구에 대해서만 청구서 제출기관을 확대하는 것은 심사청구를 한 납세자에게 절차상 불리한 차별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입장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이것도 영세납세자 같은 경우는 관련 규정을 잘 모르서 갖고 사실 어디에다 제출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아마 조세심판 하는 그런 사례들이 나와 있고요.

그런데 결국은 이게 신청한 날로부터, 90일 내에 신청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도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처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나 감사원장에 보냈는데, 물론 정부 내에서는 민원이 있으면 해당 기관으로 보내기는 하는데 거기서 며칠 까먹으면 사실 어떤 경우는 90일이 도파돼 버려서 사실상 소송하실 수도 없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실제로 국세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민원을 통해서 받은 기관이 아니라 중앙행정심판원, 감사원장, 지방자치단체 등 모르고 보내셨어도 90일 카운트할 때 그 날짜로 카운트하자 이런 것이 돼서요, 저희들은 보면 납세자의 권리구제 차원에서는 필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수 위원님.

○**박형수 위원** 지금 잘 모르시는 국민들이 잘못 제기를 했을 때 그것을 구제해 주자라는 취지는 옳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법 체계상 맞는 것인지는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지금 세금에 관련된 문제인데 감사원에다가 제출하는 이런 것을 적법한 제출로 보자 이렇게 돼 버리면 왜 꼭 감사원만 들어가야 되느냐, 모든 국가기관에다가 다 제출하면 다 그것을 구제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가 생기고.

간단하게 하나 예를 들면 검찰청에 제출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감사원에 제출하는 경우는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세무서가 잘못했으니까 감사해 가지고 바로잡아 주세요’ 이 러잖아요.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검찰청에다가 제출하면서 ‘이러이러해 가지고 저 사람들이 잘못했으니까 저 사람들 처벌해 주세요’ 이렇게 제출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재판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 사람들 잘못했으니까 심판을 철회하 도록 해 주세요’. 이것까지도 다 구제를 해 줘야 되는 것인지, 그렇게 과연 가능한지, 근본적인 생 각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범위를 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어떻게 보 면 약간 비슷한 성격이 있어서, 또 근본적으로는 성격이 다른 기관이기는 한데 이것은 포함될 수 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다른 기관들은 성 격이 완전 다른 기관이어서 이것을 과연 이렇게 포함했을 때 이게 유지가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단순히 한 번에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충분히 더 논의를 해 보고 취지와 실제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검토를 해 봐 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위원님, 지금 말 씀하신 것을 조금 설명드릴까요?

○**소위원장 김영진** 예,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전문위원 검토보 고 17페이지에 보시면요 행정소송 가기 전에 불 복을 제기할 수 있는 게 국세청에 심사청구할 수 도 있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할 수 있고 감사 원에 심사청구할 수 있고 그래서 감사원은 그런 게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기도 지방세 를 부과·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세랑 유 사한 지방소득세도 있고 해서, 또 굉장히 지자체

는 많고 그렇기 때문에 납세자들이, 또 잘 모르 는 납세자들이 아무 관청에나 갈 수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을 고려한 겁니다.

그래서 법원, 검찰 이런 데까지 확대하는 것보 다는 지금 이 사후적 권리구제 절차 틀 내에서 저 희가 이것을 확대한 것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류성걸 위원** 조금 전에 세제실장님 말씀대로 납세자의 권리구제라는 그런 차원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매우 행정편의적인 그런 발상인 것 같아요. 매우 행정편의적인 발상 이에요.

조금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무런 저거 없이, 아까 뒤에도 그런 게 나오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어떤 행정청을 특정하지 않고 이런 형태 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지방자치단체장, 관계없는 지방자치단체장도 다 들어가는 형태가 되고.

이게 뭘니까, 이게? 완전히 불특정 지방자치단 체장을 전부 다 이런 형태로 한다는 것은 진짜 말하여 너무나 행정편의적인 그런 발상이라는 말 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대로 이 위에도 마찬가지로 인 데 세무서장하고 관련되는, 직접 관련되는 세무 서장 또 나머지의 세무서장으로 구별을 하듯이 지방자치단체장도 만약에 넣는다 하더라도 그것 과 관련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이라고 그렇게 넣어 야 될 것 같고. 왜? 아까 대법원의 경우에 대법 원 판례가 뭘니까? 제척기간이라고 하면 세목에 관련되는 그 세목만 해당이 되는 이런 엄격한 판 단을 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행정편 의적으로 넣는다는 것은 진짜 안 되는 이야기고.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다른 방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납세자의 권익보호라든지 이런 차원으로 본다면 대상 기관을 확대해서 하는 것보다는 다 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 야 돼요.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김수홍 위원** 제 것도 같이 해서……

○**소위원장 김영진** 예, 김수홍 위원님.

○**김수홍 위원** 저도 조금 이해를 못 하겠어요. 기업 하시는 분들이나 또 재산이 많은 분들은 상 당히 많은 세무사와 연관이 돼 있고 지방세무 서에 들락날락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심판

청구할 수 있는 기관을 확대한다고 그분들이, 예를 들어 익산세무서에 있는 분들이 광주지방청까지 가서 심판청구하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 가서 하면 지방자치단체도 이게 무슨 일인가 할 정도로 조금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으니까요 지금의 제도도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한번 좀 고려해 보시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저희가 지금 이것을 확대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게 조세심판원에서 저희한테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중앙심판위원회에 누군가가 심판청구를 했는데 90일이 지나 버려 가지고 각하가 돼 버린 이런 사건들이 자꾸 발생하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에 저희한테 건의를 한 건데…… 그러니까 제출 기관을 모든 기관으로 확대한 게 아니고 만에 하나 여기다 갖다 줬더라도, 다른 데다 갖다 줬더라도 90일 기산을 그때부터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류성걸 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세제실장님 진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다른 기관에 이렇게 제출했다가 기간이 도과했던 경우라면 그 기간을 도과하는 것을 방지하는 이런 형태의 방안을 마련하면 되는 것이지 제출 대상 기관을 갖다가 막 늘려서 하는 게 제가 이야기했던 아까 용어, 너무나 행정편의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대상 기간이 도과했을 때 그것을 구제할 수 있는 그 핵심 방안을, 아이디어를 내시면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박형수 위원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왜 아까 내가 이게 법 체계상 정합성에 어긋난다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개인이든 단체든 권리구제에 제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법원이잖아요.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하는데 법원에 제출하지 않고 항소장을 검찰청에 제출하든지 자치단체에다가 제출하더라도 이게 다 항소 기간 속에 포함되는 걸로 이렇게 만들면 국민은 편안할 거예요. 그리고 구제되는 국민은 많지만 전체적인 법률이 그렇게 안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법에도 보면 이런 절차들이 많아요. 아까 얘기한 법원의 항소 절차를 어디 기관에 제출해야 된다고 돼 있고 검찰청도 마찬가지로 또 다른 기관에도 어떤 불복을 할 때는 어디에 뭘 제출해야 된다고 다 규정을 해 뒀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국세청 또는 기재부만 이렇게 확대를 해 놓으면 다른 법률하고 이게 정

합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형수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 봤는데요. 지금 보면 행정심판법이라고 있습니다. 행정심판법에 이미 유사한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도 ‘행정청이 불복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거나 잘못하여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한 경우 그 기관은 그 심판청구서를 지체 없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피청구인에게 보내야 한다’, ‘심판청구서를 보낸 기관에 청구서를 제출할 때 적법한 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미 다른 법에, 법 체계가 그런 게 있어서요 그것을 저희들이 따왔고요.

그다음에 말씀 주신 대로 그러면 어느 기관까지 그것을 확대할 거냐? 지자체 같은 경우에 피상적으로 보면 당연히 지자체 뭐가 유사하냐 그러지만 결국 국세랑 지방세가 섞여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국세고지서를 받아도 이게 국세인지 지방세인지, 다 비슷한 세금 아니냐 하셔서 지방자치단체 이런 데다 보내시는 분들도 있어서,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저희들이 무조건 다 확대해서 그렇게 하겠다 그런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박형수 위원 자꾸 얘기하게 만드는데요,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일반 국민들은 법원하고 검찰청하고 잘 구분 못 해요. 다 그게 그건 줄 알거든요. 그런데 법은 항소장은 법원에 제출하도록 돼 있고 항고장은 검찰청에 제출하도록 다 구분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구분 없이 다 받아 주면, 그게 무한정 확대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에 항소장 제출해도 이송하면 그 기간으로 포함시켜 준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범위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좀 더 해 봐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심판청구서 제출기관 확대는 사실은 선의로, 관련해서 조세심판원에 보내지 아니하고 다른 기관에 보내면서 기간이 도과돼서 권리가 침해당하는 경우가 사실은 뭐 그렇게 고소득자나 이런 분들은 아닐 거고 일반적으로 억울하다 이런 것을 내는 사람들이 잘못 내는 경우를 사전 예방하고 넓혀 주기 위한 그런 취지로 이 개정안이 제출된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상식적으로 그 관할 세무서가 있는 곳의 지방자치단체 또 지방국세청 그런 정도로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않을까요, 잘못 보내는 범위가? 그래서 그 범위로 보면 이것은 과세 대상자들의 권리를 나름대로 좀 더 확대하는 부분이라서 만약에 여기에 더 추가되거나 뺄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고요.

일단 이것은 이번 회기에서, 이것도 민감한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더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시고, 박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타당한 논지입니다. 항고와 항소와 법원과 검찰이라고 하는 명확한 기관이 있는데, 조세심판원으로 규정이 돼 있는데 그것을 열어 주는 사안이라서 그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인데 한번 하셔서 이것은 이번 회기 중에 같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성걸 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간단히 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게 예를 들어서 잘못 제출해서 했을 때의 이익과 온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관련되는 업무를 분담하고 새로 관련됐을 때의 비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다음 5항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명호 20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 연기 중단 사유 및 조사재개 절차 신설 관련되는 정부안입니다.

현행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에서 세무조사의 통지 및 연기신청 관련되는 조항이 있는데 여기에 세무조사 연기 중단 및 조사재개 절차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22페이지에 보시면 현행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시작 15일 전에 사전통지하도록 돼 있고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 연기를 중단하기 위한 세무조사 재개 사유와 절차는 법률에 규정되지 않아서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과세 관청의 정당한 세무조사 집행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세무조사를 연기한 경우 조사의 재개 사유와 절차는 국세청 훈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훈령으로 규정하기보다는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것이 법률유보원칙에 부합한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세무조사 중지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세무조사 재개 사유와 절차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 조사 개시 5일 전까지 통지하도록 돼 있는데 당초 사전통지 기간은 15일인데 개정안처럼 5일로 할지, 사전통지 기간에 준해서 15일로 할지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의 자구 수정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이미 규정들이 있는데 납세자의 권리라든지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지금 훈령에 있는 것을 상향해서, 형식상 상향해서 법률로 격상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의견 주신 게 보통은 조사 개시 15일 전에 통지를 해 주는데, 원래 하기로 했다가 연기하고 나서 다시 재개하는 경우는 똑같이 15일 정도를 주는 게 어떨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미 연기한 것은 언젠가는 이게 진행이 되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한 5일 정도만 해 줘도 사전 준비하는 데 크게 지장이 없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걸 위원님.

○류성걸 위원 국세청에서 혹시 나오셨나요?

○국세청조사국장 김동일 예.

○류성걸 위원 국세청의 법령 그러니까 법규 이외의 규정들, 훈령·예규·통칙·지침·규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지요? 한 몇 가지 정도 됩니까?

○국세청조사국장 김동일 제가 지금……

○류성걸 위원 제가 국세청을 직접 담당하면서 그 책을 모았더니만 책이 이만큼 돼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세제실장님,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 개만 할 게 아니라 조금 전에 제가 국세청 국장님께 여쭙봤듯이 국세청 예규·통칙·지침 그다음에 규정 관련돼서 전부 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십시오. 거기에 법규 사항이 들어가 있는 게 수두룩해

요.

그래서 조금 전에 세무조사 관련해서도 법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훈령이라는, 물론 훈령의 법규성에 대해서는 판결에 의해서 일부는 인정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인정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이외에 예규·통칙·지침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명칭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지금 하나의 예로 들 수 있는 그런 사항이다 보고, 세제실에서는……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세법 관련해서 제가 늘, 수년 동안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세법이 누더기가 되고 모자이크식으로 되고 이렇게 됐던 것은 전체적인 검토를 안 하시고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만 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국세청 국장님, 이것뿐만 아니라 저한테 국세청 관련된 예규·통칙·지침 포함해서 국세청 테이블 밑에 있는 관련되는 규정들 목록을 전부 다 주십시오. 세목별로 정리를 해서 목록을 주시고 또 세제실에도 제출을 해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이것뿐만 아니고—그렇게 좀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일영 위원님 말씀하시고……

좀 기다리세요, 여기 또 질의하실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정일영 위원 오늘 오전에 보니까 정부 측에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대상 확대나 심판청구서 제출기관 확대 등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설명이 부족하거나 전후가 바뀌어 가지고 좀 엉키는 것 같은데 하여튼 설명을 정확히 해 주시면 오후에 더 좋을 것 같고요.

세제 이게 누더기다 뭐다 하는 얘기는 그동안 거의 몇십 년간 많이 얘기돼 왔잖아요. 그러니까 국세청이나 기재부 세제실에서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을 잘 유념해서 종합적인 체계 좀 만드시고. 그런데 또 그것을 다 하다 보면 못 하잖아요, 이런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필요한 것은 또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종합적인 것 다 하는 것도 추진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 건만 말씀을 제가 조금만 드리면, 우선 정확히 팩트 확인 차원인데요. 세무조사 연기가 보통 평균 얼마 동안 연기가 돼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연기가 된 상태라고 그러면 15일 다

시 통지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기간이 짧다 그러면 다시 시작하는 거니까 5일이면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보통 평균 며칠이나 연기가 되고 그래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그것은 평균……

○소위원장 김영진 국세청 국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국세청조사국장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입니다.

연기 일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구체적으로 통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이 법안과 관련해서 지금 카운트를 검토 중입니다.

○정일영 위원 아니, 제 생각에는 이것이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연기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국세청조사국장 김동일 이게 여러 가지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일수가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렇지요, 물론 그런데 그래도 일선 하는 분들은 통계가 있겠지요. 그것 좀 이상한데……

○국세청조사국장 김동일 대부분의 경우는 아마 30일 이상인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

○정일영 위원 얼마요?

○국세청조사국장 김동일 대부분의 경우는 30일 이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렇겠지요, 30일.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질병, 심각한 어려움, 화재 이런 거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간이 좀 길거나, 국민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것도 한 15일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굳이 5일로 해 가지고…… 5일은, 세무조사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5일은 금방 후딱 지나가 버리는데 준비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15일이 좋은 것 같아요.

○소위원장 김영진 국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15일에서 5일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조정하는?

○국세청조사국장 김동일 이게 아까 기재부에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처음에 조사를 착수했을 때 하고 조사 연기된 상태에서 납세자의 심적 상태 같은 경우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일만 하더라도 납세자들의 예측 가능성이라든가 편의성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그렇지요.

세제실장님.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연기 사유가 자기가 아파서 연기를 했으면 내가 다 나왔다는 것은 납세자가 제일 먼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세무서에다 ‘나 다 나왔으니까 세무조사해도 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국세청이 ‘그러면 5일 이따 세무조사하겠습니다’라고 통지를 하기 때문에 연기 사유가 소멸이 됐다는 것 자체는 납세자가 더 국세청보다 빨리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일영 위원** 잠깐, 본인이 그렇게 다시 ‘난 그 사유가 소멸되었습니다’라고 세무서나 국세청에 얘기를 합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통상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일영 위원** 그럴 것 같다는 게 아니고 정확히.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질병 때문에 연기했다 그러면 자기가 얘기를 하든 세무서에서 ‘그것 다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어요’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다 나왔으면 가만히 있다가, 다 나왔는데 가만히 있다가 며칠 있다가 국세청에서 ‘다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다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니까요.

○**정일영 위원** 조사국장님, 그게 지금 규칙인가 어디에 뭐라고 돼 있다면서요. 그게 본인이 중단 사유가 소멸된 것을 다시 통지·신고하게 돼 있습니까?

○**국세청조사국장 김동일** 저희들은 연기신청 결과 통지를 할 때 연기된 조사기간을 명시해 가지고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멸 사유에 대해서 납세자들이……

○**정일영 위원** 예를 들어서 한 달 동안 중단합니다, 두 달 동안 중단합니다 할 때 그 통보가 간다 이거지요?

○**국세청조사국장 김동일** 예, 본인들이 신청할 때 연기 기간을 신청을 합니다, 기간을 언제까지 연기하겠나.

○**정일영 위원** 그러면 예측은 되는 거네. 그러면 오히려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이것은 전체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크게 그런 체계가 아니고 충분하게 시간을 예고한 다음에 플러스 5일을 주는 형태인데 현재 15일이 되니까 너무 늘어지는 형태로 조사의 연속성이나 또 과세 대상자도 관련한 부분으

로 하는 게 유효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무리 없이 합의된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6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호** 2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가공·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제재 강화와 관련된 정부안입니다.

현행 국세기본법 85조의5에서는 예외적으로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요. 개정안에서는 인적사항 등 공개 대상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범죄—세무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자입니다—이 경우에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인적사항, 부정 기재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추가하자는 의견입니다.

27페이지 보시면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에 따라서 1, 2, 3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세정보통신망 등에 게시하는 방법을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하여 가중처벌된 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려는 것입니다. 실제 거래 없이 발급하거나 제출한 세금계산서, 매입·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가공·허위로 기재한 금액이 30억 원 이상인 경우가 그 대상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허위로 세금계산서 등의 자료를 발행하고 이를 활용하여 세금을 탈루하는 행위는 성실 납세자들의 납세 의욕을 저하시키고 세정을 문란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가공·허위 계산서 발행·제출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것은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세금계산서 제도는 부가가치세 제도의 근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뿌리째 흔드는 자료상 이런 부분의 위법행위 부분은 좀 엄히 다뤄야겠다 그런 측면에서 고액 자료상의 명단을 공개하자 이런 것들이 저희들의 입법 취지가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이의가 없는 거라서 이것은 합의돼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7번까지 하고 잠시 정회했다가 2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호 31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위임근거 마련입니다.

현재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금품수수 및 공여에 대한 과태료,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경우 법률에서 과태료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현행 위임근거가 없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위임근거가 없어서요, 세 건 모두 과태료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행 법은 세부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도의 위임근거 없이 국세청 훈령인 세법상 과태료 양정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법률의 구체적인 시행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아닌 훈령에서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 체계상 부적절한 면이 있습니다.

3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국민은 금전적인 이행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법령에 그 기준을 규정하는 것이 입법상 원칙임을 감안할 때 개정안의 입법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이와 관련된 동일한 취지의 5건의 개정안이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같이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지금 현재 훈령에 규정돼 있는데요 이 부분의 부과기준을 상향 입법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런 취지에서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보고 저희들이 개정안을 냈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정일영 위원 좋은 것 같습니다. 찬성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이것은 특별한 사안이 아니라 훈령을 법령으로 상향해서 규정을 하고 나머지 다섯 가지 법률안에서도 논의가 되면 이 취지

에 맞게끔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논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했다가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회)

○소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다음 순서 항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호 소득세법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 소형주택 특례 일몰 연장 관련입니다.

현행 소득세법 제25조제1항에서는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전세보증금 합계액 3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대해서 과세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형주택 특례 내용이 있는데요, 전용면적 40㎡ 이하로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데 현행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자는 내용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는 3주택 이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여 그 전세보증금 합계액 중 3억을 초과하는 금액의 60%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과세하는 부분인데요, 2010년도부터 과세하고 있습니다.

이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에서의 소형주택 특례는 2011년 세법 개정으로 도입되었고 하단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도입 이후 계속적으로 면적기준 및 기준시가가 축소되는 추세입니다.

3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간주임대료 과세 시 전월세 가격이 인상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료에 대한 과세 특례를 연장함으로써 세입자에 대한 임대료 전가 우려를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소규모 가구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바 소형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특례를 종료하는 경우 주택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해당 주택을 전세 대신 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어 소규모 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소형주택의 전세 공급 확대를 위해 특례 연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현재 월세의 경우에는 2주택 이상부터 과세를 하는 반면 전세의 경우에는 3주택 이상인 경우에도 소형주택 특례를 두어 과세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주택을 임차하더라도 전세인지 월세인지에 따라 세금부담액이 다른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소형주택을 전세로 임대하는 사람의 경우에 주택 수에 관계없이 임대소득세를 사실상 면제받고 있어 소형주택을 여러 채 보유·임대하는 고소득자의 세부담이 크게 경감되는 면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소형주택에 대한 현행 과세 특례를 폐지할 경우 소형주택 세입자 주거비 부담 증가 등으로 전월세 시장 불안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행 규정을 2년 연장하는 이런 입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말씀해 주세요.

○류성걸 위원 소형주택에 대해서 예외를 두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선의로 해석을 한다면 한 채 정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금액 자체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또 한다 하지만 그 부분은 괜찮은데 2억 이하라 하더라도 열 채, 백 채가 된다면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단순히 소형주택이라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어떤 한도를 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요즘 주택가격이 또 주택 전세나 월세나 매매 관련되는 게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차관님, 이 뒤의 38쪽의 중간쯤에 검토의견에서도 그제 나옵니다만 소형주택을 여러 채 보유·임대해서 하는 경우에도 진짜 이것을 다 해 줄 것이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지금 말씀 주신 취지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게 지금……

○류성걸 위원 차관님, 여기 우리 말장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댔을 때,

그러면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그런 부분을 저도 느끼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임대인이 아니라 임차인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게 고민되는 부분이었고요. 저희도 그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이게 임차인에 전가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형 그다음에 여기 면적기준도 있고, 그다음에 면적기준과 기준시가는 계속해서 축소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볼 때 최근의 전세 시장 불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말씀하신……

저희도 무슨 말씀 하시는지 충분히 다 이해를 하고 있고요.

○류성걸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조세 부과의 원칙·기준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어떨 때는 금액 기준으로, 과거에 어떨 때는 지금 현재 국민주택 규모라는 게 25.7평인데 그 기준으로 또 어떨 때는 한 채 두 채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이런 경우에는 소형주택이라고 하지만 여러 채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 채인 동시에 또 금액도 굉장히 많아지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아까 제가 차관님한테 좀 심한 말, 표현을 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전체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의로 본다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그마한 소형주택 한 채 정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우리는 괜찮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런데 그 범망을 피해서 악의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면 40㎡ 미만 되는 주택을, 한 1억 8000 정도, 한 1억 몇천 정도, 2억이 안 되는 조그마한 주택을 수십 채, 수백 채 가지고 있을 때도 봐주겠느냐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쭙보는 거예요.

세제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전문위원 지적하고 위원님 문제 제기해 주시는 것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고서에도 나왔다고 이제 원래 도입될 때는 85㎡였었는데 13년에 60㎡로 내렸고요 18년에 또 40㎡로 내렸습니다. 이렇게 축소시켜 오는 과정인데 아까 차관님이 말씀드렸다고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 관점도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전세시장도 좀 불안하고 많이 오른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임차인의 주거안정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이것을 지금 당장 강화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좀 천천히 해도 될 것 같……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정부도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것을 계속 줄여 오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류성걸 위원 제가 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소위원장 김영진 김수홍 위원님 말씀하시고 유경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수홍 위원 정부가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제대로 했는데 이 공급은 누가 합니까? 임대인이 하잖아요. 임대인은 또 저희들한테 불만이 많습니다. 돈도 몇 푼 없는데 정부의 정책을 따라서 임대차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합리적으로 서민들을 위해 주거를 제공하려고 했는데 정부의 정책이 그때그때 시장에 따라서 변동이 되니까 그분들은 저한테도 엄청난 비난의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류성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전적으로 맞는데 이게 어디에 중점을 두고 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또 평가를 엄청나게 달리하기 때문에 한번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 줬으면 해요.

○소위원장 김영진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할 때 토론들도 많이 했는데 양쪽 측면이다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전세시장 불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아마 해도 임차인 관점을 조금 더 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기존에 있는 제도를 연장하는 것이어서 그렇게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말씀 주신 취지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유경준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유경준 위원 이게 이렇게 된 게 원인부터 생각을 해 보시면 알 텐데 임대차 3법 통과가 되고 난 뒤에 여기에 나온 우려들이 다 생기기 시작했어요, 세입자에 대한 임대료 전가 우려. 그리고 소형 전세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 이렇게 한데 지금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할 생각이 없고 자꾸 이렇게 임시방편으로 해 나가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처음에 이것 시작할 때도 85㎡, 3억 원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소형주택의 전세 공급만 확

대하고 중 규모는 확대 안 할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안 맞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걱정을 하면 왜 소형주택 전세 공급만 확대를 해야 되고, 임대료 전가 문제를 소형주택만 생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없이 자꾸 부분적으로 이렇게 임시방편적으로만 하려 그러니까 동의하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저는 이것 반대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지금 여러 가지 상황 자체가 위원님들의 발언 취지,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취지 내용들이 공감이 되고 하는 상황이고.

또 사실은 이게 전체적인 면적에 따르는 여러 가지 전세 수요라든지 월세 수요가 다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특정 분야에 한정해서 한나라는 부분에 관한 합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가장 낮은 단위에서 전월세 시장에 있는 저소득층이라든지 주거 불안층에 관한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임대인에 대한 조건들을 우리가 처리해 주지 않으면, 임대인의 일몰을 종료해 버리면 결론은 그 상황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전가해서 임차인들의 주거 불안 요소로 있어서 지금 상황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 제가 보기엔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해 나가면서 할 수 있는데 시간을, 기회를 주고 기재부에서 다시 한번 같이 검토해서 할 수 있는 여유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일몰해 버리면 또 이 시장에 있는 임차인들의 ‘너희 뭐하나’ 이런 물음에 대해서 저희들이 답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 이것은 판단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임대인을 도와주는 법인데 결론적으로는 임차인을 위한 일몰 연장이라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고 이것은 이번 11월 말 논의 안에는 정리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좀 더 의견을 주세요.

○류성걸 위원 일단 계류하고 나중에 다시 더 검토합시다.

○소위원장 김영진 계류하고, 한 번 더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전자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입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세요.

○전문위원 정명호 39페이지입니다.

전자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입입니다. 이 제도는 2018년 12월 31일 일몰 종료된 내용

입니다. 그 관련해서 전자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를 제도입하자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2018년 12월 31일 이미 종료된 전자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를 제도입하여 2022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전자계산서를 발급·전송한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전자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계산서 중 종이 가 아닌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것을 의미합니다. 2015년부터 시행됐고요, 도입 당시에는 총 수입금액 10억 원 이상인 사업자에 대해 전자계산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관련해서 전자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전자계산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15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8년에 일몰되었습니다.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전자계산서의 의무적 발급 대상은 총 수입금액이 3억 원 이상인 사업자인데 단계적으로 금액을 낮춰서 2023년 7월부터는 총 수입금액이 1억 원 이상인 사업자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향후 의무발급 대상자 확대 계획 등으로 인해 업무 부담이 증가하는 사업주들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입법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세액공제의 구체적인 공제액 및 공제한도를 모두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소득·세액공제에 있어서 공제금액과 공제한도는 가장 본질적인 사항으로서 많은 공제제도는 금액 및 한도를 법률에서 직접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제한도에 대해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취지 및 예측 가능성 제고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43페이지는 소득세법에 대한 수정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을 확대하면서 결국 이렇게 되면 납세자들이 협력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해서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자 그런 것이고요.

전자계산서 발급 확대는 실시간 소득 파악 이런 것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말씀 주신 것 관련해서 어디다 무엇을 올려야 되느냐인데 지금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 입법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대로 옮겼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현행대로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바람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준 위원님.

○유경준 위원 좋은 취지고 필요한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 질문이 왜 2022년 7월 1일부터예요? 2021년 1월 1일부터 하면 이게 바로 적용하기가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지금 이미 시행령이 개정돼서요, 22년 7월부터 3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내려갔고요.

○유경준 위원 아니, 시행을 제도입하여 2022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이렇게 기간이 확정돼 있어서 2021년 1월 1일부터 하면 왜 안 되냐고 질문드리는 겁니다. 다른 입법이 있어요?

○기획재정부제실장 김태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지금 3억 원 이상입니다. 그런데 22년 7월부터 2억 원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22년 7월부터 2억 원짜리도 이제 대상이 되니 그때부터는 좀 해 주자 그런 뜻입니다.

○유경준 위원 예, 그러시지요.

그리고 여기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금액을 확정하자 그러는데 그것은 그냥 받아들여도 될 것 같은데 받아들이시지요, 금액 한정된 것.

○기획재정부제실장 김태주 그것은 아까 차관이 설명을 드렸습시다만 이게 종전 입법례에 따른 것이고요. 그다음에 조세법률주의 차원에서 법률로 다 올리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그래든 너무 지저분해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법률이?

○유경준 위원 법률에 따르자는데 지저분한 것하고 무슨 상관인가요?

○기획재정부제실장 김태주 그래서 이것은 기존 입법례에 따라서……

○소위원장 김영진 정일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일영 위원 그러니까 2018년에 일몰된 것을 조금 조정해서 살리겠다, 쉽게 얘기하면 이 뜻입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예.

○정일영 위원 그러면 그때 판단이 잘못된 거네요?

○기획재정부제실장 김태주 제도 목적이 달성이 됐는데……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그때는 초창기에, 2015년도에 제도를 도입하면서 약간 인센티브를 줬는데 어느 정도 안착이 됐기 때문에 2018년까지 해서 인센티브는 그 정도면 종료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고요. 지금 다시 기준을 내리니까 사실 그 계층들은 조금 부담이 될 수가 있거든요.

○소위원장 김영진 제가 보기에 지금 이게 또……

○정일영 위원 잠깐만요, 제가 마무리하고.

그리고 전문위원님 부탁이 있는데, 검토의견에 ‘다만’ 붙여 가지고 머리 아프게 만드는데 ‘다만’ 해서 이렇게 하려면 대안도 여기다 만들어 넣어 봐요.

○전문위원 정명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정일영 위원 어디 있어?

○김수흥 위원 100만 원.

○정일영 위원 100만 원으로 한다?

○김수흥 위원 예.

○전문위원 정명호 법률에 직접 규정하자는 내용입니다.

○정일영 위원 법률에?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한다’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경우 공제한도는 연간 100만 원으로 한다’?

○전문위원 정명호 예.

○정일영 위원 전문위원이 볼 때는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전문위원 정명호 그러니까 지금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경우도 있고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42페이지 하단의 주 26을 보시면 근로소득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 이런 경우에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러면 정부 측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부제실장 김태주 그런데 발급 건당 100원 200원 이렇게 하게 될 건데요, 100원 200

원 이것을 법률에 꼭 규정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시행령에서 예를 들어서 나중에……

○전문위원 정명호 아닙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건당이 아니고 공제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정일영 위원 연간 한 100만 원이라는 얘기인데요?

○김수흥 위원 그것만 받아 주세요. 수용해요.

○정일영 위원 수용?

○김수흥 위원 예.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간 한도 부분은 법률에 규정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100만 원으로 수용한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예, 그것을 원래 시행령에서 담으려고, 좀 탄력적으로 하려 그랬는데 법률에……

○소위원장 김영진 전문위원님, 그런데 100만 원의 한도 기준은 됩니까?

○전문위원 정명호 종전 한도입니다. 일몰되기 전 한도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일몰 전 한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시지요, 그러면 이것은 한시적으로 3년간 기준 금액을 3억에서 2억으로 낮춰서 전자계산서에……

○유경준 위원 잠깐만, 아까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법률에 규정하라 그랬는데 시행령으로 두는 것은, 지금 한시적으로 하는데 그사이에 또 100만 원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100만 원 금액을 바꾸겠다는 것 아니면 그냥 법률에 규정하지 왜 자꾸 시행령으로 하시려고 그래요?

○기획재정부제실장 김태주 예, 법률로 규정하겠습니다.

○유경준 위원 그러니까 2년 하고 말 건데 그것을……

○소위원장 김영진 제가 보기에 지금 얘기한 정도로 조정을 해서 진행하지요. 왜냐하면 한시법으로 3년간 전자세금계산서 한도를 내려서 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합의로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류성걸 위원 말씀 마치고 전에, 2018년도에 일몰될 때 그러면 금액을 더 이상 추가, 그러니까 전자세금계산서 금액 자체를 낮추겠다 이런 생각이 없었던 겁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당시로서는 전자세금계산서에 인센티브를 줬었는데 입법 목적을 달성했다.

○**류성걸 위원** 입법 목적이라는 게 도입하는 자체를 입법 목적이라 하면 맞는 건데 금액을 낮춰서 점점 더 범위를 넓히는 생각이 없었느냐 이런 말씀이요.

그러면 다음에 2024년까지 일몰했다가, 1억 원 이상이라 했다가 전부 다 하면 또 하겠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저희들이 하다 보면 사실은 전부 다 100% 전자계산서를 하는 게 제일……

○**류성걸 위원** 나는 그래서 말씀이 뭐냐 하면 전자세금계산서라는 게 기본적으로 가야 될 방향 아니겠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예, 그렇습니다.

○**류성걸 위원** 그러면 당초에, 처음에 2018년도에 일몰했던 게 잘못됐던 것이고 그러면 이것 했다가 얼마 정도 지나고 또 하면 또 도입하겠다는 취지밖에 더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사실 당연한 거예요, 100원이 되든지 200원이 되든지.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홍보도 하고 또 필요성에 대해서도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에 또 이렇게 전체 다 한다고 해가지고 죽었던 일몰을 다시 살리는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소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주셨던 말씀은 이후 3년 후에 판단해서 바로 연이어서 사실은 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끔, 지속 가능하게끔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합의 조정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3항 기부금 특별세액공제율의 상향 부분 관련해서 정부안과 송언석 의원안을 검토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호** 44페이지입니다.

기부금 특별세액공제율 상향과 관련된 정부안과 송언석 의원안입니다.

현행 제59조의4제4항에서는 기부금 특별세액공제와 관련하여 공제대상, 공제한도, 공제율을 규정하고 있는데 2건의 개정안은 공제율을 상향하자는 부분입니다.

송언석 의원안은 10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도 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자는 것이고 정부안의 경우에는 2021년 한 해 동안 기부하는 금액에

한하여 현행보다 각각 5%씩 상향하자는 의견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제도는 2013년 세법 개정으로 도입되어서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된 이후 고액기부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되어 왔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최근 기부금 실적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기부 참여율은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4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건의 개정안은 공통적으로 최근의 기부 참여율 하락 추세, 다른 국가 대비 저조한 현행의 세제혜택 등을 감안할 때 입법 필요성은 인정되는 면이 있습니다.

다만 공제율 상향과 기부금 실적의 인과관계가 불명확한 면이 있고요.

송언석 의원안의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00만 원 초과분과 동일하게 하는 경우에 고액기부의 세제상 유리함이 사라져 고액기부 장려 효과가 상실될 수 있다는 기획재정부 의견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안과 관련해서는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는 시기가 통상 12월 초임을 감안할 때 결국 세액공제율 상향 확정 후 기부할 수 있는 기간은 한 달 이내인바 전체 국민들의 제도변화 인식 및 이를 통한 기부문화 확산을 도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지금 코로나로 모든 분들이 어렵고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나눔문화를 좀 더 확산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금년에 한해서 세액공제율을 5%p 상향하자고 했고요.

이것은 사실 우리가 연초에 설 민생대책 그다음에 경제정책 방향, 세법 개정안, 추석 민생안정대책에서 ‘나눔시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홍보를 해 왔고요. 그래서 이것은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고요.

다만 송언석 의원님께서 주신 안은 이렇게 되면 세수감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같은 경우는 마음 같아서는 계속 해 줬으면 좋겠지만 재정 여력까지 보면 금년의 특별한 사정을 봐서 금년에 한해서 한정적으로

해 드리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걸 위원 차관님, 설 민생대책이 언제 발표됐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2월 말입니다.

○류성걸 위원 2월 말이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류성걸 위원 그런데 2월 말에 발표돼 가지고…… 좀 제가 표현을 강하게, 거칠게 하겠습니까. 온 동네에 홍보 다 해 놓고, 온 동네에 마치고 금방 뭐가 되는 것처럼 해 놓고, 법안 이렇게 해 가지고 내놓고 이제 며칠 뒤에 금년도분 하겠다, 이게 지금 뭐하는 겁니까?

그렇게 하면 바로…… 세법이 꼭 몰아 가지고 11월 달에, 12월 달에 하는 것도 아니고 필요하면 미리 해서 할 수도 있는 건데 몰아 가지고 말이지, 좀 속된 표현으로 온 데 전부 다 해 놓고 이제 와 가지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이야기 드릴게요.

첫 번째, 기부금 세액공제 상향 시에 기부금에 미치는 영향 이것 분석 한번 해 봤어요? 그것도 없이 그냥 내질러 놔 놓고……

이게 우리 경제학적으로 기부금 관련된 임피리컬 스터디(empirical study)들이 굉장히 많아요. 관계 없다는 거예요. 거의 유의미한, 진짜 말하여 시그니피컨트(significant)한 결과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왜? 기부금을 내는 사람은 자기 만족이나 또는 다른 동기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세액공제 몇 푼 해 준다고, 이것 지금 해 봐야 몇 푼 되겠어요? 표현을 제가 좀 거칠게 해서 죄송하지만 이것 때문에 기부금 막 늘어나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없이 그냥 내질러 보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되는 사항들은 앞으로 세제실에서 이런 형태의 금액을 상향하고 또는 일몰을 연장하고 또는 일몰을 더 상시적으로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경제적 효과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2월 달에 설 민생대책에 대해서 했다고 하면 그때 바로 세법 개정안 내 갖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데 실컷 있다가 연말에 해 갖고 며칠 하겠어요? 이것 소급적용할 겁니까, 실장님?

앞으로 소급적용 없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무슨, 입법부가 무슨 통법부도 아니고 관련되는 것

전부 다 하자는 대로 해 갖고 소급적용하면 소급 적용하고 앞으로 하자고 하면 앞으로 하고 몇 월 며칠날 하자고 하면 몇 월 며칠날 하고, 이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해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세제실장님 말씀하시고 정일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지금 기부금과 기부금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만족이라든가 심리적 동기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아마 기부문화가 어떤 사회별로, 사회마다 기부문화가 다를 텐데 그런 기부문화 또 기부를 했을 때 누군가 네이밍해 줬을 때 느끼는 프라이드 또 포상·격려 여러 가지들, 자기 만족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데요. 물론 크지는 않겠지만 금전적인 세제혜택도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나눔문화 확산에는 다각적인 노력들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을 왜 연초에 했냐 하면 작년 말에 코로나 때문에 구세군 냄비도 줄어들고 기부문화가 막 엄청나게 축소된다고 해 가지고 코로나19로 인한 기부 축소에 긴급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소급입법이 아닐 수 있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법을 개정하면 올해 기부한 것에 대한 세액공제는 내년 신고할 때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은 소급입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일영 위원님.

○정일영 위원 차관님, 어쨌든 이것 올해 초 설맞이 민생안정대책으로 발표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예.

○정일영 위원 그리고 국민들이 그렇게 믿고 있고.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예.

○정일영 위원 그리고 이것을 개정해야 국민들의 믿음이, 정부에 대한 신뢰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예, 그렇습니다.

○정일영 위원 저는 그러니까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정부안하고 송언석 의원안 차이는 정부안은 현

행에서 플러스 5%p씩만 금년 기부금, 코로나 이런 걸로 어려운 상황이니까 금년에 한해서 올려 주자……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예.

○정일영 위원 그리고 송언석 의원안은 금액에 관계없이 30%를 올해 내년 할 것 없이 아예 그냥 짝 바꿔 버리자 이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예, 맞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저는 정부안이 괜찮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박형수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박형수 위원 입법의 목적이 무엇인지, 타깃이 뭔지가 불명확한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 기부하고 큰 관련이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한시적으로 기부금이 줄고 그래서 기부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차원이라면 공제율을 상향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리고 공제율 상향도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해야지 효과가 있는 거고, 만약에 기부한 사람에 대한 혜택을 주겠다 이런 취지라면 올해 분에 대해서 기부한 사람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그래서 한시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것 어느 쪽이 입법 목적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뭘 보고 지금, 정부안은 일단 한시적으로 하는 게 어떤 데 주안점을 두고 이것을 상향하려고 하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지금 현행 제도가 1000만 원 이하가 15%, 1000만 원 초과분은 30%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 연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기부를 하십시오 해서 각각 5%p씩 상향을 해 드렸고요. 말씀하신 대로 더 많이 해 주면 더 효과는 클 수 있겠지만 이게 결국은 세수감 효과가 굉장히 큼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 정도로 하는 게 적정하겠나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박형수 위원 다른 데는 다 세수감소 효과가 있더라도 그것을 한다고 하면서 기부를 활성화해서 어려운 사람한테 더 많이 도와주는 이것은 세수감소 때문에 안 된다? 논리가 이상한데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적정 수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다익선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재정의 여력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느 정도로 하는 게 제일 낫겠냐 봐서 저희들이 현행 있는 퍼센티지에서 5%p 정도 이렇게……

○박형수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한번 물어봅시다.

외국의 경우는 이게 어느 정도 돼요? 외국 사례 한번 분석해 봤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4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박형수 위원 소액의 경우 15밖에 안 나오네?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소위원장 김영진 47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박형수 위원 상단에?

○소위원장 김영진 예.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이 제도가 원래는 기부금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 주는 제도였습니다, 2013년 이전까지는. 그런데 소득공제를 해 주다 보니까 한계세율이 높은 고소득자일수록 혜택을 많이 받기 때문에 세액공제체도로 바꾼 다음에, 그러면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고소득자들 혜택이 줄어드니 고소득자에 대해서만 세율을 조금 더, 기부를 많이 하는 분들에 대해서 공제율을 조금 더 올려서 그렇게 해 준 겁니다, 지금.

○류성걸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김영진 류성걸 간사님.

○류성걸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차관님 또 실장님 말씀하셨던 기부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은 이렇게 세액공제를 해 주는 것은 기부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 필요조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부 정책이 물론 충분조건까지 다 맞춰서 할 수 없지만 그중의 1개밖에 안 되는 것으로서 그것을 한번 보시고요.

또 이렇게 됐을 때 기부했을 때 늘어나는 기부금하고 또 여기에 나오는 세액공제했던 전체 금액하고 그다음에 기부한 것 중에서 당연히 이게 없어도 기부했을 거라는, 말하여 자연 뺄 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했을 때 사중손실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처음에 말씀드렸던 필요조건에 의한다면 마치 이것에 의해서 기부가 늘어나는 걸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의한 게 아닌 경우는 말하여 가만히 있어도 기부할 것을 마치 이것을 돈을 넣어서 기부한 것처럼 하는 것을 사중손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기부를 독려해 갖고 금액을 이렇게 넣어서 하는 것보다는 이 세금을 받아서 기부금액이 필요한 데다가 나눠 주는 게 오히려 더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엄밀한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한 개 들게요.

작년도에 제1차 재난지원금 14조 3000억 지원 했어요. 그때 정부에서 기부할 게 굉장히 많은 것처럼 해 갖고 법까지 고쳤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품 받을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법 고쳐 갖고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 받도록 그렇게 고쳤지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익원 ……

○류성걸 위원 고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코로나 14조 3000억 중에서 실제로 지원금 안 받은 전체 비율이 1.79%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일부 또는 전체를 기부한 비율은 0.2%밖에 안 돼요.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현금 주면 전부 다 받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는 게 기부를 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기분 나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마치 이것을 올려 주면 기부하고 이것 안 올려 주면 기부 안 하고. 그래서 이것은 엄밀하게 분석을 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소득공제하고 세액공제, 예를 들어서 기부를 활성화한다면 소득공제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기부를 더 많이 할 것 아닙니까, 만일 그런 논리라면? 당연하지요. 기부하는 사람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논리라면 소득공제를 해 줘야 많은 금액을 고소득자가 할 건데 실제로 고소득자뿐만 아니라 저소득자도 기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생각해야 되지 단순히 기계적으로 필요조건만 생각해 갖고 마치 지금 현재 15%에서 5% 정도 올려 주면 기부가 활성화돼서 많이 늘어나겠다 또는 30% 돼 있는 것을 5%p 더 올려 가면 하겠다 이런 기계적인 생각은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분석적으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분석을 해 보세요. 그래 갖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입증 못 하는 상황에서 마치 이렇게 해 갖고 5%p 높여 줬으니까 기부가 활성화되겠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약간의 서로 의견이 있는데 그래도 찬성하시는 거지요, 간사님? 2021년, 왜냐하면 이게 제도개선 해 나가고……

○류성걸 위원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제가 아까

도 말씀드렸듯이 국민들에 대해서 아까 솔직히 이야기해서 2월 달에 했으면 2월 달에 바로 세법 개정안을 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실제로 내질러 놔 놓고, 책임 없이 무책임하게 내질러 놔 놓고 그냥 나중에 국회에서 아까 이야기대로 소급입법이 아니라…… 그럼 됩니까? 소급입법 아니면 됩니까,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 갖고 당연히 해 주는 걸로 생각하고 또는 그렇게 하면 기부가 늘어날 걸로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때 발표할 때 발표하면서 바로 세법 개정안을 내서 그때 처리해 갖고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소위원장 김영진 앞으로 이런 것 관련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기재부에서도 해당 시점에 정책을 발표할 때 정책발표와 더불어 해당되는 법안 개정 사안이나 이런 부분들 하는 것을 의견을 달아서, 이것은 연초에 진행을 한 사안이기 때문에 같이 합의 조정해서 처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재부에서 이후에, 류성걸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기재위의 조세소위가 마치 그냥 연말에 한 번에 정기국회 전에 한 달 동안 다 한 다라고 딱 정해 놓기보다는 해당 법률안이 있을 때는 저는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합의 조정 처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그것을 엄밀하게 하려면 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정부에서 발표해야지, 법도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미리 발표하는 그것 자체가 안 맞는 거지, 그러면.

○소위원장 김영진 여러 가지 참조해서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항 검토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호 자료 5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실신고 확인서의 미제출 가산세 부과기준에 총수입금액을 추가하는 정부안입니다.

현재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혜택도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기한 내에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현행법 같은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사업소득의 비중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를 가산세로 추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산출세액이 없으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개정안은 그 부분을

추가하는 내용이고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도 동일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51페이지 하단의 그림을 보시면 일반사업자는 5월 말까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고요,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와 같은 경우에는 5월 말이 아닌 6월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추가하여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52페이지 보시면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에 하단 주 44, 45처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공제 및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이러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행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검토의견의 표에 보시는 것처럼 현행 같은 경우에는 산출세액이 없으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개정안에서 이 부분을 보완하는 내용인데요.

다음 53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해야 되느냐는 문제인데요.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 자체가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만 있는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때문에 산출세액 유무에 관계없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가 인정됩니다.

다음 가산세 세율의 적정성과 관련인데요, 사업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가산세가 1만분의 7인데 이 개정안은 1만분의 2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하고 그다음에 성실신고확인서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익원 성실신고확인서 같은 경우는 가산세를 부과해서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건데요, 그런데 산출세액에 근거해서 가산세를 매기다 보니까 세금을 낼 게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움직일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산출세액이 없더라도 수입금액은 당연히 나오기 때문에 수입금액에 대해서 가산세를 매기는데 대신 산출세액에 상응하

는 정도, 그 정도 비례적으로 해서 수입금액에 대해서 가산세를 매기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걸 위원 차관님, 가산세가 영어로 뭐지요? 서택스(surtax)라고 합니까? 그것은 부가세고.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익원 예,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부가세.

○류성걸 위원 그러면 가산세가 뭐지요?

왜 제가 여쭙보느냐 하면 가산금과 가산세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지방세에만 가산금이 있고 국세에는 가산세가 없어졌어요, 그렇지요?

실장님, 가산금이 없어졌지요, 국세에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다 통합을 했습니다.

○류성걸 위원 가산금이 없어지고 전부 가산세가 되었는데 논리적으로 보면 본세가 없는데…… 물론 가산금의 경우에는 좀 달라요, 그렇지요? 본세가 없는데 가산세가 있다. 그것 한 개하고.

또 두 번째는, 물론 다른 기준에 그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0.02%라는 게 0.02가 아니고 0.03이 되었을 때의 맥스 2개 해서 더 큰 금액한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주십시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지금 성실신고 불성실가산세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성실신고를 하게 하는 이유 자체가 가공경비를 계상해서 비용을 높이거나 매출을 축소시켜서 이윤을 줄이거나 이랬을 경우에 이윤이 제로가, 과세소득이 제로가 되는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꼭 본세가 없더라도 가산세가 수입금액 대비로는 매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0.02로 결정한 것은 신고 자체를 안했을 때 가산세 매기는 게 산출세액의 20%, 수입금액의 0.07%입니다. 그러니까 성실신고 같은 경우 지금 산출세액의 5%, 4분의 1로 돼 있거든요. 무신고보다는 약하게 돼 있으니까 수입금액 기준도 0.07의 약 4분의 1 정도 수준으로 하는 게 적절하다고 본 겁니다.

○류성걸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가산금이냐, 지금 가산금은 국세에 없어졌지만 가산금이

나 가산세를 부과하는 기본취지가 세금을 성실하게 또는 세금 내기 위해서 성실하게 신고하고 또 기한도 지키고 허위로 하지 않고 또 관련되는 사항을, 규정을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한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세금 자체가 없는데 가산세를 부과하고 또 납부를 하도록 한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그런데 그 세금 자체가 없을 수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성실신고를 안 했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공경비나 매출 축소 같은 게 있거든요.

○류성걸 위원 그러면 그 경우라면,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신 경우는 논리적으로 보면 성실신고를 강화하기 위해서 가산세를 매기는데 해 봤더니만 결과적으로 본세가 없더라, 그런 경우는 가산세 취소하겠어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그래서 수입금액 기준으로 매기겠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류성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입금액 기준으로 매기는 게 아니라 세금 자체가 없는 경우에 논리적으로 보면,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가산세 열심히 잘, 허위 또는 기간을 넘기지 말고 허위 신고하지 말고 하라는데 해 봤더니만 다 했는데 불구하고 부과할 세금이 없더라라고 하는 경우는 가산세 취소하겠어요? 논리적으로 그렇죠?

예를 들어 그게 있는 경우라면 가산세를 매기면 괜찮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과할 세금이 없더라, 그러면 논리적으로 가산세 물리지 않아야 되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위원님, 제가 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신고 같은 경우도, 신고를 아예 안 했을 경우에도 가산세를 매기고 있는데요, 그때도 두 가지 방식을 다 염두에 두고 하고 있습니다, 산출세액에 대한 가산세, 수입금액에 대한 가산세. 그러니까 다른 무신고의 경우에도 세액이 없더라도 결국은 가산할 수 있다. 그래서 수입금액에 대한 제도가 좀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 세금이 없는데 뭘 가산세냐 그러는데 제도라는 게 결국 우리가 보면 세금이 마이너스가 나도 제대로 파악이 돼야 그래야 상대방이나 여러 가지 거래관계가 잘 포착이 되는 경우도 있고 마이너스가 자꾸 축적이 돼야 그래야 진짜로 어떻게 보면

소득과약이 확실하게 오랜 경우에 걸쳐서 될 수도 있고, 그런 취지에서는 약간, 말씀하신 취지는 뭔지 알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실효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른 예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성걸 위원 이해를 못 하겠어요.

○소위원장 김영진 52페이지 표 관련해서 그게 예로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논지가 산출세액이 있는, 그러니까 총수입금액이 있고 산출세액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예시를 해서 적용례를 했는데 이게 그 말씀하신 것의 취지를 정리해 놓은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총수입금액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그에 따라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명확하게 총수입금액이 있기 때문에 타당하다라는 견지로, 나중에 가다 보면 개정안은 비슷한 금액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의견 주시고.

이것은 정비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의견 한 번 더 주시고 이것은 마무리했다면 좋겠는데요. 길게 얘기할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김수흥 위원 저는 정부 측 의견이 맞다고 봅니다.

왜 그러나 하면 여기 표에도 있지만 수입금은 잡혔는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라도 성실신고의무를 부과했기 때문에 정부의 제도 보완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정일영 위원 저도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그러면서 세액이 없기 때문에 산출세액은 아주…… 조정은 해 주는 것 같아요.

○김수흥 위원 성실신고를 안 해 버리면, 수입은 있는데……

○류성걸 위원 이것은 조금 더……

○소위원장 김영진 조금 더, 한 번 더 논의요?

○류성걸 위원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합시다.

○소위원장 김영진 예, 다 한 번 더 논의해서 결정을 하는 데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걸 위원 조금 더 논의.

○소위원장 김영진 예.

그러면 5번 중간예납의 소액 부정수 기준금액 상향 관련해서 검토의견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명호 55페이지입니다.

중간예납의 소액 부정수 기준금액 상향 관련 정부안입니다.

개정안은 소득세 중간예납의 소액 부정수 기준을 현행 30만 원 미만에서 50만 원 미만으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소득세 중간예납제도는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당 연도의 상반기 기간에 대해 직전 연도에 납부한 종합소득세 금액의 50%를 11월 말까지 납부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동 제도의 목적은 납세자 입장에서는 과세기간 종료 전에 세액을 미리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고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고지서 발급비용이 소요되는 등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일정액 미만에 대해서는 징수하지 않는 소액 부정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중간예납 소액 부정수 금액기준 변화 추이가 하단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4년에 현행과 같은 3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영세사업자들 어려움 가중, 다른 국가 대비 낮은 현행의 소액 부정수 기준액 등을 고려할 때 입법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개정안 입법 시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중간예납 소액 부정수 기준액과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인세의 경우에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간예납제도를 두고 있는데 그 소액 부정수 기준액은 현행 소득세의 경우와 동일하게 3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소액 부정수 기준금액이나 중간예납 분할납부 기준금액 등 소득세와 법인세의 부과·납부 체계가 동일하게 규율돼 있고, 개정안에 따른 경우 법인이 아닌 사업자를 법인인 사업자보다 우대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 세 번째 법인세 중간예납의 소액 부정수는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바 코로나19로 인해 영세한 중소기업에 대한 중간예납 부담 역시 경감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인세에 대해서도 소액 부정수 기준액을 50만 원으로 상향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59페이지 법인세에 대한 수정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먼저 코로나19 때문에 영세자영업자들 어려우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납세편의를 제고하고 또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되면 고지서 발급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납세행정 비용도 있기 때문에 그걸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현행 부정수 기준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하는 그런 입법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걸 위원 이것 나중에 중간예납이 아니고 내년 5월 달에는 전부 다 받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확정신고할 때 다……

○류성걸 위원 확정신고할 때 다 하는 거니까 그것은 괜찮다고 보고요.

이것하고 직접 관련 없지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이야기가 나왔으니깐, 지난번에 예결위에서도 이야기 나왔고 또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도 이야기 나왔고 한테, 납부유예 이번에 좀 했습니까?

국세청에서 오신 분, 혹시 아시나요?

○국세청개인납세국장 김태호 예, 유예했습니다.

○류성걸 위원 일괄적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국세기본법 제6조와 국세징수법 제13조, 14조에 따른 그 요건 충족 때만 한 겁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한 겁니까?

○국세청개인납세국장 김태호 요건에 맞는 납세자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다 한 것은 아니고요, 성실신고확인대상 이하 영세사업자들 그리고 손실보상하고 영업제한 대상 사업자들, 그다음에 착한임대인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해서 유예를 했습니다.

○류성걸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세기본법 제6조와 국세징수법 제13조, 14조에 해당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만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국세청개인납세국장 김태호 예, 요건에 맞춰서 했습니다.

○류성걸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어차피 나중에 5월 달에, 내년 다음 해 5월 달에 확정신고 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운 상황에서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김수홍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홍 위원 다른 것은 다 됐고요.

전문위원이 제기한 의견, 소득세 말고 법인세에 대해서도 소액 부정수 기준을 상향하자 하는 것을 수용합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이게 법인세랑 소득세랑 반드시…… 물론 비슷한 것 맞는데요, 반드시 같이 가야 되는 것은 아닌 게 이게 원래는 소득세에만 있던 제도입니다. 이것 소득세는 옛날부터 있었는데 법인세에 들어온 것은 2019년에 처음 신설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다른 제도였었는데 2019년……

○김수홍 위원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되고, 또?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소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추가의견 관련해서는 정부 원안대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이 사안들은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여기까지만 합의하는 것으로 여야 간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구성원인 비거주자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대리신고 허용 관련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호 60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구성원인 비거주자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대리신고 허용 관련되는 정부안입니다.

지금 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구성원인 비거주자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 대리 신고를 허용하겠다는 건데요. 현재 소득세 납부 의무는 거주자하고 비거주자로서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이 하고 있고요.

다음 61페이지 보시면 다만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면서 법인이 아닌 단체는 원칙적으로 단체 자체가 소득세 납부 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해당 단체의 구성원별로 이익의 분배율이 정해져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단체의 구성원별로 납세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표에서 보시면 오른쪽 하단에 해당 단체의 구성원별로 소득세 납부 의무를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을 일정한 요건하에 대리 납부를 가능하도록 하자는 게 개정안 내용입니다.

62페이지 보시면요 개정안 부분에 대해서는 납

세의무가 있는 비거주자 단체구성원이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이 있고 이를 신고하려는 경우에 한하여는 구성원의 동의하에 본인의 납세자번호를 제출하는 경우에 해당 단체의 거주자인 구성원 1인이—대표신고자입니다—종합소득과세표준의 신고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납세의무가 있는 비거주자 단체구성원이 각자 해야 할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를 국내원천 인적용역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거주자인 대표신고자가 대신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해당 비거주자 구성원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입법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개정안 내용은 이게 실제적인 납세의무나 세액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신고 그 자체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것에 불과하고요. 그다음에 납세의무가 있는 비거주자 구성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요건을 한정했구요.

그다음에 비거주자들 본인의 납세자번호도 제출해야 되고 그래서 국세청이 잘 파악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원천 인적용역 소득으로 대상이 되는 소득 해서 소득의 종류도 한정했고 그래서 결국은 잘 컨트롤이 되면서 그냥 신고의 편의성만 제고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영 위원 이견 없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소위원장 김영진 특별한 사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견이 없으므로 이 사안은 통과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납세조합 세액공제의 한도 신설, 정부안이고요.

이것 하기 전에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8번 안에 대해서는 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원장과 김윙희 팀장이 와서 의견 요청이 있어서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7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호 64페이지입니다.

납세조합 세액공제 한도 신설 관련입니다.

현재 납세조합 공제 제도는 제150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공제 대상은 두 가지입니다.

사업자……

○박형수 위원 합의된 거예요?

○류성걸 위원 했다는데……

○유경준 위원 의견 듣는 것 얘기한 적이 없는데, 한 번도?

○소위원장 김영진 8번입니다. 지금은 7번입니다. 예고해 드린 겁니다.

○유경준 위원 8번 의견 듣는 것 얘기 안 했잖아요?

○소위원장 김영진 7번 얘기해 주세요.

○유경준 위원 8번의 그것을 언제 합의해 주신 적 있어요? 예고해 준 적 없어요. 예고해 준 적도 없고 합의해 준 적도 없다고요.

○소위원장 김영진 아니, 아까 회의 참석 명단에 같이 드린 건데, 세무사회 의견을 듣는 겁니다.

○유경준 위원 아니, 듣고 안 듣고 간에 합의된 적도 없고 의견 나눈 적도 없는데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소위원장 김영진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 회의 운영 관련해서는……

○유경준 위원 저는 지금 내용이 뭔지도 몰라요. 내용이 뭔지도 모르겠는데, 합의한 적도 없고 의견 나눈 적도 없는데 소위원장께서 통보하시면 그것은 좀 곤란하다는 말씀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한번 간사님 검토, 그래서 검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검토 요청 드린 겁니다.

○류성걸 위원 나는 처음 듣는 소리야.

○유경준 위원 그것은 다시 논의하시지요. 이것은 지금 할 건 아닙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간사님 검토해 주시고요.

계속해 주세요.

○전문위원 정명호 공제 대상은 사업자 납세조합과 근로자 납세조합이 있는데 공제 내용은 납세조합이 징수한 소득세의 5% 세액공제를 하는 내용입니다.

6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납세조합은 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징수가 곤란한 국외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와—이게 첫 번째 부분이고요—두 번째, 농축수산물 판매업자,

노점상인 등과 같은 영세사업자가 각각 조직할 수 있는 조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66페이지입니다.

납세조합 공제에 대해 100만 원의 세액공제 한도액을 신설하려는 개정안의 경우에 고소득층에 공제혜택 집중 방지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총급여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근로자 납세조합 전체의 공제액 48억 원의 대부분, 82%를 차지하고 있는 면이 있고요.

다음 두 번째, 제도 유지 필요성 저하에 따른 공제 축소 필요성입니다.

이 제도는 54년도에 도입되었는데 현재는 국외 근로소득자 및 영세사업자에 대하여 소득과약 여건이 개선되어 그 존속 필요성이 과거에 비해 낮아져서 제도의 점진적 축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요.

다만 이렇게 했을 때 감안할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한도 설정 시에 고소득 근로자 및 사업자가 소득을 은폐·축소하는 등을 통해 세금을 회피할 유인이 커지게 되어 납세조합 조합원의 조합 이탈 가능성이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세액공제 축소로 성실납세 유인이 감소하는 경우 조세 회피 등의 방지를 위한 추가적인 과세 인프라 구축 등 징세비용 부담이 일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납세조합의 경우에는 지금 세액공제 해 주고 있는 인센티브 제도가 있는데요. 지금 세액의 5%를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한도가 없습니다. 한도가 없기 때문에 조합원 1인당 꽤 많은 걸 가져갈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보니까 결국 고소득자들이 많이 가져가시기 때문에 이게 한도 캡을 씌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연간 100만 원의 공제한도, 다른 공제 제도랑 볼 때 한 100만 원 정도면 유사할 것 같아서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납세조합 제도는 예전에 54년에 도입해서 사실 그때 국세가 인프라가 미비했을 때 보완적으로 해 주었던 제도인데 과세 인프라가 확대된든지 세원 양성화 노력 이런 것들이, 세원 포착 여건이 개선됐고 자칫 이런 것들이 세금 회피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점이 있어서 고소득

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조정하자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김수흥 위원** 이런 제도가 외국에도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외국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있었다가 없어졌고 저희도 54년에 만들어졌다가 조금조금씩 축소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정일영 위원** 설명 들어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그러면 아예 없애 버리지 그래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그런데 이게 납세조합을 통해서 걷는 세수가 연간 한 1400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게 여기 사업자 납세조합하고 근로자 납세조합 두 가지가 있는데 사업자는 노점상이나 농축산물 판매업자 이런 분들이니까 여기서 나오는 세수는 별로 안 되는데 근로자 납세조합이라고 그래서 외국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 받는 사람들이 내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크거든요.

○**정일영 위원** 그것을 직접 과세관청에서 하면 되잖아요. 부작용이 있다면서 고소득자들을 그렇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그런데 이런 편의를 주니까, 외국인이나 외국에서 원천징수를 해야 되는데 원천징수 안 하는데 그것 너무 복잡하고 귀찮으니까, 몇 년에 한 번씩 있는 일인데, 1년에 한 번 정도 있는 일인데 편리하게 신고 납부해 주게 하는 제도입니다.

○**정일영 위원** 좀 이해가 안 가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결국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들이 국내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 외국 기관이나 외국법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찾아가서 우리가 파악하려면 할 수 있는데 그 코스트가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원천징수한 자료제출 의무를 자기들이 대신 저서 이렇습니다 하고 보내 주면 우리가 보기에는 납세, 징수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적절히 조절해 가면서 오히려 그렇게 파악하는 게 더 낫겠다 이런 건데, 말씀해 주신 대로 점진적으로는 줄여 가야 되는 방향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정일영 위원** 줄여 가야 될 것 같아.

○**박형수 위원** 이런 납세조합이 몇 개나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장 장영규** 지금 53개가

있습니다.

○**박형수 위원** 53개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이 53개에 대한 납세조합의 명단하고 세수하고 이런 걸 제출해 줘 가지고 우리가 좀 더 검토를 해 보고, 진짜 이것 나도 처음 들어 보는 애기인데 이게 폐지할 필요가 있는지 좀 검토를 해 보고 또 존속해야 된다면 왜 존속해야 되는지를 들어 보고 그래서 결정해야 될 것 같네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위원님, 납세조합별 과세 정보는 저희가 국세청으로부터 받기 어려운 자료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형수 위원** 명칭을 안 하면 될 것 아니에요. 납세조합의 조합 명칭을 빼고 몇 개가 있고 어떤 유형의 사업을 하는 업체인데 어느 정도 납부를 했다 이 정도로 가공하면 되지. 그렇게 하면 받을 수 있지요.

○**김수흥 위원** 주로 국세청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가서 조합 설립합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아니요, 세무사나 아니면 대표자 이런 사람 한 사람 고용해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일영 위원** 어쨌든 공제 한도는 필요하겠네요. 이게 납세조합이 1년에……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면요 여기 국내에 자회사가 있고요 외국에 모회사가 있는데 외국 모회사에서 스톡옵션이나 상여금 같은 걸 많이 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외국에서 주기 때문에 원천징수를 외국 법인이 해야 되는데—우리는 할 수가 없으니까요—그런데 이 사람들이 세금을 납부해야 되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이 소득이 1.4억 정도가 되면 지금 세액공제하는 게 100만 원 이 한도에 걸려요. 소득이 1.4억이 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한도를 캡을 씌워 가지고 과도한 조세 혜택을 방지하자는 거고요.

예를 들어 5억을 받았다. 5억을 받으면 한 2억 정도 세금이 나갈 텐데 그 2억의 5%라 그러면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납세 협력을 하는 데 대해서 뭔가 인센티브를 줘는데 그게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좀 줄이자는 취지입니다.

○**정일영 위원**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제도가 유지되면 캡이 있어야 되겠네요.

○박형수 위원 유지된다는 전제가 있으면 캡이 있어야 되지만 이 제도 유지될 필요가 있느냐, 이게 과세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해서 이런 혜택을 준다 그러면 명확한 사람들은 손해를 보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명확한 세금을 내는 사람도 우리도 납세조합을 해 가지고 그 혜택을 달라고 하면, 그것과 형평이 안 맞잖아요, 지금.

오히려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과세할 수 있도록 과세 당국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애매하다고 해 가지고 너희들이 조합 결성해 가지고 하면 혜택을 주겠다 그것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그런데 이것도 그냥 저절로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장 경유해 가지고 지방국세청장이 승인 관리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판단해서 그게 더 유리하거나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그게 아니라 그냥 가서 자기들이 파악해서 하는 게 더 낫겠다 싶으면 그냥 가서 파악하는 겁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뒤의 담당 국장 얘기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장 장영규 소득세제과장입니다.

잠깐만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자나 근로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외국기관, 그다음에 국제연합군, 그다음에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에서 급여를 지급하거나 아니면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농축수산물 판매업자, 노점상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형수 위원 그것은 맞아요. 그런데 오십몇 개 그것을 국세청으로부터 아까 얘기한 가공된 형태로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도대체 어떤 단체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지는 좀 현황을 파악해 보고 이 제도의 근본적인, 지금 이게 캡을 씌우느냐 마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제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경준 위원 그리고 여기 영세사업자로 구성된 납세조합의 조합원도 있지만 지금 실장님이 설명한 것처럼 국외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로 구성된 납세조합 이 부분이 아마 잘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 것 같아요. 나도 이해가 잘 안 되고.

영세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러려니 하겠는데 국외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하고 영세 납세조합 조합원하고는 전혀 다른 성격 같은데 유사한 성격이 아니고, 이게 왜 한 묶음으로 묶여 있는지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그러니까 납세조합이라는 게 내가 납세를 하기……

○유경준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그런데 같이 취급돼야 되는지, 영세사업자로 구성된 납세조합 조합원하고 국외소득이 있는 근로자로 구성된 납세조합하고 이게 같이 묶어져……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그게 별도의 제도는 아니고요 그냥 납세조합인데 그것을 안을 내려다 보니까 주로 이런 사람들로 구성된 게 있고 이런 사람들로 구성된 게 있고 그 얘기입니다.

○유경준 위원 아니, 그런데 그 부분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공제 한도하고 세액하고 그게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두 그룹이 상당히 이질적인 그룹 같은데 공제액이나 한도액이 합당하냐 이 부분 같아요.

○소위원장 김영진 현재 실제로 캡을 씌우지 않고, 공제 한도를 씌우지 않았을 경우 나타났던 현장의 동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제 한도를 씌우지 않으니깐 상당히 많은 금액들에 관해서 조합원에게 배당이 돼서 그런 문제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비용으로 처리해서?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자가 숫자상으로는 많기는 많은데요. 그런데 이분들은 노점상이나 약간 진짜 어려우신 분들이니까 진짜 행정이 잘 안 돼서 하시는 분들 이런 거고요.

근로자도 숫자는 있는데 이 부분은 주로 해외에서 파악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적으로 그것을 아예 찾으러 가는 게 나은 건지 약간의 인센티브를 줘서 오히려 자진해서 신고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건지, 그런데 후자 쪽이 지금은 낫다고 보는 거고 실제 발생 사유는 아까도 얘기한 대로 외국법인인데 국내에서 월급은 받는데 갑자기 스톱웍션이라든지 굉장히 큰 돈이 왔는데 그건 국내에서 지급을 안 하기 때문에 국내 경리담당자가 원천징수를 못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자기들이 숨길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모여 가지고 한 50명이 모여서 원래 받는 봉급 외에 스톡옵션으로 받은 봉급을 다 모아 가지고 자기들끼리 한 단위로 해 가지고 그것을 신고하면 그렇게 되면 그것을 보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세원이 발굴이 된 거지요. 그런 노력들을 자꾸 부추기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살짝 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전에는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었는데 요즘은 고소득자에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캡을 좀 씌우는 게 낫겠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말씀 주신 대로 이 동향을 보고 과연 이런 제도를 하는 게 나은 건지 이런 것들은 해외 사례라든지 아니면 진짜 이게 어디서 발생되는지 그다음에 우리가 과연 파악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간사님.

○류성걸 위원 지금 차관님 설명은 1950년대에 어려웠던 세무행정 환경 속에서 있어 왔던 이야기이고 전 국민 고용보험제라고 해서 이 정부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개인별 소득과악 차원에서 보더라도 납세조합이라는 그것은 이제 없어져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없애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개별 소득도 과악을 해서 하겠다고, 그것도 플랫폼 근로자라든지 특고 포함해서 이런 분들까지 다 개별적인 소득 과악을 하고 있는데 하물며 외국기업에서 근로소득으로 소득을 받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 가지고, 그것은 또 어떻게 하나 하면 이것 법에 의해 갖고……

저도 처음에는 단순히 캡을 씌워서, 너무 고소득자에 대해서 지원이 많으니까 캡을 씌우자고 했는데 이것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매월 징수·납부한 소득세액의 2~10%를 교부금으로 주고 있어요. 그 교부금은 또 뭐냐 하면 납세조합의 운영비를 충당하도록 되어 있는, 이거야말로 진짜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동료 위원님들 말씀대로 단순히 납세조합에 개별 인별로 해서 캡을 씌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납세조합 자체에 대한 검토를 좀 해야 되겠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이 어느 때인데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전산화가 되어 있고 또 홈택스라는 수천억을 들여서, 예산으로 해서 아주 정확하고 또 빠르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서 이것은 보니까 1950년도의 그 내용을 아직까지 아무런 검토도 안 하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캡 씌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납세자 전체에 대한 현황하고 또 이제까지 지원했던 사항들 전체 납세조합 관련된 내용들을 전부 다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관련해서 해당 자료의 여러 가지 존재 여부, 가능성 여부 해서 가능한 부분 답변하시고 조금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유경준 위원 이것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신고한 것은 캡을 씌워서 그 이상 받겠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신고 안 한 사람들은 어떻게 파악해요? 그러니까 신고 안 한 사람 파악이 지금 안 된다는 말씀 같아 가지고……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신고를 하기 위해서 이 조합에 가입을 하는 것이거든요.

○유경준 위원 물론 그런데, 신고 안 한 사람은 그것 어떻게……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장 장영규 신고를 안 하게 되면 무신고 가산세가 20%가 붙게 됩니다.

○유경준 위원 그것도 적발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도 적발했을 때이고 지금은 적발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인센티브 부여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 정정훈 소득국장입니다.

말씀대로 적발이 잘 안 되니까 이 조합을 만들어서 인센티브를 주자는 것입니다.

○유경준 위원 그런데 다른 영세사업자들은 해당이 안 되더라도 국외에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고액인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이 금액을 보면 납세조합이 근로자 납세조합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존경하는 류성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세를 어떻게 더 잘할 수 있는지…… 이제는 다 할 수 있잖아요. 해외 협조도 필요한 거고……

○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 정정훈 지금 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우리가 인프라를 갖추고 전 국민 고용보험 이런 부분들은 이제, 플랫폼 사업자들은 다 국내 사업자들이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세금계산서를 매월 내라, 세금계산서를 빨리빨리 내면 그 대신에 인센티브를 주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국내법적으로 어쨌든

관리를 하거나 의무를 주거나 인센티브를 주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첫 번째 두 번째 대상자는 첫 번째는 너무 영세사업자이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의무를 줄 수가 없으니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 국외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이 제도가 없으면 소득 파악이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외에는 어떤 페널티를 줄 수가 없습니다, 주는 사람 자체가 외국이기 때문에. 페널티를 줄 수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이 제도를 없앤다는 것은……

○**유경준 위원** 내는 사람은 국내인이잖아요, 근로자는 국내 근로자잖아요.

○**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 정정훈** 근로자한테는 저희들이 최대한 페널티를 주지요.

○**유경준 위원**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 정정훈** 그것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유경준 위원** 지금 가상자산도 다 과세할 수 있다 그러는데 이것도 못 한다면서 어떻게 가상자산을……

○**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 정정훈** 아니, 그것은 당연히 이것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기 싫거나 적게 내거나 하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역할은 국세청이 당연히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서로가 불편하게 덜 신고하고 또 다시 추적을 하는 것보다는 애시당초 성실신고를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효율성이 높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되 과도한 인센티브를 방지하기 위해서 줄이자 하는 것이고.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것을 줄이면 오히려 더 도망갈 것 아니냐라는 걱정을 전문위원이 하고 계신데 위원님께서 또 타당한 지적이 시기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아예 줄 필요 없는 것 아니냐, 도망가면 그냥 다 잡으면 되지 월 10원이라도 왜 주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책 판단의 영역이라 생각하고요. 저희들은 좀 더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면서 이 제도가 안착하기를 그런 측면에서 한도를 주자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간사님.

한두 분 얘기하고 이것은 좀 논의하겠습니다.

○**류성걸 위원** 국장님,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데요. 지난번에 코로나19 재난지원금 희망지원금 드릴 때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우리 지역구에도 그런 분들이 저한테 수없이 항의를 하고 했는데 노점상들한테 ‘세무서에다 신고하십시오. 그러면 재난지원금 드립니다’ 할 정도로 이 정부가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마치 진짜 6·25 이후 한 70년 전, 50년 전, 60년 전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지적을 하면 ‘예, 그게 사실은 이제까지 이렇게 됐는데 더 검토를 해서 하겠다’고 이런 취지의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영세자영업자, 지난번에 코로나19 다시 말씀드렸는데 노점상들한테 전부 다 세무서에다 신고하라 했어요, 그러면 지원해 주겠다고. 그러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아마 지역구에 다 그런 항의나 또는 불만을 혹시나 들으신 적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무슨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사는데 그런 것까지 해 가지고 이것까지 해 가지고 세금 뜯어 가느냐’. 그런데 좀 전에 하신 말씀을 보면 마치 이 제도가 아주 유지해야 되고 발전시켜야 되고 보존해야 되고 존속시켜야 되는 그런 형태로 이야기하시면 안 되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캡 씌우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제도 검토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아까 요구했던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정일영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김영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영 위원** 아까 제가 한번 했는데 납세조합이 유지가 된다면 캡이 필요한 것 같고요.

다만 질문은 설명하실 때 보면 외국 법인에 근무하시는 고액 연봉, 스톡옵션 얘기하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 법인이야, 그런데 한국에 브랜치(branch)가 있어서 근무하는데 스톡옵션으로 2억을 받았다,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정일영 위원** 그런 금액을 납세조합을 통해서 납세를 하면 깎아 주겠다는 거예요, 인센티브로.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세액공제를 해 줍니다.

○**정일영 위원** 세액공제를 해 준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분은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될 분이잖아,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일영 위원** 그렇지요? 세금을 내야 되는데 과세관청에서 파악이 어렵다 그것 아니에요? 그래서 인센티브를 줘서 자진신고하겠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예를 들어 지금 그분들이 문제인 것 같은데 2억씩이나 받고 하는 분들이 이것 제 생각에는 인센티브 준다고 100만 원 깎아 준다고 신고하고, 없다고 신고 안 하고 그럴 것 같지는 않아. 이 제도 자체는 저도 좀 이상해요. 그리고……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제가 통계를 갖고 있는데 지금 좀 말씀을……

○**정일영 위원** 그럼 말씀해 보세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지금 근로자조합이 18개가 있고 여기에 조합원 수가 1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조금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들은 조합에 가입을 해서 그렇게 자진신고하고……

○**정일영 위원** 아니, 어쨌든 제 얘기는 그것은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이게 인센티브로……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연봉 스톡옵션 2억을 받는 사람들이 이것 100만 원 인센티브 준다고 신고하고 안 준다고 신고 안 하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납세해야 될 세금이기 때문에 납세를 안 했을 때 범칙자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고를 하겠지.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이것 뭐 100만 원 좀 깎아 준다고 신고하고 안 깎아 준다고 신고 안 하나? 신고해야 되니까 하는 거지, 세금 내야 되니까 내는 거고.

그러니까 이 제도는 전반적으로 다시 좀 검토해서 다른 위원님 말씀하신 것 등등…… 또 요새 인프라가 여러 가지 인터넷 글로벌 시스템이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제도는 한번 다시 검토해서 보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주영 위원** 저도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김주영 위원님.

○**김주영 위원** 안 그래도 질문을 드릴 것에 답을 하셨는데 국외 근로소득이 있는 인원은 몇 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국외 근로소득이요?

○**김주영 위원** 예, 아까 여기 조합은 18개 조합이고 조합에 가입된 사람은 1만 명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국외 근로소득이 있는 인원은 몇 명 정도

로 추정하고 있어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그것은 별도로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김주영 위원** 그러면 여기 조합을 통해서 현재 납부하고 있는 세금 총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00억 정도, 1400억 1500억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1458억이네요.

○**김주영 위원** 그러면 지금 국외 근로소득이 있는 인원에 대해서는 파악은 되고 있습니까? 파악 조차 안 되고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파악되지요.

○**김주영 위원** 파악되고 있으면……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그런데 이 케이스는 뭐냐 하면 인적용역 소득이라 그래 가지고 외국에 있는 모회사나 이런 데다 뭔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외국으로부터 직접 받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입니다.

○**김주영 위원** 아니,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경제 당국에서 의지만 있다면 제도를 보완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페널티를 강하게 물든지 해서 이런 부분들을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세원 포착을 위한 노력은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주영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정말 1954년도에 도입된 이 제도가 지금 시대적으로 맞는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소위원장 김영진** 박형수 위원님 하고 이것은 조금 논의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저는 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의 답변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얘기 지금 한 이삼십 분 동안 하고 있는데 정부가 결론은 어차피 지금 자료를 제출해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으면 이삼십 분 전에 벌써 끝났어요. 그런데 정부가 이 제도를 마치 없애면 안 되는 것처럼 그것을 자꾸 옹호해서 뭘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공방이 돼서 시간만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제도를 논의를 할 때 있는 제도를 함부로 막 허물어서도 안 되지만 그 제도가 계속해서 영속된다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50년대에 만든 이유가 있잖아요. 그때 무슨 전산이 있습니까,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이렇게라도 유도를 해서 과세를 확보하자 이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그것을 지금 세계에 전산이 다 되어 있고 이런 상황에도 이 제도를 여전히 유지한다는 이것은 시대에 안 맞는 것 같더라는 그런 위원들의 논의가 있으면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자료를 제공해서 논의를 더 해 보도록 합시다 이게 정부의 역할이지 이 제도는 이러이러해 갖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존치시켜야 된다는지 뭐 어떻게 하면 안 된다는지 그게 정부의 역할이 아니거든요.

다시 한번 그 얘기를 분명히 할 테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 다시 논의하고 앞으로 다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렇게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그러시지요, 정부 측에서 66페이지 납세조합에 의한 현재의 징수금액이 2020년 기준으로 1379억이고 대부분이 근로자납세조합이라고 이 통계를 봤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인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면 그것을 근거로 하고 추가적으로 세원을 발굴해서 현실 가능할지 아니면 약간의 기간을 주고 조정해 나갈지를 판단해 보도록 논의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번 검토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호 68페이지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개정안인데요. 먼저 지급명세서 제도하고 간이지급명세서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고 개정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급명세서는 종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매년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 매월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게 현행 제도였구요.

그런데 2019년도에 근로장려금 제도가 생기면서 소득을 반기별로 파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반기별로 파악하기 위해서 종전 지급명세서 제도와 다른 간이지급명세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게 제도의 취지이고요.

그래서 간이지급명세서를 도입하면서 하단에 그림 보시면 2018년도에 근로장려금 연 2회 지급을 위해 신설을 하면서 간이지급명세서는 반기별인데요, 여기 대상이 상용근로소득하고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입니다. 그런데 2020년도 말에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도입하면서 그리고 소득세법 개정을 해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경우

매월 제출하도록 소득세법이 한 번 개정이 됐습니다. 이게 제도이고요.

그래서 현행법에 따라서 제출 부분은 70페이지 하단 내용인데 기본적으로 일용근로소득지급자하고 그 밖의 모든 소득지급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밖의 모든 소득지급자 중에서 상용근로소득 지급자는 매 반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지급자는 매월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설명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주기 관련인데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같은 경우에 김정호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상용근로소득을 연 1회 하반기는 제외하고 상반기만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도 마찬가지로 상반기에 제출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정부안 같은 경우에는 상용근로소득 및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매월 하라는 것입니다. 매월인데 현행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매월로 되어 있고요, 상용근로소득은 매 반기를 매월로 인적용역 관련 기타 소득은 매월 신설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도록 하는 게 개정안 내용입니다. 김정호 의원님 같은 경우 72페이지 내용이고요 정부안 같은 경우는 73페이지 내용입니다.

73페이지 표를 간략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현행은 상용근로소득 같은 경우에 매 반기별 제출을 매월 제출로 바꾸는 거고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지급자는 동일하고 매월입니다. 그다음에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지급자는 매월 제출하도록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김정호 의원님 같은 경우에 지금 하반기 지급명세서 제출 간격이 1월 말하고 3월 10일로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하반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자는 취지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할 경우에 지급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제출을 하면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3월 15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 실무적으로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다음 정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정부안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향후에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현재의 근로시간 기준에서 소득

기준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변경할 예정인데 첫 번째 상용근로소득 지급받는 자의 경우에는 향후 소득 기준으로 고용보험이 적용될 경우와 같이 여러 종류의 소득을 받는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고용보험 부과를 위해서 소득 파악 주기 단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새롭게 신설되는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간이지급명세서의 매월 제출의무가 있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과 그 반복성·계속성에서 차이가 있을 뿐 유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 대상 확대 및 직종 간 형평성 차원에서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소득 파악을 강화하는 경우 관련 정보를 복지정책 지원 및 부정수급 방지 등에 활용 가능하다는 게 기재부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같이 검토해야 될 의견이 있는데요. 지금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르면 1단계 같은 경우에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현 고용보험 체계 내에서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거고요. 2단계는 소득 기반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하는 겁니다. 전환하는 건데 상용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상용근로자의 경우에는 현재도 고용보험법상의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 1단계인 적용 대상 확대에는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2단계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될 경우에는 그 상용근로소득을 보다 적시에 파악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로의 전환은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르면 단계적으로는 2023년에, 궁극적으로 2025년에 가능한 것으로, 정부는 내년에 태스크포스 운영을 통해 소득기반 고용보험 운영 방안을 마련한 후에 2023년 상반기에 관련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2023년 말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바 정부안의 시급성 및 시행 시기와 관련하여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용근로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방향에서 그 단축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만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로의 전환 추진 상황, 납세협력 비용 증가 등을 함께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전 국민 고용보험 그다음에 소득 파악 인프라 확충 이런 차원에서 정부가 하고 있는 일련의 과정들을 세제 측면에서 특히 소득 파악 측면에서 뒷받침해 주려는 거고요. 그런데 적시성 있는 소득 파악을 하려면 아무래도 소득 파악 주기를 단축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받기 이런 것들을 월 단위로, 봉급이 결국 월 단위로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바꾸자는 거고요.

말씀 주신 것 중에 상용근로자 같은 경우는 약간 나중에 해도,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고용보험 같은 경우도 상용근로자 같은 경우에 1년에 한 번 정도 연말정산 할 때 소득이 파악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의 상용근로자도 고용보험은 월 60시간 이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테이터스(status)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상용이라고 봐도 계속해서 사각지대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보험 쪽에서는 월 단위로 파악해 주면 자기들이 그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데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고 사실은 이것은 계속해서 긴급하게 요구를 해 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게 저 뒤로 갈 사항은 아니고 결국 사각지대를 없애고 그다음에 고용보험 커버리지를 넓히고 소득 파악의 적시성을 갖는다는 측면에서는 상용근로자도 같이 매월 간이지출명세서를 받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준 위원 정부안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소득 파악이 돼야…… 이게 전 국민 고용보험만을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고 지금 복지제도나 이런 것들이 확충되는 과정에서 영세한 근로자나 영세한 사업자의 소득 파악 없이는 이 복지제도를 시행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세금을 잘 돌려주는 게 중요한 시기인데 그 부분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고용보험 관련해서도 상용근로자 같은 경우에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한 10여 년째 실시되고 있는 게 처음에 한 3000억 정도로 시작한 게 1조가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상용근로자의 고용보험 확대

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여기 나오는 것처럼 상용근로자의 월별 소득 파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가입을 회피합니다. 그래서 당근과 채적을 동시에 쥘 가지고 이 사업은 계속 실시해 나가야 되고.

다만 전문위원 지적이 있는 것처럼 여기에 당근이 좀 없는 것 같은데, 당근 하는 것도 뒤에 나오니까? 나온다고 보면 저는 이것은 굉장히 편리하고 시급한 사업이고 그리고 복지제도 확대를 위해서 필수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일영 위원 저도 정부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주영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연간 상용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연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지급하는 자가 제출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제출해도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요? 꼭 월별로 파악을 해서……

전체적으로 고용보험뿐만 아니라 세금징수라든가 이런 데 어떤 문제가 있지요?

지금 반기로 한다고 했을 때도 매 월별로 바꾸는 것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실 고용보험 같은 경우도 파악을 할 때 월 단위로 소득이 있는 걸 계속 제출하게 되면 거기에서 빠지고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계속 월 단위로 보이는데……

○김주영 위원 들쭉날쭉하겠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6개월 단위로 묶어서 하면 그런 측면에서 누락이 될 가능성도 많이 있고요.

○김주영 위원 그런데 고용보험 지급을 나중에 이걸 근거로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연간 소득으로 따져서 월로 나눈다든지 무슨 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그런데 상용으로 1년, 2년, 3년, 5년 이렇게 쭉 근무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파악이 되지만 3개월로 들어갔다 다시 빠지고 또 다른 데로 들어가서 다른 사업장에 가서 또 3개월 하시고 그런 분들……

○김주영 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급하는 쪽에서 제출하도록 돼 있잖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그런데 그게 모아지면 1년 동안 이분이 세 번 움직이신 것도 알 수 있고 사업장에서 어디 갔는지도 알 수 있으니까 제대로 부과도 할 수 있고 파악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지요.

○김주영 위원 그런데 인건비로 지급을 하게 되면 다들 세금 문제라든지 비용 처리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급하는 쪽에서는 계속해서 빠뜨리지 않고 할 텐데 그게 그렇게 하면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것 아닌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그런데 대부분 이런 것들은 보통 단순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세무사들한테 위임을 하기 때문이에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태주 저도 그걸 확인을 해 봤는데요. 지금 기업들 시스템이 월급을 주게 되면 원천징수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원천징수 자료를 다 갖고 있는데 이 원천징수 자료 단추를 한 번 누르면 바로 이렇게 넘어간답니다. 간이지급명세서로 넘어가서 제출이 되기 때문에 그 부담 자체는 아주 크지 않다고 그러니까.

○김주영 위원 그런데 어차피 거기에 누적돼서 쌓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보내더라도 다 누락이 된다고나 이런 문제는 없을 거고, 들쭉날쭉한 부분들이 사실은 월별로 파악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나중에 보험이나 세금 이런 쪽에 별로 도움이 될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요. 어떤 도움이 되지요, 그게?

그렇게 월별로 파악했을 때와 1년에 한 번인지 분기별이든 반기별이든 했을 때 정부에서 어떤 이득이 있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지금 고용보험이나 세금을 파악하는 부분도 있지만 복지제도 측면에서 제대로 소득이 파악이 돼야 복지 서비스를 제대로……

○김주영 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어차피 다음 해에 적용을 할 것 아니에요? 당해 연도에, 당월에 파악이 된다고 해서 그다음 익월에 적용이 된다고나 그런 문제는 아니잖아요?

○조세및고용보험소득정보연계추진단장 이용주 앞으로는 시간으로 하는 게 아니고 월별 소득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고용부에서는 월별로 소득 파악을 할 수가 있고 또 지금……

○김주영 위원 우리 지금 상용근로자들도 연간 소득을 파악을 해서 원천징수를 월별로 떼어 내긴 하지만 나중에 가서 정산해 가지고 다시 돌려주고 하는 게 연말에 정산을 하는 것 아니에요?

○조세및고용보험소득정보연계추진단장 이용주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다음 해 3월에 내기 때문에 1년 정도의 시차가 발생하거든요, 최대한 보면요.

○김주영 위원 예, 그렇지요.

○조세및고용보험소득정보연계추진단장 이용주 그러니까 매월 하면 더 빨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특고나 원천 사업소득도 매월 받게 되기 때문에, 이게 정합성 있게 제도가 운영되려면 여러 가지 소득의 형태가 있기 때문에 매월 받아야지만 되는 것이고……

○김주영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조세및고용보험소득정보연계추진단장 이용주 이렇게 했을 때 부수적으로, 지금 고용보험료를 전년도 보수 기준으로 부과하는데 앞으로 매월 받게 되면 매월 받기 때문에 매월 과세할 수 있거든요.

○김주영 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조세및고용보험소득정보연계추진단장 이용주 그러면 정산 과정에서 보험료가 크게 늘어난다든지 이런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수적 효과가 있습니다.

○김주영 위원 장점이 있으면 저한테 장점을 정리해서 한번 보내 줘 보세요.

○조세및고용보험소득정보연계추진단장 이용주 예, 알겠습니다.

○김주영 위원 이해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상용근로자들도 어차피 연소득을 갖고 정산을 하고 하는 건데 그게……

○유경준 위원 제가 좀 말씀드리면 상용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연간에서 월 소득이 비슷하기 때문에 1년에 한번 정산해도 큰 문제가 없지만 지금 고용보험을 확대하려는……

○김주영 위원 아니요, 여기도 지금 어차피 지급하는 자가 데이터를 축적을 하고 있다가 보내면 되는 거거든요?

○유경준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김주영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상용근로자가 아닌 사람들이 소득이 들쭉날쭉하다고 해서 거기에 고용보험을 부과하는 부분이라든지 징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게 연간 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지요?

○유경준 위원 특고 같은 경우에는……

○김주영 위원 우리가 토론할 문제는 아니네요, 지금.

○박형수 위원 얘기해도 괜찮지요.

○유경준 위원 특고 같은 경우는 라이더나 이런 사람들은 수입이 굉장히 들쭉날쭉하잖아요. 그래서 인적 베이스로 한다는 건 월수입 베이스로 보

험료를 산정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런 것 하기 위해서 기업에서는 전산 처리를 해 가지고 한 번에 쏘 주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영세 사업장들, 그런 것이 어려운 데는 그걸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한 게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자한테 부담을 주거나 근로자한테 부담을 주는 것은 현재는 전산 처리가 발달돼 있는 곳은 아무 문제가 없고, 세금 처리나……

○김주영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월소득으로 파악을 하나…… 어차피 누적돼서 익년도에 적용을 한다고 하면 이게 실제 연간으로 소득을 파악하나 월별로 소득을 파악하나 사실은 큰 차이가 없지요.

○박형수 위원 이것은 있을 것 같네요. 정확한 소득 파악을 위해서는 월별로 파악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3개월 근무하다가 이 사람이 옮기는 경우도 있지만 그 업주가 폐업을 해 버린 경우도 있잖아요. 폐업해 가지고 지금 부도가 나서 없어져 버렸는데 그 사람한테 월별로 제출하도록 해 놓으면 3개월 동안 소득 지급한 게 파악이 되는데 1년 단위로 해 버리면 3개월 받았던 이 사람이 없어져 버리면 부도나고 폐업됐는데 그 자료 갖고 있겠습니까? 제출하겠습니까? 제출 안 하지요. 그래서 일단 정확한 파악을 위해서는 월별이 훨씬 더 정확하다 이렇게 보이네요.

○조세및고용보험소득정보연계추진단장 이용주 참고로 유 위원님께서 당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 지급명세서 제출 시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박홍근 의원안이 지금 제출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에. 이 부분이 논의될 때 당근 부분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준 위원 이것 작년에 통과된 것 아니에요?

○박형수 위원 작년에 이런 것 했잖아요.

○유경준 위원 작년에 통과된 것 또 하고 있는 건가?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그때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해서……

○유경준 위원 플랫폼만 통과됐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예, 아직 상용은 안 됐기 때문에, 플랫폼에 대해서……

○소위원장 김영진 류성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걸 위원** 세제실장님, 명칭에 대해서 먼저 좀 여쭙볼게요.

지급명세서의 간이가 간이지급명세서예요? 제가 왜 여쭙보느냐 하면 보통 우리가 확정 신고라든지 또는 중간 예납 이렇게 하면 그 본래의 목적을 위해서 중간에 하는 것을 간단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간이다 또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본래 납세자의 경우에도 간이 세금계산서를 끊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류성걸 위원**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지급명세서……

○**류성걸 위원** 아니, 명칭 자체를 제가 여쭙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급명세서하고 간이지급명세서가…… 지급명세서의 간이한 게 간이지급명세서예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그렇습니다.

○**류성걸 위원** 그러면 표를 한번 보시지요. 72쪽입니까? 지급명세서하고 간이지급명세서, 거기에 보면 간이지급명세서의 상용근로소득 지급자는 지금 현재 매 반기 그다음에 간이지급명세서의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위에는 근로소득이고 그다음에 사업소득이고 그다음에 새로 생기는 게, 신설하는 부분이 인적용역 관련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지급명세서의 간이라면 지급명세서에 해당이 되는 대상자가 간이지급명세서에 해당되는 대상자하고 똑같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야 지급이 있고 그다음에 간이가 있을 것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합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류성걸 위원**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이게 당초에—71쪽입니까—EITC를 위해서 만들 때 간이지급명세서라고 한 이름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그러니까 지급명세서는 좀 내용이 많이 들어가고요. 간이지급명세서는 내용이 인적사항하고……

○**류성걸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런 차원의 간이라는 것하고 대상이나 또는 순전히 들어가는 자체에 대한…… 여러 개를 많이 넣어야 되는데 일부만 넣어 가지고 하는 그런 간이지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드린 확정 신고하고 예납 신고 차원에서 같은 걸 하는 과정에서 하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혹시 제 말씀 이해를 하시겠어요?

아직 이해를 못 하시네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급명세서하고 간이지급명세서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완전히 대상이 다른 거예요. 대상이 다르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아니요, 대상은 예를 들어서 사업주가 누구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그 지급한 명세서가 지급명세서고 이것을 좀 간단한 형식으로 만든 것이 간이지급명세서니까 발급한 사람은 사업주고 그 대상은 바뀔 수가 있겠지요.

○**류성걸 위원** 그래서 일단 그 문제를 지적을 한 개 하고요.

그다음에는 저는 당연히 상용근로자인 경우에야 상용근로니까 계속해서 상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 일용근로자는 3개월 미만의 경우를 하니까 그건 사실 들쭉날쭉하니까 매월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상용이야 장기 계약을 맺어서, 법에 의해서 계약을 맺어서 하는 거니까 1년에 한 번 해도 되고 또 더 정확하게 하려고 하면 반기에 한 번씩 해도 되는 그런 형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용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런데, 간이지급명세서 할 때도 상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왜 매월 하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매월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정부안이고요.

○**류성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정부에서는 위의 상용근로자의 경우에는 현재 지급명세서를 연 1회만 하잖아요. 지급명세서는 연 1회만 하는데 정부안에서는 상용근로자인 경우에 간이지급명세서는 왜 매월 하느냐 이런 뜻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조세및고용보험소득정보연계추진단장 이용주**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성걸 위원** 예,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조세및고용보험소득정보연계추진단장 이용주** 간이지급명세서는 인적사항하고 급여지급 내역이 나오는 것이 간이지급명세서고요. 용어가 좀 비슷한데 지급명세서는 연말정산해서 세액공제와 소득공제가 반영된 결과를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정확히 말하면 연말정산 결과를 반영한 지급명세서……

○**류성걸 위원** 그러니까 명칭에 관련해서는 헛갈리기 때문에 사실은 명칭 자체에 따르는 그거는 사실 고쳐야 돼요. 이름 자체, 명칭 자체가 완

전히 다른 거예요.

○조세및고용보험소득정보연계추진단장 이용주 그렇습니다.

○류성걸 위원 어쨌든 좀 제가 길어졌는데 지금 보면 상용근로자인 경우에는 매월이 아니라 1년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조세및고용보험소득정보연계추진단장 이용주 그런데 그것이 일자리가 한 군데만 있고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경우는 그 말씀이 맞는데요. 그게 실제 일용이나 상용 기준이 3개월이거든요. 그런데 계약이 3개월 넘어가면서 6개월이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여러 군데에서 잡(job)이 있으면서 한 군데만 받는 것이 아니고 복수의 일자리가 있는 경우는 그것을 합쳐 줘야 되기 때문에 매월 파악을 해야지만……

○류성걸 위원 그건 제가 알겠어요. 당연하지요. 왜냐하면 상용이라고 하더라도 3개월 되고 또 다른 여러 잡을 가지고 있으면 합쳐야 되니까 그 말씀이 맞는데 그러면 지급명세서도 마찬가지로 아니겠어요. 요새 투잡 뛰고 쓰리잡 뛰고 막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상용으로 근무를 하면서 낮에는 나인 투 식스(nine to six)로 해 가지고 근무를 하고 저녁부터 시작해 가지고 알바 형태로 막 뛰면 그것도 똑같은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세및고용보험소득정보연계추진단장 이용주 현재 그 부분은 그 근로자가 회사한테 그런 부수입을 신고하지 않으면 각 회사는 자기가 준 것만 연말정산을 해서 지급명세서 제출하고 그것을 합산해서 국세청에서 다시 과세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류성걸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기본적으로는 상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아까 그런 취지로 하면 지급명세서도 상용근로자는 똑같은 취지예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생각이, 제가 코멘트한 것은 이것을 좀 통합해서, 지급명세서하고 간이지급명세서 명칭 자체도 헷갈릴 뿐더러 이것을 좀 통합을 해 가지고 하나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다시 리셔플(reshuffle)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관님?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연말정산 하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매월 받는 것은 행정부담이 굉장히 많아지고, 납세협력 비용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월별로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고 또

협력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간이명세서가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래서 그런 목적에 따라서 조금 배분을 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저도 같이 한번 질의를, 같이 한번 해서 같이 하고 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전문위원이 제출한 검토보고서 79페이지 보면 상용근로소득의 간이지급증명서 제출 주기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방향에서, 그러니까 반기에서 월로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인정하나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로의 전환 추진 상황, 납세협력 비용 증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 한마디로 추진 현황이 어떻고…… 영세 소상공인들 관련한 고용, 1인·2인 고용까지 다 신고하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개인도 마찬가지로. 그런 경우 실제로 납세협력 비용이라는 것이 지금 다 대행을 하잖아요, 조그마한 영세사업자나 소상공인들도.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국세청 국장님 나가셨나요?

한번 발언대로 나가 보세요.

관련해서 민원들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까?

○국세청소득자료기획반장 윤순상 납세협력 비용을 말씀하시는……

○소위원장 김영진 만약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반기는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것 아닙니까?

○국세청소득자료기획반장 윤순상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6개월에 한 번 하는 것을 매월 한 번씩 하는 것으로 변경되게 되면 신고의 주체는 사업자 아닙니까?

○국세청소득자료기획반장 윤순상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사업자들이 들어가는 비용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 관한 제반, 이 제도의 도입에 따른 검토한 것 있어요?

○국세청소득자료기획반장 윤순상 일단 올해 7월부터 일용근로하고 그다음에 인적용역형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월별 제출하는 것으로 이미 변경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좀 순조롭게 제도가 운영이 되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일부 중소기업장이라든지 세무대리인 단체 쪽에서는 약간의 우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실무적·행정적 부담이 좀 늘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그래요.

다음 김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홍 위원 간이지급명세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잖아요. 그런데 그 필요성이 정부 입장에서 보면 근로자나 사업자의 소득 기반한 고용보험 구축에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것이 과연 효과도 그것에 한정하는지 아니면 이것이 이해관계인한테 미치는 영향이 뭔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위원으로서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이것 낼 때 공청회라든가 전문가 의견은 들었습니까?

○조세및고용보험소득정보연계추진단장 이용주 이 법안 과정에서 저희가 세발심을 통해서 세무사회하고 공인회계사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또……

○김수홍 위원 그렇게만 해 가지고 주 정부 입장에서 의견을 청취해서 개정안을 내서 조세소위에서 한 달도 안 돼서 결론을 낸다는 것은 저는 너무 성급한 결론에 이를 것 같고, 아까 위원장님도 전문가 집단이 와서 의견을 한번 들어 보자고 했는데 또 반대하는 의견도 있고 해서 저는 이걸 좀 신중하게 결정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면서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걸 고려해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예, 차관님 말씀하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첫째, 행정부 입장에서 이것은 굉장히 시급하고 영원한 숙제입니다. 소득 파악을 제대로 하는 것, 기본입니다. 이걸 모든 행정의 기본이고 이것이 되어야 제대로 된 복지도 할 수 있고 조세의 공평성도 얻을 수 있고, 모든 것의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세제뿐만 아니라 이것이 전체적인 굉장히 큰 틀하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 그다음에 우리 복지체도를 어떻게 가져 갈지 그런 와중에 전체 그림들이 그려지면서 세제 부분에서는 어떻게 뒷받침을 해 줘야 될지 그런 전체적인 그림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졌고요.

가장 최초의 시도는 뭐냐 하면 상용직에 대한 지금까지 원래는 연 1회 지급명세서를 냈던 것들을 EITC를 주면서 우리가 조금은 반기로 줘 보고 싶었는데 반기로 주려니까 소득 파악이 안 되니까 연간으로 끊어서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이지급명세서를 6개월에 한 번씩 그걸 받아 가지고 EITC 대상자한테 적시로 반기에

한 번씩 돈을 주는 것으로 했는데 그때도 고민이 뭐였냐 하면 1년에 한 번씩 내던 걸 과연 1년에 두 번 내라고 그랬을 때 과연 사업주들이 순응을 하겠느냐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는데 당연히 약간 잡음은 있었지요. 그렇지만 그 부분이 정착이 되었고요.

그다음에는 어디를 적용할 거냐였는데 가장 취약한 부분이 결국 일용직이라든지 특고니까 여기부터 먼저 하자고 그랬는데 상용직도 결국은 이것이 기본 인프라이기 때문에 상용직도 월간으로 파악이 되어야 아까 국장이 얘기한 대로 투잡을 뛰신다든지 그다음에 월간으로 되어야 이것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보이고 지금도 고용부에서는 실업급여를 줄 때도 이것이 1년 뒤에 정산이 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월급을 맞춰서 줄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월간 소득 파악은 이걸 당연히 가야 되는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사업주들의 순응을 어떻게 만들어 낼 거냐 이것이 가장 큰 문제고요.

그다음에 아마 김수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것이 자칫 잘못해서 개인정보 문제가 되니까 이런 부분도 짚어 봤느냐 이런 부분이신데 지금 이것은 모든 정보는 다 국세청에 법적 근거가 있어서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거기에 넘겨줄 때는 그 근거에 의해서 넘겨주지 근거에 있지 않고서는 절대로 넘겨줄 수가 없습니다.

○유경준 위원 (손을 들)

○소위원장 김영진 예.

○유경준 위원 제가 조금 알은체해서 미안하지만 이것이 한 30년 된 숙제입니다. 전 국민 소득 파악, YS·DJ 시대 때부터. 세금을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세금을 어떻게 잘 나눠 주고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위해서는 굉장히 필수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소상공인들 지금 손실보상 소급 적용 안 되는 이유가 가장 정확하게 말하면 코로나 시기 때 소득·손실 파악이 안 되어서입니다. 가장 간단한 이유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과세당국이나 사업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근로자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은 좀 빨리 협조를 해서 복지체계 확대 이런 데 기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김수홍 위원 저도 찬성을 하는데요. 국회에서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정책이 국민들한테 미치는 어떤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또 수용성도 있고 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의회가 절차적 정당성을 한 번 거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필요하다면 전문가 의견이라도 저희 위원회에서 1시간이면 1시간 이렇게 들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약간 의견들이 좀 있으셔서요, 대체적으로는 동의하는데……

○유경준 위원 전문가의 의견은 괜찮은데요 이해관계자들 얘기들은 서로 굉장히 다른 이야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인데 이해관계자 얘기는 그것의 본인의 이해관계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굳이 들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이것은 한 번 더 논의를 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 가기 전에 시간이 2시간이 좀 넘어서 방역지침상 20분간 휴식하고 4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다음 항목을 설명해 주시는데요, 나 항목이 가 항목의 반기에서 월 단위로 변경되는 것에 연이어서 연동되는 사안이라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명호 80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도 관련해서 미제출 가산세,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특례 그다음에 불분명 가산세에서의 경미한 불분명에 대한 특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 전에 논의하셨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 제출 주기하고 연결돼 있는 부분이라서요 나중에 가 부분 논의가 결정이 되면 논의하셔야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라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류성걸 위원 80쪽의 개정안에 오타가 아주 중요한 오타인 것 같은데 상용근로소득 기한 후 3개월 이내가 아니고 1개월이지요?

○전문위원 정명호 예, 수정했는데요. 저희가 자료를 파일로 보내 드릴 때는 3개월이었고 자료 갈아 드린 것에는 1개월로 수정했습니다.

○류성걸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저는 그전의 자료여서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나, 다까지 다 동일하지요?

○전문위원 정명호 예.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에서도 의견 말씀해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아까 가 항목과 관련되는 거고요. 그렇게 할 때 결국 가산세 부담 완화,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가 나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다랑 라는 지급명세서도 내야 되고 간이지급명세서도 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지급명세서를 안 내도 간이명세서를 낸 것은 지급명세서를 낸 것으로 간주하면서 그것에 따라서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수홍 위원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그리고 80쪽의 중간에 보면 사실은 반기별로 제출하더라도 2023년 6월 30일까지 가산세를 미부과하는 조항이 신설 조항으로 개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수홍 위원 나·다·라, 다 수용한다고 하시네요.

○소위원장 김영진 예, 나에 들어가 있고요. 다에 대해서도 동일한 의견……

○김수홍 위원 예.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류성걸 위원 가 논의하고 난 뒤에 자동적으로 전부 다 정리가 됩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예, 그렇게 해서 가 논의를 하면 나·다가 같이 연이어서 있는 거고 가산세 미부과, 다음에 ‘제출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조항들이 있어서 그렇게 논의하겠습니다.

라 사항 얘기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명호 라도 마찬가지로……

○류성걸 위원 예, 라도……

○소위원장 김영진 라도 동일한 사항이고. 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길게 저희들이 논의를 진행해 왔기 때문에 관련해서 조금 더 검토하고 또 숙의해서 추후 더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0쪽 금융투자소득세, 양도소득세 분야 관련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정명호 90페이지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양도세 분야인데요.

첫 번째,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

축소 관련된 정부안입니다.

현행 87조의23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 과세 확정신고 의무대상자를 나열하고 있는데요 개정안에서는 예정신고 대상 소득을 지급받지 아니한 자가 과세기간의 금융투자결손금액을 확정하려는 경우와 분리과세금융투자소득—지급 정부안 조특법에서 신설 예정인데요—만 있는 자가 해당 소득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내용입니다.

92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예정신고 대상 소득을 지급받지 아니한 자가 과세기간의 금융투자결손금액을 확정하려는 경우에 확정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등의 제출 자료에 의해서 금융투자결손금액의 파악이 가능한 경우 결손금 확정을 위한 확정신고 의무를 면제하여 신고 이행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금융회사가 과세자료를 미제출·허위제출하는 경우에 제재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결손금액 확정에 대해서 중구적인 책임은 납세의무자인 투자자가 부담한다는 면에서 일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93페이지입니다.

원천징수된 분리과세금융투자소득만 있는 자가 분리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의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복잡하게 기술이 돼 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금융기관에서 이미 원천징수를 해서 굳이 납세자가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 특히 결손이 발생한 경우…… 지금 아마 1000만 명 투자자 중의 한 40% 정도가 결손을 하셨다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은 확정신고 의무가 납세자한테 있지만 원천징수로 다 정리되거나 결손금으로 다 정리된 경우는 굳이 납세자가 확정신고 의무를 안 해도 된다 이런 거고.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경우, 그래도 혹시 착오가 있으면 어쩔 거냐 그런 부분은 이것은 안 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런 의무를 면제해 주는 거기 때문에 납세자가 나중에 확정신고를 해도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무서비스 차원으로 국세청에서 확정된 결손금은 안내서를 통해서 보내 드리기 때문에 그런 장치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의견이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류성걸 위원 이것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결손이 되고 소득이 없었고 이런 경우는 신고를 안 해도 되는데……

차관님, 조세는 부과징수하고 신고납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상증세라든지 또는 종부세도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큰 원칙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쨌든 신고납부를 해야 되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렇지요? 혹시 다른 데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나요, 세제실장님?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금융투자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식을 사고팔아서 생기는 소득 아니겠습니까, 쉽게 얘기해 갖고? 이것은 증권회사에서 반기별로 원천징수해 갖고 그것을 국세청에다 내고요. 그래서 이걸 갖다 예정신고라 하고, 다음 해에 납세자가 이걸 다 정리해서 5월 달에 확정신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소득세 신고와 똑같은 통상의 그런 신고납부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류성걸 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은 확정신고 의무를 배제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류성걸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이런 식으로 확대한다면……

이것은 다른 이야기일 수 있는데, 지금 전산이 참 잘 돼 있는데 굳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뒀 때문에 해야 되느냐, 또 한 가지는 EITC 관계도 국가에서 전부 다 파악되어 있는데 알아서 전부 다 해 갖고 주면 되는 것을 굳이 신고를 받아서 하도록 하는 것 이것하고 어떻게 생각해요?

○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 정정훈 소득법인세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융투자소득세는 원천징수가 잘 돼 가지고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나 환급받을 세액이 하나도 없다 또는 결손금만 발생

해 가지고 추가로 낼 세액이나 돌려받을 세액이 없다, 그 두 가지 경우에는 신고 의무를 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확정시켜 주겠다라는 게 지금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류성걸 위원 그래요, 그런데 제 이야기는…… 지금 이 경우에는 원천징수, 사업자가 하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 정정훈 예.

○류성걸 위원 그런데 국가 차원에서 보면,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지금 EITC 같은 경우에 소득 다 돼 있어요. 물론 재산 같은 경우도 이런 신고를 해야 되지만 그런 경우라면 굳이 안 해도 될 건데……

신고납부 제도가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형태가 될 것 같으면, 확정신고를 이렇게 배제해 갖고 할 것 같으면 이제 전산이 잘 돼 있으니까 다른 쪽에서도 굳이 납세의무자가 그렇게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나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 정정훈 그런 부분이 있는 게 대표적으로 근로소득세의 경우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하고 연말정산을 하면 종합소득신고가 빠지게 되어 있고요. 그것도 하나의 비슷한 예라고 볼 수 있고요.

○류성걸 위원 그것도 연말에 내가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어차피 뭐 떼고 뭐 떼고 뭐 떼고 어차피 내가 해야 되니까 오히려……

○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 정정훈 예, 소득 공제를 받으려면 해야지요.

○류성걸 위원 그러니까 이것처럼 다 돼 있으면 각 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국회면 국회에서 다 알아서 해 갖고 ‘확정됐습니다. 이의 있는 사람은 저 것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 것 아니요?

○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 정정훈 그런 걸 또 다른 예로 보면 기타소득이 300만 원 이하로 있을 때, 예를 들어서 강연료 소득만 한 200만 원 있는 경우에 강연할 때마다 20%씩 원천징수를 해서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다 그러면 그 자체로 종결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서 어쨌든 추가적으로 공제를 받거나 아니면 추가로 납부해야 되거나 뭘 환급을 받아야 되거나 이렇게 없는 경우에는 최대한 신고 없이 종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류성걸 위원 앞으로도 하여튼 그런 게…… 어차피 우리가 전산이 잘 돼 있으니까…… 신고하

려고 하면 뭐를 떼야 되고, 물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니까 그렇기는 한데 저희도 사실은 연말정산 할 때 보면 몇 가지 열심히 하는데 실제로 추가적으로 뭐를 해야 될 것은 진짜 얼마 없어요. 그런데도 1월 달 되면 바빠요. 1월 달 되면 뭐도 해야 되고 또 뭐도 하는데 그걸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이 사안은 특별한 이의가 없으므로 합의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94페이지의 2항 검토의견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정명호 94페이지입니다.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및 금융투자이월금 범위 정비 관련입니다.

첫 번째, 금융투자소득결손금 관련되는 부분인데 결손금을 인정 받으려면 확정신고를 해야 되는데 1번에서 논의하실 때 확정신고 제외를 하나 두셨잖아요. 그것하고 연결되는 체계 정비 사안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제외에 비과세금융투자소득하고 분리과세금융투자소득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96페이지의 검토의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리과세금융투자소득을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에서 제외하려는 개정안은 분리과세금융투자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금융투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서 납부 절차가 종결되므로 확정신고 등 신고납부를 전제로 하는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산정 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비과세금융투자소득을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에서 제외하려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비과세금융투자소득은 그 성격상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납세자의 이해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익원 분리과세금융투자소득과 비과세금융투자소득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게 납세자 편의 제고 차원에서 타당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률을 그렇게 구성한 겁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걸 위원 전문위원께서 분리과세금융투자소득 제외 관련해서 그 밑에 ‘다만’이라고 되어

있는 것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정명호 이 부분은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이 도입되면서 종전의 이자소득·배당소득 중의 일부가 금융투자소득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이자소득·배당소득에 대해서 종합과세기준을 2000만 원으로 했는데 이 부분을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에도 도입할 건지에 대한 논의가 조금 필요하—개정안하고 직접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그 의견 제시한 부분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특별한 사항 없으면 합의된 사안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정명호 98페이지 금융투자소득세의 분할납부 허용 관련입니다.

개정안은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소득세법 77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99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여러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데 분할납부와 관련된 77조를 준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입법적인 보완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적 보완이라, 조항 추가라서 특별한 의견 없는 것 같습니다.

합의된 것으로 알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명호 100페이지입니다.

특정금전신탁을 통한 원천징수 시 금융투자소득세의 통합 원천징수 허용 관련입니다.

현행은 금융회사 등은 특정금전신탁 금융투자소득세 원천징수와 다른 계좌의 금융투자소득세 원천징수를 구분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통합 징수를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지금 법문에는 한 개의 금융회사라도 특정금융신탁 계좌를 갖고 있으면 그 계좌는 다른 계좌랑 구분해서 원천징수하게 되어 있는데요.

금투협회에서 실제로 금융회사들이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그렇게 조문을 해 놔는데 다시 애

기를 해 보니까 기술적으로 풀 수 있고 가능하다고 그래서 결국은 한 개의 금융회사에 있으면 특정금전신탁이든 뭐든 모든 계좌를 통합해서 원천징수하는 그런 식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걸 위원 신탁의 경우에는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가잖아요, 실장님?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맞습니다.

○류성걸 위원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가는데, 아직까지 신탁회사가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나중에 배당을 받는다는지 이렇게 했을 때는 본래 위탁자의 재산으로 되지만 이 소유권을 신탁회사가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나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이것은 원천징수와 관련되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인 소유권은 위탁자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식적인 소유권은 신탁에 가 있지만?

이것은 원천징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따로 할 것이냐 합쳐서 할 것이냐인데 결국은 합쳐서 하는 게 납세자한테 훨씬 좋지 때문에……

그런데 이걸 이렇게 구분해 놔던 이유가 전산상으로 좀 어렵다고 해 갖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은행연합회에서 이 전산이 다 완료가 됐답니다.

○류성걸 위원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고.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확대 해석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다른 경우도, 물론 이것은 원천징수에 관련되는 사항이니까 법을 정하니까 괜찮다고 할 수 있는데 혹시 신탁 관련돼서 이렇게 됐을 때 소유권의 문제, 형식상이지만 그런 게 있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걱정 또는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여쭙보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 정정훈 소득법인세국장입니다.

지금 세법에서 신탁의 종류나 기능에 따라서 납세의무자를 어떻게 볼 것인가, 소득을 도관으로 볼 것인가 실제로 볼 것인가 여러 가지로 규정이 돼 있는데요.

예를 들면 중부세 같은 경우도 지난해 법을 바꿔 가지고 형식적인 소유 주체는 신탁회사지만 납세의무자를 신탁을 맡긴 신탁자로 보도록 규정

이 돼 있고요.

지금 이번에 규정하고 있는 특정금전신탁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 자체가 위탁자입니다. 특정금전신탁의 돈에 대한 형식적인 소유자는 수탁자로 돼 있지만 납세의무자 자체가 위탁자이기 때문에 자기 명의의 계좌에 있는 금투소득이든 신탁계좌에 있는 금투소득이든 그게 그 사람의 명의로 다 과세가 되어야 되는 거고 원천징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세법상의 신탁에 대한 과세 체계하고 원천징수 체계를 맞춰 주는 거고 납세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법적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도 당연히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류성걸 위원** 그래요, 하여튼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전문위원, 괜찮습니까, 검토의견으로?

○**전문위원 정명호** 사실은 지금 아주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확정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류성걸 위원** 그 부분은 한번 법률 전문가, 그러니까 이것은 세제·세금에 관련되는 사항이니까 그러는데 법적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하는 그런 취지로……

○**전문위원 정명호** 예, 저희가 기재부하고 한번 논의를 한 이후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성걸 위원** 그래서 나중에 최종 의결하기 전까지 보고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4항은 법률 검토 후 최종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5항 검토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호** 103페이지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자료 정기제출의무입니다.

현재 금융회사 등의 거래내역 등 자료 보관 및 국세청장의 금융회사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규정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내용을 개정하자는 건데요.

우선은 105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보시면 개정안은 원천징수의무자인 금융회사 등으로 하여금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내역과 금융투자상품의 보유내역을 국세청장의 요청 없이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하고 5년간 이를 보유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자료보관·제출기관을 현행 ‘금융회사 등’에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금융회사 등’으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금융회사 등이 거래내역과 보유내역을 제출하여야 결손금액에 대해 투자자의 확정신고 없이 금융투자결손금액을 확정시킬 수 있다는 점, 동 자료를 통해 원천징수세액이 정확한지 여부를 사후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점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금융회사 등의 자료 보관 부분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0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금융회사 등의 보관·제출 대상 자료에 금융투자상품의 보유내역을 추가하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집합투자증권의 분배금이나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은 동 금융투자상품의 보유행위로 인해 금융투자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세청이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위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보유 내역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세 번째, 국세청장의 별도 요청 없이도 금융투자상품의 보유내역·거래내역을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개별 금융회사 등에 자료제출 요청 후 이를 제출받도록 하는 경우 자료제출이 적시에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자료제출의 지연 시 확정신고 안내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현행 소득세법 164조의4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의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유사 입법례가 있다는 점에서 입법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이것은 한 세 가지 정도의 내용인데요.

첫 번째로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관하는 의무자를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금융회사로 정확하게 한정하는 거고요. 이게 증권사도 있고 운용사도 있고 거래에 관련되는 기관들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도 예를 들면 증권회사가 주로 원천징수의무자기 때문에 그걸 명확히 한 거고요.

두 번째는 금융기관한테 국세청에 자료제출을 의무화해서 과세체계, 이런 부과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까지 거래내역에 대해서만 자료 제출을 받았다면 이제 플로(flow)가 아닌 스톡(stock) 보유내역도 한꺼번에 받아서 전체적으로 과세 확보 이런 것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정비하는 게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의견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걸 위원 제가 자꾸 이야기하네요.

제가 이야기할게요.

○소위원장 김영진 예, 말씀해 주세요.

○류성걸 위원 차관님, 금융투자소득세 2023년에 처음 과세하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세법을 개정하고 관련 법을 정비하고 많이 했는데 정작 과세하기 1년 전에 또다시 이렇게 많은 조문들을…… 물론 그게 개선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이렇게 복잡한 내용들을 또 가져왔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금융투자소득 과세 관련해서 준비가 덜 됐다 아니면 제도가 아직 정치하지 않다, 내부적으로 아직 문제가 있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보통 보면 법이라는 게 시행하기 전에 거의 완벽하게 준비를 딱 해서, 그 과정 속에서 실제로 경제주체들은 거기에 따라 마음의 준비도 하고 또 관련되는 시스템도 새로 점검을 하고 또 설비라든가 이런 걸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번 내용을 국세청장의 요청 없이도…… 법문을 보면 전부 다 국세청장의 요청이라고 해 놔다가 이런 식으로 고친다는 말이지요. 그것 일단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것하고 관련해서 물론 나중에 논의를 할 기회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되지만 가상자산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걱정 중의 하나가 만약에 가상자산은 내년 소득 발생분부터 시작해서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은 2023년 5월 달이 돼서 하는 건데 그러면 만약에 이런 형태로 된다고 하면…… 이런 형태라는 게 법의 미비라든지 제도 보완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게 걱정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법 시행도 되기 전에…… 작년에 진짜 정치하게 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런 많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아주 조그마한 것이라 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것을 정치하게 했어야 되는데,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주신 말씀 저희들이 마음속에 새기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내년에 하는 거기 때문에…… 내후년이지요. 내년을 준비하는 건데 계속 봐 가면서 뭔가 더 효과성을 높인다든지 더 완벽하게 하는 그런 과정의 하나로 봐 주시고요.

예를 들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료제출 요청을 통해서도 하려면 할 수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의무화를 하는 것들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리고 거래내역만 봐도 먹이려면 먹일 수도 있지만 거기에 보유내역도 같이 검비가 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 해서 계속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더 효과적인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정비해 나간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요.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들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류성걸 위원 새기도록 할 게 아니라 그것은 반증이 뭐냐 하면 준비가 안 됐다, 이 법안이 완벽하지 않다 또 아직까지도 더 고칠 거다 그래서 불안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조금 미비한 것을 자꾸 고치겠다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제도, 이 법안 자체가 완벽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이 하는 거고 그때도 많이 논의가 된 사항인데 앞으로 제가 보니까, 물론 최종 세금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것 관련돼 갖고 실컷 경제행위를 하고 난 뒤에,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고 난 뒤에 또 고치고 이렇게 할 겁니까, 앞으로도?

세제실장님 말씀해 보세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개정은 아니고 이번에 하는 게 보유내역을 더 제출하게 하고 국세청장 요청 없이도 자료제출할 수 있게 하고……

○류성걸 위원 아니지요, 이것은 국세청장 요청 없이도 한다는 게 사실은 보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엄청난 부담과 업무를 강제하는 거예요, 법에 의해서. ‘요청’ 했을 때는 요청하는 것 오면 하겠다 이러지만 여기는 지금 ‘요청 없이도’ 해서 전부 다 뺐지 않습니까? 처음에 원천징수의무자인 금융기관 등이 생각했을 때하고 지금 개정이 확정된다고 했을 때 업무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엄청난 거예요, 준비라든지.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그러니까 원래 법안은 절차로써 국세청장이 요청하고 징수 자료를

받고 이런 것을 매년 하려고 했었는데 생각해 보니 불필요한 절차고 혹시 또 그러한 불필요한 절차 때문에 자료제출이 늦어지고 이런 가능성들이 있어서 그 절차를 조금 더 간소화하고 좋게 만들려는 겁니다.

○류성걸 위원 그래요, 하여튼 법을 만들 때도 그렇고 또 제정도 그렇고 개정도 그렇고 이것을 짚고 해야 되지 조금 이따 또 고치고 또 고치고 하는 부분들은 신뢰성이라든지 예측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2023년 1월 시행 관련한 사안으로 미비 사항들을 조정하고 수정하는 사안으로 합의한 것으로 보고 다음 항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요.

○전문위원 정명호 108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등의 정의 정비와 관련하여 지금 현행 양도소득세상의 주식 정의를 종전처럼, 금융투자소득 도입되기 이전으로 환원하자는 건데요.

현행을 설명드리면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 주식등의 정의를 하고 양도소득세에서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109페이지 보시면 ‘2023년 이후 부동산과 동일하게 간주하는 부동산과다법인의 주식등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등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금융투자소득세를 과세할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부동산과다법인의 주식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금융투자소득 정의가 앞쪽에 있고요 양도소득이 뒤쪽에 있는데 그대로 인용을 하다 보니까 누락되는 문제가 생겨서 이 조항을 종전처럼 주식등의 정의를 금융투자소득하고 양도소득세하고 달리해서 부동산과다법인의 주식등에 대해서 과세를 하자는 의견입니다.

그 의견인데 저희 수정의견은 뭐냐 하면, 주식등의 정의가 동일 법안에서 달리 되거든요. 달리 돼서 그것은 맞지 않고 주식등의 정의는 동일하게 하되 각 조문 시행령에서, 대통령령에서 조정을 하는 게 맞다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전문위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호 위원 이 취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정의를 이렇게 가져가서 굳이 과세를 하기 위해서 다른 정의를 도입하려고 하는 취지가 뭔지?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이것은 입법기술적인 거고요. 지금은 대주주 주식 양도 차익이라든지 부동산과다보유 주식 이런 부분은 양도소득세로 매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식을 정의해 줘야 되는데 금융투자소득법이 생기니까 그쪽에서 주식에 대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주식에 대한 정의가 그쪽으로 옮겨 가게 됩니다. 옮겨 가는 와중에 지금 정작 중요한 부동산과다보유 주식은 여전히 여기서 양도소득세를 매겨야 되는데 옮겨 가는 와중에 정의 조항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 부동산과다보유 주식 양도소득세 이 파트가 빠져 버리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서 다시 규정을 해 주는 거고요.

그런데 그 규정 방법을 저희들은 과거 것을 그대로 갖고 와서 하자는 거고 그다음에 전문위원은 금융투자소득에 있는 그런 거랑 일관성 있게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는 그 부분도 타당하기 때문에 따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호 위원 그러면 투자 대상에 관해서 정한 방식을 시행령으로 위임해서 시행령에서 그것을 잡아 주자 이런 얘기입니까?

○전문위원 정명호 예, 맞습니다. 지금 정부안 같으면 금융투자소득의 주식 정의와 양도소득 대상 주식 정의를 달리하려고 하는데 저희 의견은 같은 법에서 주식등의 정의를 다르게 하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주식등의 정의는 동일하게 하되 시행령에서 과세 대상을 분리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지금 정부 개정안에 따른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은 112페이지 표에 가장 우측에 있는 안입니다. 주식등이라는 것을 108페이지에 나왔던 제4조제4항에 따른 지분증권으로 다시 수정해서 수정안을 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수정안에 대해서 정부 측은 동의했습니다.

○추경호 위원 전문위원, 미안하지만 이 표를

놓고 한번 구체적으로 문안 가지고 구분을 해 주세요.

○전문위원 정명호 지금 현행을 보시면 현행 금융투자소득 관련되는 주식 정의가 수정의견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행은 금융투자소득 정의하고 양도소득 정의를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 조문이 앞쪽에 있고요 그 조문을 양도소득 정의에서 인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데, 문제는……

○추경호 위원 현행이라는 게…… 지금 112페이지 보는 거지요? 몇 페이지 보는 거예요? 112페이지에 현행이 있잖아요.

○전문위원 정명호 이 현행을…… 지금 이것은 양도소득 관련되는 정의인데요. 87조의2제1호가 금융투자소득 관련되는 정의입니다. 결국은 같다는 거지요, 주식등의 정의가.

그런데 앞쪽 금융투자소득 정의에서 대통령령에서 부동산과다법인 주식을 제외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양도소득세에서 부과하기 위해서 제외를 했는데 그대로 인용을 했기 때문에 양쪽에서 다 빠지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양쪽에서. 그러니까 이걸 조정을 해야 되는데 정부안은 주식등의 정의를 금융투자소득 이전으로 환원하자는 건데 그러면 금융투자소득 정의하고 양도소득 주식 정의가 달라져서 저희 의견은 동일 법에서 주식등의 정의를 달리하는 건 맞지 않다, 주식등의 정의는 동일하게 하되 각자 시행령에서 조정을 해서 부과하는 게 맞다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부 측이 수용한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추경호 위원 기본적으로 우리가 과세 대상이나 세율 이런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가급적 법률로 명시해 주는 게 좋거든요. 그런 점에서 내가 혹시 법률로 정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은 없느냐, 왜 시행령으로 끌고 가느냐 이것과 관련해서…… 내가 사실은 좀 헛갈려서 정확히 캐치가 잘 안 되는데 그런 면의 우려사항이 있는지를 짚어 보기 위해서 제가 하나하나 정확히 해 주시라 그런 얘기인데……

○전문위원 정명호 위원님 말씀도, 그게 법률에서 할 거냐 시행령에서 할 거냐는 건데 과세 대상을 법률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시행령에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분리하자는 의견입니다.

○추경호 위원 과세 대상을 우리가 시행령으로

할 때는 지금 당장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탄력성을 주기 위해서, 여지를 주기 위해서 시행령으로 불가피하게 위임을 하는 경우인데 그렇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법률로 가져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왜 시행령으로 가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클리어시켜 주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다……

세제실에서 이야기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제가 이 표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현행이 88조(정의)에서 “주식등”이란 제87조의2제1호에 따른 주식등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87조의2제1호는 금융투자소득 관련 주식의 정의입니다. 이 88조는 양도소득, 우리가 말하는 부동산 양도소득 있지 않습니까? 그 양도소득에 들어 있는 주식의 정의고요. 그러니까 각 법의 각 장 정의들이 조금씩 다른데 그래서 지금 양도소득 장에서 금융투자소득 장에 있는 주식등의 정의를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개정안은 이렇게 가져오지 말고 그냥 ‘주식등이란……’ 이렇게 쭉 써 주자는 것이고 전문위원 의견은 이것보다는 기술 표현이, 맨 오른쪽 수정의견에 들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게 87조의2제1호에 따른 정의하고 같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맞춰 주자 그런 얘기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류성걸 위원님.

○류성걸 위원 그런데 지금 수정의견도 그렇고 그다음에 개정안도 결국은 양도소득세에서의 주식등을 정의하면서 금융투자소득에서의 정의를 그대로 가져오는데 부동산과다보유 관련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그 안에 포함이 된다고요?

○전문위원 정명호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류성걸 위원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수정안에도 문제가 있는 게 수정안에서의 ‘주식등이라 함은’ 해 놓고 시행령에서 각각 ‘주식등이라 함은 무엇무엇을 제외한다’ 또는 각각 다른 시행령에서 ‘1개는 제외한다’, ‘1개는 포함한다’ 이런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법에다가 바로 주식등 괄호 열고 해서 이 장에서는 뭘뭘뭘 제외한다 또는 포함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전문위원 정명호 그것 다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류성걸 위원** 예,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전문위원 정명호** 우선은 금융투자소득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에서 주식 정의를 했고요. 부동산과 다법인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을 부과하기 위해서 시행령에서 부동산과다법인을 제외를 했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 관련된 주식 정의에서 그대로 정의를 인용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빠져 버렸고요.

지금 추경호 위원님 질문하고 류성걸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면 지금 110페이지 하단 주 15를 보시면 1항 4호가 부동산과다법인이거든요.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는데 과다법인이기 때문에 법률에서 양도소득 부과 대상입니다. 과세 대상인데 지금 문제는 양도소득 주식 정의에서 이 부분을 빼 버렸기 때문에, 왜냐하면 금융투자소득을 그대로 인용을 하면서 빼 버렸거든요. 빼 버려서 그게 논리적으로 안 맞거든요. 양도소득 주식 정의에서는 지금 4호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빠져 있는데 양도소득 과세 대상에 포함돼 있는 부분이 논리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그냥 정의를 조정해 주는 겁니다. 과세 대상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닌데 이 내에서 양도소득 정의하고 과세 대상 부분의 불일치되는 부분을 환원하자는 건데 정부 측에서는 지금 정의 자체가 금융투자소득하고 양도소득 주식 정의를 달리하는 의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방향은 맞는데 정의 자체를 동일 법안에서 다르게 하는 건 맞지 않다, 그러니까 정의 자체는 동일하게 하는 게 타당하다 그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도 정확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 정정훈** 그것은 약간 연혁을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112페이지 88조 2호에 나와 있는 주식등의 정의가 원래 금투소득이 나오기 전의 그냥 일반적인 주식등의 정의입니다. 이걸 자본시장법을 인용하지 않고 자본시장법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상식의 개념에 부합하는 주식의 정의를 쓰고 있었고요.

이 주식등의 정의를 기초로 해서 그다음에 보면 94조에 양도소득의 범위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정의고요, 주식이 뭐냐.

94조에 보면 양도소득은 어디를 과세할 거냐 했을 때 대주주만 과세한다, 그다음에 부동산과 다법인을 과세한다 이런 체계로 돼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주식의 정의가 나오고 그 주식 중에 뭘 과세할 거냐, 대주주 주식·부동산과다법인 주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 있었는데 이 대주주 주식 부분이 금투소득세로 넘어가면서 주식등의 정의 자체가 현행처럼 87조의2 금투소득으로 주식의 일반적인 정의가 넘어갔고요. 87조의2로 넘어가면서 거기에서는 저희들이 새로운 법체계를 감안해서 자본시장법을 인용한 정확한 주식의 정의를 짚었습니다.

그런데 금투소득 과세 대상에서는 당연히 부동산과다법인 주식은 빠져야 되니까 금투소득의 대상이 되는 87조의2의 주식의 정의에는 일반적으로 오른쪽 수정의견에 나와 있는 ‘주식등이란 자본법에 의한…… 말한다’ 해 놓고는 대통령령에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과다법인은 뺀다’ 이래서 금투소득 대상 자체가 모든 주식을 포괄하는 게 아니고 정의 자체가 줄어들어 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정의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지금의 88조 2호 정의에서 다시 인용을 하다 보니까 부동산과다법인의 주식은 금투소득에서도 빠져 있고 일반적인 양도소득에서도 빠져 있고 양쪽으로 빠져 버린 겁니다, 체계를 바꾸다 보니까.

그래서 다시 양도소득에서의 주식의 정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이 빠진 게 아닌 모든 주식을 말한다라고 다시 환원을 해야 되고요. 그 환원을 하는 방식이 과거 방식으로 할 거냐 아니면 전문위원이 말한 대로 법체계상 아래위 쪽으로 맞추는 거냐라는 부분이고요.

거기에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과세 대상의 정의나 범위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시행령으로 더 넘어가거나 시행령에서 재량이 커지거나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박형수 위원** 수정의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걸 이렇게 정하지 말고 나열하는 방법은 없나요?

○**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 정정훈** 그것은 현재도 이미 금투소득의 과세 대상에서…… 이 정의 자체는 모든 주식을 다 포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투소득의 과세 대상에서 딱 빠지는 게 펀드는 빠져라, 그다음에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빠져라라고 거기 시행령으로 위임을 해 주셨거든요. 그 두 가지만 지금 시행령에서 빠져 있고요, 금투소득 과세 대상에서. 그런데 그걸 그대로 인

용하다 보니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을 과세하기 위한 주식의 정의에서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빠져 버리니까 좀 앞뒤 체계가 안 맞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펀드와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을 빼겠다는 건 이미 작년에 법 개정하시면서 정해 주셔서 저희들이 시행령에 이미 반영이 돼 있고요. 이번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서는 뭘 뺄 거냐?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안 빼고 그냥 펀드만 뺄 겁니다.

○박형수 위원 위원장님, 이것 다시 논의할 건 아닌데 각자가 가서 체계상 맞는지 검토를 해 보고 다음에 이것 논의하도록 합시다. 이 개념 자체가 지금 각 위원들이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것 동의를 하니 마니 이렇게 하기보다는 가서 각자 개념부터 정확하게 잡아서 검토를 해 보고 그다음에 맞다 안 맞다만 결정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시지요.

○소위원장 김영진 전문위원님, 정부 개정안과 수정의견(안)에 실제적인 내용의 차이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정명호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제가 보기에는 주식등이라고 하고 풀어 썼던 것과 그다음에 수정의견의 안이 사실 내용은 동일한데 체계를 위해서 그 조항을 갖다가 쓴 거지요?

○전문위원 정명호 예.

그러니까 정의를 금융투자소득의 주식 정의와 양도소득의 주식 정의를 달리할 건지 같이 할 건지 그 차이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이것 한 번 더 검토하시자고 하니까……

○류성걸 위원 한 번 더 하시는데 결국은 지금 현행 ‘제87조의2제1호에 따른 주식등을 말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 87조의2제1호가 ‘주식등은……’죽 해서 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제88조에 정의를 하면서 87조의2제1호를 그대로 다시 쓰는 거네요?

○전문위원 정명호 아닙니다.

○류성걸 위원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전문위원 정명호 그러니까 현행은 다시 쓰는 건데요. 앞쪽의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정의를 그대로 쓰는 건데 그대로 썼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금융투자소득에서 대통령령에서 부동산과다법인을 제외시켜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령……

○류성걸 위원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미안합니

다.

87조의2제1호가 지금 수정의견으로 돼 있는 ‘주식등이란……’하고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똑같은데, 한 자도 안 다른데.

○전문위원 정명호 그것은 같습니다, 지금 질문이에요.

○류성걸 위원 그러면 결국은 지금 현행 88조(정의) 제2호의 ‘주식등이란 제87조의2제1호에 따른 주식등을 말한다’라는 것 대신에 ‘주식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해서 표시된 것 및 출자지분을 말한다’라는 것을 다시 써 주는 거잖아요. 87조의2제1호를 인용하지 않고 87조의2제1호를 그냥 쓰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정명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같이 쓰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주식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 내용이 있잖아요.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각자 대통령령에서 조정을 하면……

○류성걸 위원 미안합니다. 중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전문위원 정명호 예, 그 부분으로 조정하자는 겁니다.

○류성걸 위원 그 부분이 달라지는 거네요.

아니, 위에도 들어가 있는데요.

○박형수 위원 아니, 위에도 있어요. 87조의2제1호에도 있는데, 뭘. 거기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전문위원 정명호 그런데 87조의2는 뭐냐 하면 지금 현행을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87조의2를 지금 현행을 보시면 대통령령 없이 그대로 가지고 오잖아요.

○류성걸 위원 아니에요, 지금도 87조의2제1호가 ‘같은 법 제9조제21항의 집합투자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전문위원 정명호 아니, 그 설명을 드리면…… 현행을 말씀드릴게요, 현행을.

그러니까 금융투자소득세에 주식등의 정의를 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돼 있는데 부동산과다법인을 제외했고요. 그런데 지금 현행의 88조를 보면 그걸 그대로 인용을 했기 때문에 88조에서는 변동의 여지가 없고요,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저희 수정의견에는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88조는 88조대로 각자, 금융투자소득은 금융투자소

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88조는 88조대로 하면…… 각자 빼자는 거지요, 대통령령에서.

○**류성걸 위원**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돼서 미안합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나중에 정리해서……

○**소위원장 김영진** 제가 보기에는 내용적인 것은 동일한데 그것을 어떻게 조항으로 정리하느냐에서 지금 들고 도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한 번 더 이것은 점검만 하는 형태로 해서 의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7항 얘기해 주십시오.

○**박형수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하나만 더 얘기합시다.

이걸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취지인지를 알겠어요. 이렇게 해 놓으면 각자 지금 달리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걸 똑같은 조항을 두 번 이렇게 하니까 헷갈려서 지금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는데 이걸 달리 표현할 수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걸 밑에다 다시 씌으로써 그런 효과가 법률상 생기는 건 맞는데 그게 헷갈리는 거야. 똑같은 걸 왜 다시 인용하느냐라고 그러니까……

○**전문위원 정명호** 예, 그게 고민입니다.

○**박형수 위원** 이걸 다른 용어로 표현할 수 있는 뭐가 있는지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전문위원 정명호** 예.

○**소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113쪽 7번 항 검토의견 해 주세요.

○**전문위원 정명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조합원 입주권 범위 정비 관련되는 정부안입니다.

현행 소득세법 88조에는 조합원입주권과 관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개정안에서는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원입주권을 포함하자는 의견인데요.

하단의 개정안 먼저 한 번 더 읽어 드리면 개정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조합원입주권 범위에 소규모 재건축·재개발사업, 자율·가로주택 정비사업 시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조합원입주권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조합원입주권으로 하려는 것인데 그 뒤쪽에 보시면 이걸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소규모

모재개발사업과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조합원입주권에 포함시키면 지금 현재 지위가 분양권인데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됩니다.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됐을 때는 하단에 보시면 세 가지 경우에 혜택이 있습니다.

혜택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115페이지 보시면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조합원입주권을 재건축사업·재개발사업·소규모재건축사업의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한정하고 있는데 그런데 개정안에서 인용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사업에는 보면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이 더 있습니다. 있어서 이 부분을 포함하자는 내용이고요.

11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개정안은 여러 정비사업의 조합원입주권에 대하여 세제상 차등 취급하는 것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장 왜곡을 해소할 수 있고 그다음에 소규모재개발·자율주택·가로주택 정비사업에 세제상 혜택을 제공하여 동 정비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토지주의 사업 참여를 높이도록 유도하는 한편 동 정비사업이 촉진될 경우 주거생활 개선,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여러 정비사업의 조합원입주권에 대해서 세제상 차등 취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장 왜곡도 해소하고요. 그다음에 정비사업의 조합원입주권을 세제상 분양권이 아니라 조합원입주권으로 간주해서 법체계의 합리성과 정합성도 제고하고요.

특히 이런 걸 통해서 결국은 주거생활 개선이라든지 주택공급 확대 이런 쪽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법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걸 위원** 전문위원님, 조합원입주권하고 분양권하고 차이가 뭐지요?

○**전문위원 정명호** 114페이지 보시면 분양권하고 조합원입주권의 세제상 차이를 설명드렸는데요.

우선은 정의를 먼저 말씀드리면 소득세법 제88조에서 제9호에 조합원입주권을 정리하고 있고요, 10호에서 분양권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에 따른 혜택의 차이는 세 가지인데요, 우선 89조 1항 4호상의 양도소득 비과세에서 한 가지 차이 나고요. 다음에 95조 3항의 고가 조합원입주권—9억 원 초과입니다—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 시 9억 원을 공제하여 안분계산하는 부분에서 차이 나고요. 마지막으로 104조 1항 1호에서 조합원입주권의 양도 시에는 조합원입주권은 기본세율이 적용되는데요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60%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세 가지 사업이 분양권에서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됐을 경우에는 이런 세제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추경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호 위원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행간을 잘 못 읽어, 법이 어려워서.

이것 하게 된 취지가 뭐지요? 그리고 좋아지는 게 뭡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지금 여기 기존 조문의 조합원입주권의 범위에 재건축·재개발·소규모재건축 이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아주 러프하게 얘기하면 살던 집 부수고 받은 입주권인데, 여기에 소규모재개발이나 자율주택정비사업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 이것도 사실은 같은 형태거든요. 살던 집 부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넣어 주자는 거고요.

이렇게 넣어 주게 되면 애네가 지금 분양권이기 때문에 좀 불리하거든요. 애네가 조합원입주권의 지위를 얻게 되면 이런 사업들이 더 활발해질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추경호 위원 이런 민원들이 많았던 모양이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이게 국토부에서 건의한 사항입니다.

○추경호 위원 그러니까 국토부에도 어떻게 보면 현장의 규모 차이나 등등이 있는데, 큰 성격으로 보면 비슷한데 왜 하나는 분양권이고 조합원입주권 자격이 안 됨에 따라서 혜택의 차이가 있고 세제 등에 있어서 이런데 좀 이렇게 같이 해주라……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그러니까 이 소규모재개발사업은 최근에 만들어진 제도고요, 자율

주택정비사업은 17년에 만들어진 제도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은 12년에 만들어진 제도인데 끝의 2개는 실효성이, 별로 참여가 없었는데 이것을 좀 활성화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적 의도 때문에 저희한테 건의하는 겁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대규모 재건축 이런 것 위주로 갔다면, 조금조금씩 도심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약간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해주면 더 활성화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해 보자.

○추경호 위원 관련 주민들한테는 좋겠네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예, 그렇습니다.

○류성걸 위원 주민들한테 좋은 것은 분명한데 내년 1월 1일부터 만약 시행한다면, 법 시행 이후에 취득한 조합원입주권부터 적용한다 그러면 법이 미비해서 아니면 법 개정이 이제 되어서 그런 시간상의 형평성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이야기될 것 같은데요.

물론 새로운 제도라든지 모든 게 다 법이 개정되고 난 뒤에 효력이 발생하니까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급을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이었다면 진작에 한참 부동산 폭등하기 전에 분양권 대신에 조합원입주권으로 해서 그렇게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올 텐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그러니까 소규모재개발사업은 그 법이 금년에 7월 달에 만들어진 겁니다.

○류성걸 위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오래됐어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12년에 들어온 겁니다.

○류성걸 위원 왜냐하면 도정법하고 도축법하고 관련되는 법에 의해서 저희 지역에도 엄청나게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것 나가면 그 전하고 그 이후하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런 정도의, 물론 상황이 발생했으니까 새로이 한다고 하지만 그러면 경과규정이란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미 했던 것 중에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든지…… 만약에 법이 개정됐다고 하면 내년 1월 1일 딱 끊어서 그때부터 시작이 될 것 아니겠어요.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에 대한 경과규정이란지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 박금철** 재산세국장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그전에도 분양권 형태로 거래가 됐던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 소규모재개발사업 자체를 좀 더 활성화하려고 올해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했는데 이것을 활성화하려면 사실상은 조합원입주권이지만 종전에 세법상 분양권으로 취급됐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조합원입주권을 기존의 세법상 다른 조합원입주권에서 하는 것하고 동일한 혜택을 주면 좀 더 촉진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그 법안을 낸 것이고요.

이것은 소급적용 문제가 없도록 그 취득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류성걸 위원** 박 국장님, 그런 활성화되고 하는 부분들은 제가 충분히 알겠다고요. 그런데 물론 소규모재개발·재건축 관련해서는, 올해부터 적용됐다고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7월 달에 법이 만들어져서……

○**류성걸 위원**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가로주택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오래됐거든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2012년에……

○**류성걸 위원** 그러니까 벌써 10년이 됐지 않습니까? 9년이 됐는데,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했던 건데 그래서 그 부분은 워낙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불신이 많고 이렇게 되면 당장에 나타나는 계분양권 관련된 사항하고 입주권 관련된 사항하고 양도소득세 차이에서도……

지금 분양권은 1년 미만의 경우에 양도차익의 75%고 2년 이상의 경우에는 60% 이렇게 되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70%, 60%.

○**류성걸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뒤에도 나오지만 기본세율에다가, 물론 2주택·3주택 됐을 때는 20%·30% 가산을 하지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로또가 되는 거예요.

○**김수홍 위원** 제가 볼 때는 서울이나 대도시에는 국토부의 이 소규모재개발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효과가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서울은 소규모로 되면 그 옆에 또 사서 소규모로 개발이 연속적으로 이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의 미관이나 전체적인 정비가 균형을 이루는데 지방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일부 시행업자들이 용적률이나 건폐율로 해서 원도심이나 구도심에 몇 개를 사 가지고 자기들끼리 먹튀하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속적으로 개발이 안 이루어지면 도시의 미관에 계속, 종전에 3층으로 가던 가로수나 이런 게 갑자기 한 10층, 15층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세제혜택이나 어떤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 지방에서는 부도덕한 이런 먹튀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요.

○**소위원장 김영진** 여러 가지 이것은……

○**류성걸 위원** 위원장님, 잠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무슨 효과가 나지요? 주택공급이 많이 늘어나나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소규모재개발 이런 사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류성걸 위원** 활성화가 어느 만큼 되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완전히 새로운 로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형평성이라든지, 기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부작용 또는 민원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주택공급이 획기적으로 늘어난다라고 하면 되는데…… 어느 정도 늘어날 수 있어요? 단순히 그냥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로 해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어느 만큼 늘어납니까, 박금철 국장님?

○**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 박금철** 그 부분은 저희도……

○**류성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래 갖고 제도·법 만들어 가지고 하면…… 정부가 그렇지 않아도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불신이 75%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새로 이런 로또 형태로 만들어 갖고 해 봤더니만……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의 지금 정책목표가 뭔지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국토교통부가 이렇게 했다면 국토교통부에서 이렇게 했을 때 주택 공급이 어느 만큼 늘어나고 관련되는 문제점은 뭐고 시행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하고 이런 것 좀 분석을 해 주십시오.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소위원장 김영진** 이것은 전체적인 취지로 보면 우리가 통과시켰던 국토교통부에 관련한 가로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은 오래됐고—소

규모재개발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국토교통부에서 통과시켰던 법에 대한 정비 차원에서 사실은 조항이 ‘소규모재건축사업’이라고 하는 항목에 추가되는 거라 실제적으로는 기존에 진행되는 부분에 관해서 미비사항을 추가하는 사안이라서 그 이후에 추가하는 주택 수의 추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빼기가 기재부에서는 현실적으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쉽지 않아서 좀 열어 주고……

우리 지역에도 보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진행되고 있는데 소규모재건축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활성화되지 않았어요. 하다가 건축경기가 조금 나아지니까 이 사업들이 진행되는 국면에 정비 차원이라고 보시면…… 국토교통부의 법안이 없었으면 이 법의 정비는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건데 그 법이 추가되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우리가 양도소득세 관련한 부분들을 정리해주는 거라 제가 보기에는 처리해 주시는 게 합리적일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추계하기에는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추경호 위원 일단은 이렇게 바뀔으로써, 기존에 분양권으로 칭해지던 부분들이 입주권으로 바뀌면서 우선 그 사람들한테는 세제 측면에서 좋아지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 박금철 예, 그렇습니다.

○추경호 위원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류성걸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수치는 안 나왔더라도 이렇게 함으로써 혹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것은 없는지에 관한 우려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만, 주 포인트는 이렇게 갔을 때 세제상의 혜택이 바뀔으로써 혹시 시장에 다른 부작용이 없느냐 그것 한번 전문적으로 점검해서 좀 짚어 달라고 하는 말씀이니까 그 부분에 관해 한번 점검해서 다음 기회에 ‘그 부분에 관해서 한번 점검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우려가 있다, 없다’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정리가 쉽게 될 것 같아요. 그것 한번 해 주시면 좋겠는데.

○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 박금철 제가 마지막으로 추가로 잠깐만 설명드리면 국토부에서 이번 6월 달에 대책을 발표할 때 도시재생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기대효과를 2만 1000호라고 발표한 보도자료는 있는데 더 세부적인 내역

이 있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경호 위원 그래요, 숫자는 추정일 테니까 그것은 그 법에 의해서 가는 거고. 이런 세제 혜택이 혹시 우리가 지금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 부분의 부작용이나 뭐가 있는지, 이런저런 영향이 심대하지 않다 그러면 그 당사자들한테 혜택을 좀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한 번 더 점검해서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우려할 사항이 있다, 없다’ 판단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쉽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소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세제상의 부분에 관한 영향이 어느 정도로 미칠 것인지 이것만 한번 확인하고 또 국토교통부에서 얘기했던 주택 공급은 이것에 따르는 전국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거라서, 그것도 아마 대략 추계라서 어떻게 이후에 주택시장이 정리될지는 잘 모르는 사안이라 그것까지 해서 확인하고 11월 말에 같이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그것만 한번 확인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소위원장 김영진 다음 118페이지 8항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호 118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조합원입주권 보유자의 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의 조합원입주권 범위 확대입니다.

이 부분은 앞서 논의한 조합원입주권 범위, 정의하고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현재 89조에 비과세 양도소득 관련되는 조항이 있는데 조합원입주권 보유자의 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의 조합원입주권 범위를 확대하자는 건데요.

120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소득세법 89조 2항에서는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과세 대상인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에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체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돼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조합원입주권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상응해서 대체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대상 정비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앞 조랑 관련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 집을 다시 지으면서 멸실될 기간 동안 대체주택을 취득했다가 양도할 때 그때 비과세 적용을 받는 정비사업의 범위에 기존의 재건축 외에 아까 우리가 논의했던 자율·가로주택·소규모재개발사업 그런 정비사업도 같이 포함하는, 그래서 기존의 재건축사업과 같이 수준을 맞춰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이 사항도 전차 사항과 같이 연관된 거라 전항에 대한 부분들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같이 얘기하면 큰 부담이 없는 그런 개정안인 것 같습니다.

다음 9항 말씀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정명호 122페이지입니다.

1세대 1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강화입니다.

123페이지를 설명을 드리면 개정안은 1세대 1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으로서 양도일 현재 해당 1조합원입주권과 1주택 이외에 다른 분양권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행은 분양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거나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에 대해서 비과세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12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보유 시에 주택을 양도하는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지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상이함에 따라 발생하는 불합리성을 해소하고 조세형평성을 제고하자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둘째, 개정안은 주택 수 산정 등의 경우에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을 유사하게 취급하도록 개정하는 최근 양도소득세 개정 추이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25페이지입니다.

기산점 부칙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개정안 부칙 제6조 3항과 관련해서 주택 수 산정 시 분양권의 기산점을 2021년 1월 1일에서 2022년 1월 1일로 수정하는 방안을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제시

합니다.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1세대 1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규정과 관련하여 비과세 대상인 조합원입주권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하도록 하나, 주택 수 산정 시 분양권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현재 분양권을 보유하는 시점에서 분양권 보유로 인해 내년부터 조합원입주권 취득·양도 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고요, 2022년 취득분부터 적용되는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비과세 여부 판단 시 이 법 시행일 이전 취득한 분양권의 취득 시기에 따라 달리 판단하게 되어 법적 혼선이 초래될 여지가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0년 8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에서 분양권 규정과 개정안 부칙의 분양권 규정이 서로 다른 조문에 관한 분양권의 적용례이고요. 양자를 반드시 동일하게 할 논리적 필연성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갖고 있을 때 서로 같이 취급을 해 주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은 주택 같은 경우는 1주택 양도하는 경우에 다른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이 3개 중의 하나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만 비과세가 적용되는데 조합원입주권은 다른 주택,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지 않으면 비과세 적용이라서 분양권을 갖고 있더라도 그게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합원입주권의 경우에는 분양권도 집어넣어서 그것을 갖고 있으면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맞추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전문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분양권의 기산점을 과연 언제로 볼 거냐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은 21년 1월 1일부터로 봤는데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얘기하신 대로 예측가능성 저해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그 기산점을 22년 1월 1일, 미래형으로 수정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호 위원 자꾸 무식한 질문…… 좀 쉽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왜 이것 하려고 그러는지.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그러니까 집이나 분양권이나 조합원입주권이나 사실은 다 집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1주택 갖고 있는 사람이 주택을 팔 때는 다른 집, 다른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이게 없어야만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됩니다. 그런데 조합원입주권은 다른 집, 다른 조합원입주권은 되는데 분양권을 갖고 있더라도 비과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택을 팔 때랑 조합원입주권을 팔 때랑 형평에 좀 안 맞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맞추기 위한 겁니다.

○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 박금철 제가 약간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원입주권이라는 건 결국 원래 주택을 갖고 있다가 그 주택이 멸실되면서 생긴 게 조합원입주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원래 그냥 주택을 갖고 있었을 경우에는 그 주택을 팔려면, 비과세를 받으려면 다른 집도 없어야 되고, 조합원입주권도 없어야 되고, 분양권도 보유하지 않아야만 원래 갖고 있던 주택을 팔 때 양도세가 비과세되는데, 조합원입주권을 갖고 있을 때는 지금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 하면 다른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조합원입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비과세된다 이렇게 돼 있고 분양권에 대해서는 지금 규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분양권을 여러 개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비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말씀드렸듯이 원래 조합원입주권이라는 것이 주택을 갖고 있다가 그 주택이 멸실되면서 생겨서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는데 여기 세법상 지금 그런 비과세 요건에서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그동안에 그렇게 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에 차이가 있는 경우 실제로 과세 적용에 어떤 애로가 있었나요?

○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 박금철 애로가 있다기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 사각지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주택을 비과세를 받으려면 분양권까지 없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엄격한데, 만약에 그 주택이 멸실이 되고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형이 되면 오히려 분양권은 갖고 있든 안 가지고 있든 그 조합원입주권을 팔 때 비과세가 된다는 그런 형평성의 문제를 저희가 제기한 겁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예, 이제 이해됐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뭐, 특별하게 제가 보기에 이 사안 관련해서는 그것을 맞춰 주는 거라서 큰 현장의 애로는 없고 실제로는 더 명료하게 조항을 정리해 주는 것 같습니다.

○류성걸 위원 이것도 지금 보니까 조금 개념적으로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알겠습니다.

이건 그 개념에 대한 부분만, 그것만 확인하면서 처리하겠습니다.

○류성걸 위원 개념에 대한 것 명확하게 하고……

○소위원장 김영진 전체적인 내용적인 건 동의 하셨고요.

○추경호 위원 지금 몇 가지 조금 기술적으로 우리가 여러분만큼 깊이 있게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의문 제기니까 다음에 언제 다루기 전까지 여러분들께서, 실무진들이 위원님들 문제 제기하신 분들한테 꼭 분명하게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소위원장 김영진 다음 10항인데요. 11항부터는 단기보유 부동산 양도세로 의원 발의로 넘어가기 때문에 논의의 효율적인 진행과 연계성을 위해서 오늘은 정부안까지, 10항까지 논의하고 오늘 논의는 마무리하고 수요일 날 논의를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시간 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호 위원 좋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즉 연이어 있어서, 전부 다 주택분 양도세라서……

다음 10항 검토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호 126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외전출세 환급대상에 미신고·과소신고 가산세를 제외하자는 건데요.

개정안은 국외전출자가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미신고·과소신고 가산세액을 환급에서 배제하자는 의견입니다.

개정안과 관련하여 현재 국세청은 가산세액 환급 배제에 관한 소득세법의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국외전출자가 국내에 재전입하여 국외전출세 납부세액의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납부세액의 본세는 환급하고 가산세액은 환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국외전출세는 이민 같은 경우로 해외로 가실 때 혹시라도 조세회피 이런 목적이 있을까 봐 갖고 계신 주식 같은 경우, 혹시 저세율국 같은 데로 가서 조세회피를 할까 봐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처분한 걸로 해서 저희들이 양도소득세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 다시 들어올 때, 주식을 팔지 않고 다시 한국으로 재복귀하셨을 때 그런 경우는 다시 저희들이 환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본세 말고 처음에 나갔을 때 제대로 신고를 안 하셔서 그때 부과됐던 가산세 그런 부분 같은 경우 다시 환급받을 때 그것까지도 다시 환급을 해 달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은 그 당시에 제대로 신고를 안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벌칙성으로 가산세를 내시는 거고, 저희들이 환급해 드리는 것은 본세에 대해서만 환급을 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 법령에 그게 명확하게 안 돼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명확하게 명문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호 위원 예, 좋습니다.

○박형수 위원 좋다 그러면 안 되지. 30분 갖고 여기 30분 동안 얘기해야 되는데……

○소위원장 김영진 아닙니다. 일찍 끝내기로 했습니다. 하려고 그랬더니 종료, 종료가 아니라 논의를 계속하는 걸로 해 주셔서…… 이것은 특별한 이의가 없고……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경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준 위원 시간이 남는다니까……

○소위원장 김영진 안 남습니다.

(웃음소리)

○유경준 위원 아니, 벌금같이 내고 간 가산세를 돌려줄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나중에 다시 돌아왔을 때 시비 걸리기 싫어서 조항을 확실하게 하자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이게 사실 소송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판결에서 정부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더 명확하게 하자는 차원에서, 승소했지만……

○유경준 위원 그러면 계속 승소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계속 승소할 것 같은데?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그래도 법이라는 건 명확하게 해 놓는 게 서로 간의 예측 안정성 차원에서……

○유경준 위원 아니, 정말 농담이 아니고 굳이 명확하게 할 필요가 없이 정부가 정당한 가산세 부과해 가지고 돌려 달라는 것은…… 자기가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금식으로 가산세를 낸 거고, 돌려줄 필요는 없고, 소송을 해 봐야 이기지 못할 것 같은데 굳이 법으로 이것을 제정할 필요가 있는지, 그 점은 조금 납득이 안 되는데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그런데 또 구체적인 사법 판단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케이스 바 이 케이스로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법으로 이렇게……

○유경준 위원 아니, 한 건 있다면서요? 한 건 있는데 승소를 했다면서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그런데 이게 또 현장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추경호 위원 그러니까 취지는 똑같은 이야기 아니에요? 규정을 지금 새로이 할 필요가 있느냐 그에 대한 거지요.

○소위원장 김영진 이것은 정부 측 의견을 받아들여서 원안대로 합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준 위원 아니, 지금 문제 제기를 했는데 왜 그러십니까, 위원장님? 굳이 할 필요가 없어서……

○소위원장 김영진 소송으로 간 건이 한 건이지 실제로 이런 건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명확화하기 위해서 한나라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조세 회피 및 조세를 탈루한 자들까지 우리가 봐줘서 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명확히 해 줄 필요가 있는 거지요.

○유경준 위원 아니, 진짜 이것은 과잉입법 같은데…… 진짜 이건 과잉입법 같아서 굳이 입법할 필요가 없는 것을 입법하는 것 같아서 저는 이것 반대합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의 반대의견을 명기하고 이것은 합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합의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11항부터는……

○추경호 위원 아니, 그런 식으로 관행이 되면 안 되니까 우리가 설득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지, 소위

위원들의 일부 위원을 반대의견으로 남겨 놓고 시작하면…… 앞으로도 소위 계속 해야 되니까……

○유경준 위원 의결도 안 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위원장님.

○소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유경준 위원님도 초기에는 다 동의하셨는데 여러 가지 사항을 보고 말씀하셔서……

○유경준 위원 아니요, 동의 안 했어요. 진짜 이상해서 그러는 거예요. 시간 남아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과잉입법 같아.

○추경호 위원 그러시면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이것도 추가 논의해 주시고, 그사이에 아마 이해를 높이는 노력을 하면 그다음에는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소위원장 김영진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너무 많이…… 과잉 시간입니다. 이것은 그냥 보편적으로 마무리하시지요, 유경준 위원님.

○유경준 위원 예.

○소위원장 김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의 하셨습니다.

○박형수 위원 동의한 거예요?

○소위원장 김영진 예, 지금 동의하셨습니다.

○유경준 위원 강제적으로 동의하라 그러는데, 해야지.

(웃음소리)

○소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다음 11항부터는 다음주 수요일 10시 반부터 회의를 계속 이어 가면 서 양도소득세율 관련한 여러 가지 법률안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역원 제1차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 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1분 산회)

○출석 위원(13인)

고 용 진	김 수 홍	김 영 진	김 주 영
류 성 결	박 형 수	박 홍 근	배 준 영
용 혜 인	유 경 준	정 일 영	양 향 자
추 경 호			

○위원 아닌 출석 의원(1인)

윤 후 덕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정	연	호
전 문 위 원	정	명	호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기획재정부			
제 1 차 관	이	억	원
세 제 실 장	김	태	주
조세총괄정책관	고	광	효
소득법인세정책관	정	정	훈
재산소비세정책관	박	금	철
조세및고용보험소득	이	용	주
정보연계추진단장			
국세청			
징 세 법 무 국 장	송	바	우
개 인 납 세 국 장	김	태	호
조 사 국 장	김	동	일